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베트남 편 -

2016. 12.

연구총괄 강성훈 부연구위원

연구자 김다량 관세사
김미영 관세사
양지영 연구원

목 차

제1편 개 관	1
I. 일반 개황	1
II. 경제 개황	4
1. 주요 경제지표	4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6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2
가.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12
나. 한-ASEAN FTA 활용 추이	17
다. 한-베트남 FTA	18
제2편 통관제도	20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20
1. 통관행정 조직	20
2. 통관 관계 법령	24
가. 2015년 신관세법 개정	25
나. 2016년 수출입관세법 개정	26
II. 과세가격과 납부세액 산정	29
1. 과세가격	29
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	29
나. 과세가격 사후심사 시행	31
2.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33
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33

나. 납부세액의 계산	40
다. 기타 비용	40
3. 관세의 신고와 납부	41
Ⅲ. 관세율 제도	43
1. 개요	43
가. 관세율의 종류	43
나. 관세율 분포	46
2. 품목분류	50
Ⅳ. 감면 및 환급	54
1. 관세의 감면제도	54
가. 관세 감세제도	55
나. 관세 면세제도	56
다. 외국인투자촉진에 의한 관세 면세제도	59
2. 관세의 환급제도	60
Ⅴ. 원산지제도	64
1. 특혜 원산지제도	65
가. 한·아세안(ASEAN) 원산지제도	66
나. 한·베트남 FTA 원산지제도	71
2. 비특혜 원산지제도	77
가. 원산지 기준	78
나. 원산지 증명서 종류	79
다.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79
3.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 확인	80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	80
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81
Ⅵ. 보세제도	82
1. 개요	82
2. 보세창고제도	83

가. 자가 보세창고	84
나. 영업용 보세창고	85
다. CFS·컨테이너화물기지	86
3. 보세입가공제도	87
가. 공업단지(Industrial Park/Zone)	88
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89
VII. 수출입규제	91
1. 수출입 금지	92
2. 수입제한	92
가. 자동수입허가	92
나. 기술표준 및 인증(Standards, Technical requirements and conformity assessment)	95
VIII. AEO제도	98
1. 개요	98
2. AEO제도	100
가. AEO 공인기준 및 대상	100
나. AEO 공인절차	103
다. AEO 공인 혜택	105
라. AEO 사후심사	108
3. 상호인정약정(MRA)	109
IX. 납세자 불복제도	111
1. 개요	111
2. 납세자 불복제도	112
가. 사전심사제도	112
나. 사후불복제도	116
X. 벌 칙	120
1. 개요	121
2. 관세형벌	122

가.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의 일반규정	123
나. 관세형벌의 종류	127
3. 관세형벌의 추가 집행	130
가. 개요	130
나. 관세형벌의 추가 집행 규정	130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134
I. 수입 통관 절차	137
1. 개요	137
2. 수입 통관 절차	138
가. 수입신고	139
나. 납세신고	142
다. 세관 검사	144
3. 기타 수입 통관제도	149
가. 일시 수입·재수출 물품 및 일시 수출·재수입 물품	149
나. 면세점 판매 물품	150
다. 기증품·선물과 긴급안보 물품 등	151
라. 우편·특송물품 및 이사회물	152
마. 임가공물품의 수입 통관	152
II. 수출 통관 절차	154
1. 개요	154
2. 수출 통관 절차	154
3. 기타 수출 통관 관련 사항	157
가. 수출세 부과 품목	157
나. 수출허가 및 제한품목	158
참고문헌	161
부록 I. 수입금지 물품	167
부록 II.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	168

부록 Ⅲ. 검사 및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	176
부록 Ⅳ. 2013년도 베트남 수출세 부과품목	177
부록 Ⅴ. 베트남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관세형벌 종류	181

표 목차

제1편

〈표 1-Ⅱ-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5
〈표 1-Ⅱ-2〉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6
〈표 1-Ⅱ-3〉 베트남 수출 상위 10개국 추이	7
〈표 1-Ⅱ-4〉 베트남 수입 상위 10개국 추이	8
〈표 1-Ⅱ-5〉 베트남의 수출 상위 품목	9
〈표 1-Ⅱ-6〉 베트남의 수입 상위 품목	10
〈표 1-Ⅱ-7〉 ASEAN 국가별 무역규모 추이	11
〈표 1-Ⅱ-8〉 대(對)베트남 수출입 추이	12
〈표 1-Ⅱ-9〉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국 비중 추이	13
〈표 1-Ⅱ-10〉 우리나라의 수입 상위국 비중 추이	14
〈표 1-Ⅱ-11〉 대(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15
〈표 1-Ⅱ-12〉 대(對)베트남 수입 상위 품목	16
〈표 1-Ⅱ-13〉 대(對)ASEAN 국가별 수입 중 한-ASEAN FTA 활용 추이	17
〈표 1-Ⅱ-14〉 베트남 내수시장을 고려한 한-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	19

제2편

〈표 2-I-1〉 신관세법 구성	25
〈표 2-II-1〉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35
〈표 2-II-2〉 9인승 이하 승용차 특별소비세 세율	36
〈표 2-II-3〉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38
〈표 2-II-4〉 환경보호세 구분	39
〈표 2-Ⅲ-1〉 2014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48
〈표 2-Ⅲ-2〉 베트남 수입 품목별 관세율	49

〈표 2-Ⅳ-1〉 베트남의 관세 면세 대상	56
〈표 2-Ⅳ-2〉 베트남의 관세 환급 대상	60
〈표 2-Ⅴ-1〉 베트남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종류	66
〈표 2-Ⅴ-2〉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	72
〈표 2-Ⅴ-3〉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의 주요 내용	74
〈표 2-Ⅷ-1〉 베트남의 AEO 관련 법령 요약	99
〈표 2-Ⅷ-2〉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	101
〈표 2-Ⅷ-3〉 베트남 AEO 공인 혜택 요약	107
〈표 2-Ⅸ-1〉 베트남 사전확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115
〈표 2-X-1〉 베트남의 관세형별 종류 및 내용 요약	128

제3편

〈표 3-I-1〉 채널(Channel)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신고 시)	148
〈표 3-II-1〉 베트남의 수출 허가 및 제한품목	159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I-1]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23
[그림 2-III-1]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농산물에 대한 MFN 세율 변화	47
[그림 2-III-2]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화면	50
[그림 2-III-3]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화면	51
[그림 2-III-4] 2016년 관세율표 예시	52
[그림 2-IV-1] 베트남의 관세 환급절차	63
[그림 2-VII-1]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품질관리국 조직도	96
[그림 2-VIII-1] 베트남 AEO 공인 절차	104

제3편

[그림 3-I-1] 베트남 세관지국 분포도	136
[그림 3-I-2] 베트남의 수입 통관 절차	139
[그림 3-II-1] 베트남의 수출 통관 절차	155

제1편 개 관

I. 일반 개황¹⁾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남북으로 약 1,7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동서 최장 거리는 600km에 달하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약 33만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함
 - 남부는 평지와 삼각주 등이 분포하여 곡창지대를 이루고 중부와 북부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임
 - 지형적 특성상 북부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로 연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가 매우 크지만, 남부 지역은 열대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음

-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 껀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와 58개의 성(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는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Ha Noi)임
 -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함

- 베트남의 화폐단위는 동(Dong/VND)으로, 기준환율은 2016년 10월 기준 22,308VND/USD 수준임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 무역관, 국가정보-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자 2016. 8.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2 제1편 개관

- 베트남의 총인구는 2016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 9,3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8배 정도이며 베트남어를 공용어로 사용함
 -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엣족(깁족, 전 인구의 85.7%)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도 타이족, 화교, 산악 소수민족이 분포함
 - 종교는 불교가 약 12%, 가톨릭이 약 7%를 차지함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며, 정부는 중앙행정기구, 국회(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임
 - 베트남 최고의 중앙행정기구인 중앙정부는 의장(총리), 부의장,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도 국회 임기와 동일한 5년임
 - 중앙정부는 법률 및 법령안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법령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총리령 및 부령을 공포할 수 있음
 -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고, 단원제이며 의원은 5년마다 행해지는 전체투표에 의해 선출됨
 - 주요기능으로는 헌법 및 법률 제정·개정, 예산·결산안의 의결 등임

- 베트남은 1992년 헌법개정 시 국가주석직을 신설하였음
 - 국회에서 선출(임기 5년)되며,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 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1986년 ‘도이머이’(쇄신)정책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08년에는 UN의 최빈국 기준을 탈피하는 성과를 거둠²⁾
 - 최근에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소득의 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치안유지 등을 통한 사회·정치적 안정 도모와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의 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
 -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대외 개방정책과 함께 경제개혁이 본격화됨
 - 2006년에는 WTO 가입을 위하여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였음

2) UN의 최빈국 기준은 1인당 GDP 960달러이며, 베트남은 2008년 1인당 GDP 1,052달러를 기록함

- 2007년 1월 베트남은 150번째 WTO 가입국 지위를 얻음

- 2015년 10월 5일 베트남이 최초 협상국으로 참여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곧 베트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5년 들어 TPP 타결을 포함하여 한국-베트남 FTA 정식서명(2015.05.05), EU-베트남 FTA 타결(2015.08.04) 등 다수의 양자간·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했음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원조 및 차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는 2001년 8월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현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 달성에 합의할 정도로 교역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 한·ASEAN FTA의 발효와는 별도로 양자 협정인 한·베트남 FTA가 타결되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음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지표

- 베트남의 경제는 세계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5월 반중시위 등 여러 경제 및 정치적 악재들을 극복하고 사상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환율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됨³⁾
 - 2007년 7.13%, 2010년 6.42%, 2015년 6.5%로 대체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수준을 보임
 - 인구는 2007년 8,400만명에서 2015년 9,200만명으로 증가추세임

- 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 자료 기준으로 베트남은 GDP 약 1,988억달러로 세계 GDP 순위 중 제45위에 올랐으며, 이는 2007년 세계 경제규모 61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⁴⁾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4)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13년 5.42%, 2014년 5.98%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는 1인당 GDP 920달러였으나 2015년 2,171달러로 2배 이상이 증가됨
-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증감률은 2007년 8.35%, 2010년 9.21%로 다소 높았으나 2013년 이후 점차 6.6%에서 2.2%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실업률은 과거 2007년 약 4%대에서 최근 2%대로 하락하며 고용안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음

〈표 1-II-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구분	'07년	'10년	'13년	'14년	'15년			'20년		
					'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07년 대비 증감률)	'20년 예측치	'15년 대비 증감률	
경제 규모	총 GDP (억달러)	775	1,128	1,706	1,859	1,988	6.9	12.5	2,873	7.6
	세계 순위	61위	60위	58위	56위	45위	순위 상승		43위	순위 상승
	1인당 GDP (달러)	920	1,297	1,902	2,051	2,171	5.8	11.3	2,978	6.5
경제성장률(%)	7.13	6.42	5.42	5.98	6.50	0.52	-0.63	6.00	-0.50	
인구(백만명)	84	87	90	91	92	1.0	1.1	96	1.0	
소비자물가, 증감률 (평균, %)	8.35	9.21	6.60	4.08	2.20	-1.88	-6.15	4.90	2.70	
실업률 (총노동력의 %)	4.64	4.29	2.75	2.45	2.45	-	-2.19	2.45	-	

자료: 조영태·박중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베트남 총교역량은 2009년 1,270억달러에서 2014년 2,983억달러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수출증가율이 수입을 상회하여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과거 적자에서 2012년 흑자로 전환한 후 2014년에는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2009년 571억달러에서 2012년 1,145억달러를 돌파하고 2014년에 1,502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수입은 2009년 699억달러에서 2011년 1,068억달러를 돌파한 후 2014년에 1,48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표 1-11-2〉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교역량	1,270.5	1,561.9	2,036.6	2,283.6	2,642.5	2,982.5
수출	571.0	721.9	969.1	1,145.7	1,321.3	1,501.9
수입	699.5	840.0	1,067.5	1,137.9	1,321.2	1,480.6
무역수지	-128.5	-118.1	-98.4	7.8	0.1	21.3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Thematic Data』,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6&ItemID=14220, 검색일자: 2016. 10. 20.

- 베트남의 수출국을 보면 2014년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수출비중의 약 20%를 차지하여 지속적인 수출 상위국을 차지함
 - 중국의 수출비중은 200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차상위 수출국을 기록함
 - 2순위 수출국을 기록하던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07년 수출 상위 9위국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약 71억 달러로 상위 4위국을 차지함

〈표 1-Ⅱ-3〉 베트남 수출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

수출 순위	2007년		2010년		2014년	
	국가	%	국가	%	국가	%
1	미국	20.8	미국	19.7	미국	19.1
2	일본	12.5	중국	10.7	중국	9.9
3	호주	7.8	일본	10.7	일본	9.8
4	중국	7.5	한국	4.3	한국	4.8
5	싱가포르	4.5	호주	3.7	홍콩	3.5
6	독일	3.8	스위스	3.7	독일	3.4
7	말레이시아	3.2	독일	3.3	아랍에미리트	3.4
8	영국	2.9	싱가포르	2.9	호주	2.7
9	한국	2.6	말레이시아	2.9	말레이시아	2.6
10	네덜란드	2.4	필리핀	2.4	네덜란드	2.5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표 1-Ⅱ-4〉를 보면 2014년 베트남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은 중국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 2위 내지 4위를 차지하던 싱가포르, 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2위 수입상대국이었으나, 1위인 중국과는 수입액 기준으로 200억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임
 - 베트남은 교역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표 1-11-4〉 베트남 수입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

수출 순위	2007년		2010년		2014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20.3	중국	23.8	중국	29.5
2	싱가포르	12.1	한국	11.5	한국	14.7
3	대만	11.1	일본	10.6	일본	8.7
4	일본	9.9	대만	8.2	대만	7.5
5	한국	8.5	태국	6.6	태국	4.8
6	태국	6.0	싱가포르	4.8	싱가포르	4.6
7	아랍에미리트	5.4	아랍에미리트	3.1	아랍에미리트	3.1
8	홍콩	3.1	말레이시아	4.0	말레이시아	2.8
9	미국	2.7	인도네시아	2.3	인도	2.1
10	인도	2.2	인도	2.1	독일	1.8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201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통신기기, 원유, 가죽 갑피의 신발임
 - 2007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가죽 갑피의 신발, 커피였으며 1차 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 2014년 통신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원유, 자동차자료처리기계, 의류 등이 수출되었음
 - 과거 주요 수출 품목이던 원유, 쌀, 가구 순위가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표 1-11-5〉 베트남의 수출 상위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순위	2007년		2010년		2014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원유	8,488 (17.5)	원유	5,024 (7.0)	통신기기	24,393 (16.2)
2	가죽제 갑피의 신발	1,952 (4.0)	쌀	3,250 (4.5)	원유	7,224 (4.8)
3	커피	1,917 (3.9)	귀금속제 신변 장식용품	2,729 (3.8)	가죽제 갑피의 신발	4,291 (2.9)
4	기타 가구	1,647 (3.4)	가죽제 갑피의 신발	2,444 (3.4)	자동차료처리 기계	3,812 (2.5)
5	쌀	1,490 (3.1)	기타 가구	2,130 (2.9)	방직용 섬유제 갑피의 신발	3,667 (2.4)
6	갑각류	1,440 (3.0)	천연고무	2,090 (2.9)	기타 가구	3,431 (2.3)
7	여자용 수트, 바지(비편물제)	1,355 (2.8)	통신기기	2,069 (2.9)	커피	3,311 (2.2)
8	천연고무	1,312 (2.7)	커피	1,851 (2.6)	쌀	2,937 (2.0)
9	기타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1,246 (2.6)	기타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1,823 (2.5)	여자용 수트, 바지(비편물제)	2,767 (1.8)
10	남자용 수트, 바지(비편물제)	1,176 (2.4)	인쇄기, 복사기	1,761 (2.4)	절연전선, 케이블	2,719 (1.8)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2014년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집적회로, 통신기기, 석유조제품이 있음
 - 수출 호조로 인한 부품 및 중간재 수입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철강제품 또한 주요 수입 품목으로 부상함
 - 최근 전자집적회로와 통신기기가 수입 급증으로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과 정유, 의류, 컴퓨터 전자부품·부분품 등의 수입이 뒤를 이음

〈표 1-11-6〉 베트남의 수입 상위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순위	2007년		2010년		2014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석유조제품	8,006 (12.8)	석유조제품	6,454 (7.6)	전자집적회로	10,295 (7.0)
2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1,709 (2.7)	통신기기	2,407 (2.8)	통신기기	9,376 (6.3)
3	송신기기 및 비디오 카메라 리코더	1,333 (2.1)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2,386 (2.8)	석유조제품	8,029 (5.4)
4	금	1,316 (2.1)	전자집적회로	1,463 (1.7)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2,163 (1.5)
5	철강의 반제품	1,111 (1.8)	대두의 오일케이크	1,218 (1.4)	에틸렌	1,934 (1.3)
6	에틸렌	905 (1.4)	소매용 의약품	1,164 (1.3)	기타의 편물	1,924 (1.3)
7	합성스테인플섬유 기타직물	854 (1.4)	에틸렌	1,129 (1.3)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폭 600 mm이상)	1,907 (1.3)
8	전자집적회로	744 (1.2)	철강의 반제품	1,083 (1.3)	소매용 의약품	1,870 (1.3)
9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733 (1.2)	금	965 (1.1)	대두의 오일케이크	1,860 (1.3)
10	자동자료처리기계	699 (1.1)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934 (1.1)	인쇄회로	1,455 (1.0)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표 1-Ⅱ-7> 베트남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베트남은 ASEAN 국가 가운데 무역규모 상위 5위를 차지하였으며, 무역규모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임
 - 베트남의 무역규모 연평균 증감률은 15.1%이며, 전년 대비 12.9% 상승함
 - 무역규모 상위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증감률은 10% 이하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음

<표 1-Ⅱ-7> ASEAN 국가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

순위	2007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1	싱가포르	5,625	6,627	7,833	7,760	-0.39	4.7
2	태국	2,973	3,777	4,792	4,555	-5.0	6.3
3	말레이시아	3,221	3,634	4,341	4,430	2.0	4.7
4	인도네시아	1,886	2,934	3,692	3,542	-4.1	9.4
5	베트남	1,113	1,571	2,641	2,981	12.9	15.1
6	필리핀	1,085	1,100	1,224	1,295	5.8	2.6
7	미얀마	-	118	296	463	56.7	-
8	캄보디아	71	105	185	287	55.5	22.1
9	브루나이	-	116	151	141	-6.3	-
10	라오스	30	53	106	119	12.3	21.5

주: 미얀마, 브루나이는 2007년 무역자료 없음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가.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 1992년 한-베트남 수교를 맺었으며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계속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음
- 2014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규모는 약 304억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하였음
 -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2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58억달러, 2010년 97억달러, 2015년 278억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달성하였음
 - 수입 역시 지속적으로 연평균 27.6%로 크게 증가하며 2007년 14억달러에서 2013년 72억달러, 2015년 98억달러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 확대는 베트남에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함⁵⁾

〈표 1-11-8〉 대(對)베트남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백만톤, %)

순위	2007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수출	금액	58	97	211	224	6.0	278	24.2	21.7
	중량	4	5	5	5	4.2	6	15.2	5.9
수입	금액	14	33	72	80	11.4	98	22.7	27.6
	중량	2	5	6	6	1.8	5	-13.7	11.6
무역수지	44	63	139	144	흑자폭 확대	180	흑자폭 확대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요약.

- 우리나라의 수출국가 가운데 베트남은 2007년 수출 상위 13위국(1.6%)에 불과했으나, 2014년 상위 6위국(3.9%), 2015년 상위 4위국(5.3%)으로 크게 성장함
- 대체적으로 베트남 수출 증가율이 2013년 32.2%, 2015년 24.2%로 전년 대비 20~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1-9〉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국 비중 추이

(단위: %)

수출 순위	2007년		2014년		2015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22.2	중국	25.4	중국	26.0
2	미국	12.3	미국	12.3	미국	13.3
3	일본	7.1	일본	5.6	홍콩	5.8
4	홍콩	5.0	홍콩	4.8	베트남	5.3
5	대만	3.5	싱가포르	4.1	일본	4.9
6	싱가포르	3.2	베트남	3.9	싱가포르	2.8
7	독일	3.1	대만	2.6	인도	2.3
8	러시아	2.2	인도	2.2	대만	2.3
9	멕시코	2.0	인도네시아	2.0	멕시코	2.1
10	영국	1.8	멕시코	1.9	호주	2.1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수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수입 상위 32위국(0.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4년 상위 15위국(1.5%), 2015년 상위 10위국(2.2%)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베트남에 대한 수입은 대체적으로 20% 이상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16.9% 감소한 반면 베트남에 대한 수입은 22.7% 증가하였음

〈표 1-II-10〉 우리나라의 수입 상위국 비중 추이

(단위: %)

수출 순위	2007년		2014년		2015년	
	국가	%	국가	%	국가	%
1	중국	17.7	중국	37.1	중국	20.7
2	일본	15.8	일본	10.2	일본	10.5
3	미국	10.4	미국	8.6	미국	10.1
4	사우디아라비아	5.9	사우디아라비아	7	독일	4.8
5	독일	3.8	카타르	4.9	사우디아라비아	4.5
6	호주	3.7	독일	4.1	대만	3.8
7	아랍에미리트	3.5	호주	3.9	카타르	3.8
8	대만	2.8	쿠웨이트	3.2	호주	3.8
9	인도네시아	2.6	아랍에미리트	3.1	러시아	2.6
10	쿠웨이트	2.5	대만	3.0	베트남	2.2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 추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5년 주요 수출 품목은 통신기기, 전자집적회로, 전기식 음향·시각 신호용 기기인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 특히, 최상위 품목인 통신기기를 비롯해 2015년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한 전기식 음향, 시각신호용 기기, 송신기기, 모니터 등 전용 부분품의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수출 상위 품목으로는 통신기기, 기타의 편물,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등임
 - 통신기기는 수출이 계속 증가하며 2015년에 최상위 품목을 차지한 반면, 기타의 편물,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등 섬유, 의류 관련 품목은 수출비중이 감소세를 보임
- 2007년 수출 상위 품목에는 기타의 편물을 포함한 섬유, 의류 관련 품목이 4개가 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 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 관련 품목이 7개가 포함되며 수출 상위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1-II-11〉 대(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07년		2014년			2015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품목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1	석유조제품	1,283 (22.3)	전자집적회로	2,601 (11.6)	2.3	통신기기	4,141 (14.9)	77.4
2	기타의 편물	250 (4.3)	통신기기	2,334 (10.4)	46.1	전자집적회로	2,591 (9.3)	-0.4
3	통신기기	177 (3.1)	인쇄회로	702 (3.1)	-4.8	전기식 음향, 시각신호용 기기	1,097 (4.0)	409.6
4	승용자동차	176 (3.0)	기타의 전기기기	675 (3.0)	-4.7	인쇄회로	917 (3.3)	30.7
5	플라스틱 침투, 도포, 피복직물	132 (2.3)	석유조제품	575 (2.6)	-23.7	기타의 전기기기	706 (2.5)	4.6
6	에틸렌	130 (2.3)	철강의 평판압 연제품 (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540 (2.4)	0.9	기타의 기계류	683 (2.5)	43.6
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28 (2.2)	기타의 편물	520 (2.3)	-0.1	기타의 편물	490 (1.8)	-5.9
8	편물(폭 30cm 초과, 탄성사 5%이상)	107 (1.8)	기타 기계류	476 (2.1)	18.8	송신기기, 모니 터 등의 전용부 분품	480 (1.7)	149
9	화물자동차	104 (1.8)	합성필라멘트 사직물	459 (2.1)	16.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448 (1.6)	-2.4
10	아연의괴	100 (1.7)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340 (1.5)	-2.3	화물자동차	429 (1.5)	46.6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 2015년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은 통신기기, 남자용 코트류, 여자용 코트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4개 품목(남자용 코트류)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특히, 최상위 품목인 통신기기를 비롯해 2015년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한 타자기 등 기타 사무용 기계 전용 부분품, 송신기기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전년 대비 증가가 뚜렷함

□ 2007년에는 원유가 수입 최상위 품목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자용, 여자용 코트류를 포함한 의류, 패션 관련 품목이 5개나 포함되며 수입 상위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1-II-12〉 대(對)베트남 수입 상위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07년		2014년			2015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품목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1	원유	122 (8.7)	남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437 (5.5)	32.9	통신기기	1,223 (12.5)	333
2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100 (7.2)	펠트제, 침투, 도포한 의류	306 (3.8)	25.4	남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396 (4.0)	-9.2
3	갑각류	72 (5.2)	여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304 (3.8)	27.4	여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305 (3.1)	0.1
4	천연고무	65 (4.7)	통신기기	282 (3.5)	51.2	타자기 등 기타 사무용 기계 전용부분품	282 (2.9)	368.4
5	가죽제 갑피의 신발	64 (4.6)	기타 전기기기	281 (3.5)	20.2	송신기기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264 (2.7)	11,780.6
6	커피	63 (4.5)	남자용 수트, 바지 (비편물제)	245 (3.1)	27.6	남자용 수트, 바지(비편물제)	264 (2.7)	8.0
7	석탄	52 (3.7)	빨나무	227 (2.8)	71.0	펠트제, 침투, 도포한 의류	235 (2.4)	-23.2
8	합성스테인플 섬유사	51 (3.7)	갑각류	207 (2.6)	64.4	빨나무	208 (2.1)	-8.4
9	절연전선 케이블	42 (3.0)	원유	192 (2.4)	-79.6	기타 전기기기	204 (2.1)	-27.3
10	기타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36 (2.6)	가죽제 갑피의 신발	191 (2.4)	34.4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195 (2.0)	8.4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나. 한-ASEAN FTA 활용 추이

- 우리나라가 ASEAN 회원국들로부터 한-ASEAN FTA를 활용하여 수입한 실적을 보면 2015년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인 것으로 조사됨
-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FTA 활용 실적이 49.2%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나, 베트남으로부터 FTA 활용 수입이 늘면서 2015년에 31.0%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5년 베트남을 통한 한-ASEAN FTA 활용 실적은 2007년에 비해서 8.5% 증가하였고 2014년에 비해서는 7.1%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2007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II-13〉 대(對)ASEAN 국가별 수입 중 한-ASEAN FTA 활용 추이

(단위: %)

순위	국가	2007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07년대비 증감률
1	베트남	22.4	11.2	22.3	23.9	31.0	7.1	8.5
2	인도네시아	49.2	40.4	31.2	30.3	21.7	-8.6	-27.6
3	말레이시아	21.7	25.9	19.5	21.5	21.4	-0.1	-0.3
4	태국	-	4.7	8.2	7.9	9.0	1.1	9.0
5	필리핀	-	5.1	6.0	4.6	5.0	0.4	5.0
6	브루나이	-	8.8	7.2	5.7	4.9	-0.8	4.9
7	싱가포르	6.1	3.0	3.2	3.4	4.2	0.8	-1.9
8	미얀마	0.5	0.8	2.0	2.4	2.3	0.0	1.8
9	캄보디아	-	0.1	0.3	0.5	0.6	0.1	0.6
10	라오스	-	0.0	0	0.0	0	0.0	0.0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다. 한-베트남 FTA

-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되었음⁶⁾
 -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15년 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4.1%(우리나라), 2.9%(베트남) 관세를 추가로 철폐할 예정임
 - 한-ASEAN FTA 관세 철폐 품목을 고려할 때 한-베트남 FTA를 통한 교역에서 15년 이내에 품목 기준으로 95.4%, 베트남은 89.9%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베트남 내수시장을 고려한 한-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의료 위생용품, 의료용기기, 화장품류인 것으로 조사됨
 -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 추이를 보면 수출금액 기준으로 의류는 2014년 전년 대비 26.6% 증가한 후 2015년에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부터 계속 20%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전제품과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류와 농산물의 수출성장이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음료도 지속적으로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이 급증하였음

- 의료 위생용품, 의료용 기기의 수출은 2014년 2.8% 증가에 그쳤으나, 2015년 17.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완구류는 2014년 28.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5%의 감소율을 보임

6)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표 1-II-14〉 베트남 내수시장을 고려한 한-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수출유망품목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의류 (여성용 의류, 기능성 의류, 티셔츠 등)	391	26.6	413	5.6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카메라, 믹서기 등)	123	21.8	149	21.2
의료위생용품, 의료용 기기 (탈지면, 수술용품, 의료용 기기 등)	48	2.8	56	17.5
화장품류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목욕용품 등)	43	14.5	53	21.6
농산물 (과일, 곡류 등 소비재 농산물)	32	11.0	37	16.6
음료 (과실주스, 기타 음료 등)	5	55.1	8	52.3
완구류 (계임기, 아동용 자전거, 인형, 장난감 등)	7	28.7	6	-16.5

자료: 조영태·박종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3.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1 통관행정 조직

- 통관행정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1945년 관세소비세국이 전신임
 - 관세총국, 내국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연방준비총국(General Department of National Reserves) 등이 재무부 소속 전문기관(professional specialized unit)에 속함⁷⁾

- 베트남 관세총국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와 감시,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집행 등을 주로 관할하고 있음

7) 베트남 재무부 홈페이지(영문), http://www.mof.gov.vn/webcenter/portal/mof/r/m/gioithieubo/tochucbomay?centerWidth=670px&leftWidth=286px&rightWidth=0&showFooter=false&showHeader=false&_adf.ctrl-state=15cci3ftc0_126&_afrLoop=32999790293878124#!%40%40%3F_afrLoop%3D32999790293878124%26centerWidth%3D670px%26leftWidth%3D286px%26rightWidth%3D0%26showFooter%3Dfalse%26showHeader%3Dfalse%26_adf.ctrl-state%3Dxwc0yihpy_4, 검색일자 2016. 9.23.

- 구체적인 임무는 이밖에도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통관 절차의 수행,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관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통계, 수출입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 등이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⁸⁾Tổng cục Hải quan, 총국), 성급세관(Cục Hải quan tỉnh, 해관국)과 지역세관(Chi cục Hải quan, 해관지국), 행정부서들과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⁹⁾
 -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 관세국)이 있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조직을 두고 있음¹⁰⁾
 - 2016년 10월 현재 35개의 지역세관을 두고 있음
-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음¹¹⁾
 -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임
- 관세총국의 14개 행정부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통관 및 관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들과 관세총국 내부의 행정조직으로 나눌 수 있음
- 통관행정(물품검사, 밀수단속)과 관세정책(관세율 결정, 환급금 심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로는 통관관리국, 세관검사국, 사후심사국, 관세국 등이 있음
 - 정보기술통계국(Cục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hống kê hải quan), 밀수단속국(Cục Điều tra chống buôn lậu), 통관관리국(Cục Giám sát quản lý về hải quan)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검사를 감독하고 원산지 결정, 지식재산권 상표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8) 베트남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는 용어로 사용함

9) 베트남 「관세법」 제14조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22 제2편 통관제도

- 세관검사국(Cục Kiểm định hải quan)은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안전위생기준, 인증, 분석,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지원함
 - 사후심사국(Cục Kiểm tra sau thông quan)은 통관 후 세액심사, 환급금 결정 등 통관 후 검사 및 조사를 담당함
 - 위험관리국(Cục Quản lý rủi ro)은 법령 준수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평가, 위험분류 측정 및 세관행정의 리스크 관리를 실시함
 - 관세국(Cục Thuế xuất nhập khẩu)에서는 수출관세,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할당량 결정, ASEAN 공동관세 품목분류 등 관세율 정책과 관세 행정 수립을 담당함
- 세관 운영에 관한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로 재무관리국, 감사국, 현대화세관국 등이 있음
- 재무관리국(Cục Tài vụ - Quản trị)은 예산추계 및 지출관리, 중장기 자금 운영, 투자 및 개발에 관한 재무관리를 실시함
 - 기타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사무국(Văn phòng)과 국제협력, 국제협약에 관한 연간계획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국(Vụ Hợp tác quốc tế)이 있음
 - 법무국(Vụ Pháp chế)에서는 법률문서, 가이드라인 제공, 규제평가 등을 수행함
 - 감사국(Vụ Thanh tra - Kiểm tra)은 세관 행정을 관리감독하여 부패방지, 국민과의 고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인사관리국(Vụ Tổ chức cán bộ)은 급여, 인사관리, 인사조치, 조직구조 개편 등을 담당함
 - 현대화세관국(Ban Cải cách hiện đại hóa hải quan)은 세관 현대화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세기구 설치 및 현대화 세관관리의 적용을 위한 개혁을 실시함
- 행정부서 이외에 부속기관으로는 정보자료원, 세관연수원과 세관연구소가 있음
- 정보자료원(Báo Hải quan)은 전자세관 신문을 출판, 법령의 공포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통신 및 교환을 수행하고 금융, 예산 및 법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세관연수원(Trường Hải quan Việt Nam)은 공무원, 임원에 대한 교육, 재교육, 교육프로그램 구축, 전문 간부에 대한 조직적 조언 등을 제공함
 - 세관연구소(Viện Nghiên cứu Hải quan)는 세관행정에 관한 연구, 세관 현대화의 기술적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행정 관리, 전문세관 운영에 관한 정보활동을 담당함

- 베트남에서는 지방 관세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되어 있음¹²⁾
 - 관세법령과 중앙정부 재무부, 관세총국의 지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음¹³⁾

[그림 2-1-1]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자료: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Lists/HaiQuanVietNam/Default.aspx>, 검색일자 2016. 10. 2.

- 베트남 관세청은 세계은행의 지지를 얻어 세관 현대화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전자통관절차(e-customs procedures)를 도입 하였음¹⁴⁾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13) 상동

14)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43

- 2005년부터 호치민과 hai Phong 시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다낭, 하노이, 동나이 등 20개 지역세관에 확대하였음
 - 전자통관시스템은 전자적 통관서류 제출, 세관의 전자 통관 수리, 수입신고 자료의 자동처리 등을 포함함
 - 나아가 종이서류를 통한 통관 허가 또는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정부기관 간에 온라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1년에는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화물통관시스템과 통관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신속통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¹⁵⁾
- 2020년까지 현재의 화물검사비율인 15% 내지 20%의 비율을 7%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목표임

2 통관 관계 법령

- 베트남의 통관행정에 관한 주요 법령은 「관세청법(Luat Hai Quan; LAW ON CUSTOMS)」과 「수출입관세법(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LAW ON Import & Export Duties)」을 중심으로 이루어짐¹⁶⁾
- 다수의 시행령(Nghị định; Decree; ND), 시행규칙(Thông tư; Circular; TT), 고시(Quyết định; Decision; QD), 지시(CHỈ THỊ; Directive; CT) 등으로 구성됨¹⁷⁾
 -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재무부 감독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많이 규정됨¹⁸⁾

15)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43

16) 손영환 관세관,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2014. 5.

17) 상동

18) 베트남 법률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 법령으로 대체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데 법규는 아니지만 'official letters', notice 또는 guideline에 의존하였음.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5년 내각과 정부는 'official letters'를 보다 투명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적용하도록 하고, 2008년에는 'official letters', notices 또는 guideline은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 기타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여러 법령에 의거하여 수출입 통관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소포 - 우정통신부
 - 음반·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 유해화학물질 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 자동차 - 교통운송부

가. 2015년 신관세법 개정

- 베트남 관세청은 지난 2014년 6월 베트남 「관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신(新)관세법」(LAW ON CUSTOMS, No. 54/2014/QH13)¹⁹⁾을 시행 중에 있음
 - 베트남의 기존 관세법은 2001년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2005년 부분 개정되어 9년 동안 시행되어 왔음
- 신관세법의 구성은 <표 2- I -1>에 제시된 것처럼 제1장부터 제8장까지 구성됨

<표 2- I -1> 신관세법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관세청의 임무, 조직
제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및 세관감시
제4장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
제5장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제6장	관세정보와 수출입물품 통계
제7장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제8장	시행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자료: LAW ON CUSTOMS, No. 54/2014/QH13, 검색일자 2016. 10. 2.

19)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에서 배포한 베트남 「신(新)관세법」의 우리말 번역본(『베트남 관세법 2014』)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 통관정보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음

- 신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 구축 등이 있음²⁰⁾
 -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가 도입됨
 -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

나. 2016년 수출입관세법 개정²¹⁾

- 베트남 관세당국은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의 수입과 조세 장려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수출입관세법」(Law No. 107/2016/QH13 on Import & Export Duties)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유럽-베트남 FTA,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등의 무역협정 체결과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에 대비하고 있음
 - 자국기업 보호와 조세 강화 등을 목표로 무역구제조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1~2년 사이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입안 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조 관련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 변화
 - 무역구제조치 규정 개정
 - 납세기한의 단축 등 기한 규정 강화
 - 면세가 제외되는 물품과 추가된 면세물품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pp.39-40

21) 윤보나, 「베트남 新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KOTRA 호치민 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4213>, 요약함 2016. 9. 22, 검색일자 2016. 7. 20.

1) 제조 관련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 변화

- 개정 「수출입세법」에 근거해 시행령(Decree 122/2016/ND-CP)이 발표됨
 -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에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 및 복합세, 관세율할당 품목을 명시하고 있음
 - 일반 수입 세금과 세율을 관련 고시(Decision 36/2016/QD-TTG)에 명시함
-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과 한-베 FTA를 체결한 상태로, 새로운 수입세율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베트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부분의 한국산 수출품은 두 무역협정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임

2) 무역구제조치 규정 개정

- 무역구제조치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적용조건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의 경우 기간은 5년으로 함
 - 베트남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해 덤핑되는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가 덤핑마진을 결정함
 -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간은 4년이며, 해외 수입품의 수량, 금액등이 크게 상승하면 베트남 기업의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음

3) 납세기한의 단축 등 기한 규정 강화

- 기존에는 수출입업자가 세관 등록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수출입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관이나 물품 반출 전에 관세 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함
 - 다만 특정 유예기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는 제외하며, 수출될 목적으로 임시 수입되거나 또는 재수입 목적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납세기간이 임시 수출입 기한으로부터 15일임

- 예외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기업은 수입품 통관 또는 상품 출고 후 다음 달의 1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음
 - AEO 기업 또는 ‘세관 인정 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 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임

4) 면세 제외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의 추가

-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의 차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 2016년 10월 재무부에서 공포한 Official Letters No.12166/BTC-TCHQ에 따라 수출용 제조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면세가 적용됨
 -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 또는 보증, 수리, 대체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
 - 재수출을 목적으로 상업적 용도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
 -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기기 및 부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료 및 살충제가 포함됨

II. 과세가격과 납부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가. 과세가격 결정 방법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과세가격은 관세율과 함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함
 - 종가세 물품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기준이 되며, 종량세 물품의 경우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함
- 베트남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음
 - 물품의 수출원가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운송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 베트남은 WTO 관세평가협정(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을 수용함

-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제1방법)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동종(제2방법)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 국내 판매가격(제4방법)
 - 제조원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5방법)을 순차 적용할 수 있음
 - 제1내지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제6방법)함
- 과세가격에 관한 기초가 되는 국내법은 베트남 관세법 「Article 71 of the Law on Customs No. 29/2001/QH of 29 June 2001」과 「Article 1, section 23 of the amended Law of 14 June 2005」임
- 시행규정으로는 「Decision No. 40/2007/ND-CP of 16 March 2007」와 「Circular No. 205/2010/TT-BTC of 15 December 2010」이 있음²²⁾
- 2014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시행령(Circular 29/2014//TT-BTC) 이 개정되었음²³⁾
- 수입물품, 단순한 가공으로 분류되는 것,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대해 명시하였음
 - 수입을 위한 상표권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됨
 - 개정 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가격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2)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2방법 및 제3방법)**
- 수입 물품의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국내로 수출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함
- 이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및 운송 거리 또는 운송 형태 등이 수입화물과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음

22)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57

23) 홍석균, “베트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 개정”, KOTRA 호치민무역관, 2014. 4.,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4924, 검색일자 2016. 7. 20.

3) 국내 재판매 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4방법 및 제5방법)

- 동종 또는 유사 물품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
 -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5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당해 수입 화물 또는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가격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일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 운임과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및 관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4방법)
 - 수입 물품의 제조원가에 수입 물품과 동류의 물품이 국내로 수출을 위한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5방법)

4) 합리적인 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6방법)

- 위의 방법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방법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나. 과세가격 사후심사 시행

1) 수입물품 준거가격제도

- 베트남은 WTO 협정을 수용하기 전에 와인, 세라믹 타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고가격의 위협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물품 준거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 또는 reference price)'를 시행해왔음
- 2011년 1월 관세당국은 WTO 협정에 따라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기업들의 과세가격 신고 오류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적용 대상 또한 기존의 13개 품목군에서 20개 품목군으로 확대하였음

- 「official letter No. 5486/TCHQ-TXNK of 10 October 2012」에 따르면 냉동 육류, 축산품, 신선 및 냉동 생선, 와인, 맥주, 위생용품, 직물류, 유리, 가스 스토브, 엔진, 발전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전기기, 핸드폰, 모든 종류의 차량, 오토바이, 철강 등이 포함되었음²⁴⁾
- 세관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관세 평가의 경우, 담당자가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통관 과정에서 수입을 제한하여 문제가 되었음

2) 과세가격 사후심사제 전환²⁵⁾

- 2014년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과세가격을 사후심사제로 전환하여 세관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심사 및 조정 기준이 되는 수출입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시행령(Circular 29/2014//TT-BTC)」을 공포함²⁶⁾
 - 이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세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실제 과세가격 산정에 ‘준거가격 목록(reference price list)’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함
 - 세관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관세를 책정하여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높았음
 -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만 이용하게 함
 - 과세가격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준거가격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함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위험관리목록(risk management list)에 있는 물품, 수출입 거래가 1년 미만 으로 짧을 경우에만 사전 관세평가 받도록 하고 있음
 - 위험관리목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 수입물품 관리를 하고 있음

24)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57

25) 홍석균, 「베트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 개정」, KOTRA 호치민무역관, 2014. 4.,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4924, 검색일자 2016. 7. 20.

26) 동 시행령은 2010년에 공포된 시행령(Circular 205/2010/TT-BTC)의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4년 4월 12일 부로 발효됨

2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수입 화물에는 관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됨

1) 수입 관세

- 수입 관세는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 품목의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 과세가격은 국경까지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터미널화물작업비(Terminal Handling Charge, THC)를 포함함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세안 공동관세 품목분류(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에 따른 8단위 HS 코드, 품목별 일반세율, 우대세율(MFN), 특혜세율(FTA) 등이 있음

2) 수출 관세

- 수출 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에만 부과됨²⁷⁾
- 수출 관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되며 수출 관세의 과세가격은 FOB(본선적재가격) 또는 DAF(국경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함²⁸⁾
 - 도착지 인도조건의 경우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이 기준이 됨

27)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28) 상동

3)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SCT)

-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the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of 30 June 1990, as amended」에 의거하여 특정 물품의 생산이나 수입,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단계와 내국에서의 유통단계 모두 거래단계별로 부과됨

- 내국 물품과 수입 물품에 특별소비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며 회피 방지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음²⁹⁾
 - 유통사에 의해 판매되는 제조·수입품의 경우 최초 구매 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유통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의 93% 이상이어야 함
 -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 24인승 미만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수입사의 판매가격이며, 수입된 차량 기준가격의 105% 이하가 될 수 없음

-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는 주로 사치품 또는 주류 또는 담배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해가 되는 물품과 사행성 서비스가 포함됨
 - 공산품으로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이하 자동차, 모터사이클, 항공기, 선박, 휘발유, 소비전력 30,000BTU 이하의 에어컨, 게임용 카드, 부적 등이 있음
 - 용역 제공으로는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 및 사행성 유흥 서비스 등이 있음

- <표 2-Ⅱ-1>을 보면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물품과 용역별로 10%에서 70%의 세율이 적용됨
 - 특히 담배와 부적에 대해 70%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9) 상동

〈표 2-II-1〉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단위: %)

부과대상		세율	
담배 (켈런/엠피켈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70	
	2019년 1월 1일부터	75	
증류주, 와인	알코올함유량 (ABV) 20% 이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5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0
		2018년 1월 1일부터	65
	알코올함유량 (ABV) 20% 미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
		2018년 1월 1일부터	35
맥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5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0	
	2018년 1월 1일부터	65	
24인승 미만 자동차		10~60	
배기량 125 cc 초과 의 오토바이		40	
비행기		30	
보트		30	
석유		7~10	
에어컨(90,000BTU 이내)		10	
카드놀이용 카드		40	
부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가라오케		30	
카지노, 슬롯머신 등		35	
베팅요소가 포함된 오락		30	
골프		20	
복권		15	

자료: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p.30, 검색일자 2016. 9. 18.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 특별소비세에 따라 2000cc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인하, 2000~2500cc 자동차는 현행 세율과 동일, 2500cc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인상하였음³⁰⁾

〈표 2-11-2〉 9인승 이하 승용차 특별소비세 세율

(단위: %)

구분	이전세율	신규세율		
		'16.7.1.~ '17.12.31	'18.1.1. 이후	세율 변경 여부
1500cc 이하	45	40	35	인하
1500~2000cc 이하	45	45	40	인하
2000~2500cc 이하	50	50	50	동일
2500~3000cc 이하	50	55	60	인상
3000~4000cc 이하	60	90	90	인상
4000~5000cc 이하	60	110	110	인상
5000~6000cc 이하	60	130	130	인상
6000cc 초과	60	150	150	인상
캠핑카	상기 배기량별 구분과 동일(45~60)	70	75	인상

자료: 윤보나,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장벽 구축」, KOTRA 호치민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marketing-reportage/overseamarket-detail.html>, 검색일자 2016. 7. 20.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부가가치세는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하여 생산, 판매 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됨
 - 기존의 매출세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임
 - 부가가치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 부과 과세표준가액에도 부과되며, 해외로부터 제

30) 윤보나,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장벽 구축」, KOTRA 호치민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marketing-reportage/overseamarket-detail.html>?, 검색일자: 2016. 7. 20.

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외국인 계약자세금(Foreign Contractor Tax, 이하 FCT)을 통해 부과됨

- 전년도 1억VND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하고 있음³¹⁾
 - 동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 또는 임차한 굴착장비, 비행기 및 선박류의 장비임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은 R&D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원재료를 수입한 것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에 이용되는 장비, 기계, 스페어 부품 및 특수한 운송장비와 필요재료를 수입한 것
 - 보석으로 가공되기 전 상태인 금괴 상태로 수입된 금과 원유, 광석, 모래, 희토류(rare soil), 희석류(rare stones) 등의 수출,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전, 소프트웨어 해외수출 등이 있음
 - 또한,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될 수 있는 신고납부 대상 제외 재화 및 서비스에는 특정 용역의 대가가 아닌 급여, 상여, 보조금, 탄소 배출권판매 및 기타 금융수익, 현물출자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표 2-Ⅱ-3>과 같이 품목에 따라 0%와 5%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함
 - 해외로 수출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0% 세율이 적용됨
 - 다만,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광고, 호텔서비스, 교육훈련, 오락, 관광 등은 0% 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서도 지역 내 회사에 제공되는 주택임대, 통근 운송, 특정한 외주 만찬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용역 등은 0% 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31)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표 2-11-3〉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단위: %)

세율	적용대상
10%	표준세율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제외', '면세', '0%', '5%' 등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물품과 용역의 공급에 적용
5%	일반적인 생필품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적용 - 상수도공급,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 식재료,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사료, 다양한 농산품 및 농업 서비스, 기술/과학용역, 고무 라텍스, 설탕 및 그 부산품 공급, 특정 문화예술 스포츠서비스/제품 및 복지주택의 공급 등
0%	외국 및 무관세지역에 대한 수출 재화 및 수출 용역 - 베트남 외/무관세지역에서 소비된 것,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수출을 위한 가공용역용 재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한 재화의 수출,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하여 제공된 건설 및 설치 용역, 항공·해운·국제 운송 용역 등

자료: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제방식과 직접계산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한번 선택한 부가세 신고방식은 연속된 2년간은 유지되어야 함
- 공제방식은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VND 이상이고 공제방식으로 자진 적용을 신고한 특정 사업장에 적용됨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함
 -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 부가세를 처리하되, 수입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관세 납부영수증 기준으로 수입부가세의 공제 금액이 결정됨
- 직접 계산방식은 과세대상 매출이 10억VND 미만으로 개인 및 가내 사업자, 적합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됨
 -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으로서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형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금, 은, 보석을 매매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판매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가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 ‘VAT Invoice’를 공급하는 자료부터 수취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필수항목이 기재되어야 하고 지역 과세당국에 등록 및 고지되어야 함
 - 수입 시 지급된 부가세의 적합한 증빙은 세금 납부 영수증(Tax payment voucher)이며 FCT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의 증빙은 FCT 지급 영수증, 수출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Commercial Invoice’의 사용이 허용됨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매 익월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이 500억 VND 이하인 경우 매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분기별 신고가 가능함

5) 환경보호세(Environment Protection Tax)

- 환경보호세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입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적용은 중량단위로 부과함
 - 플라스틱백은 포장에 사용되거나,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인 소재인 경우에는 제외함

〈표 2-11-4〉 환경보호세 구분

대상	단위	금액(VND)
석유, 디젤, 구리스 등	litre/kg	900 ~ 1,000
석탄	ton	10,000 ~ 2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kg	4,000
플라스틱백	kg	40,000
사용이 제한된 화합물 등	kg	500 ~ 1,000

자료: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나. 납부세액의 계산

- 종가세 물품의 관세액은 과세표준인 CIF(거래가격+운임+보험료) 가격에 수입 관세율을 곱하고 종량세 물품의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수량에 단위당 관세액을 곱하여 산정함
 - 종가세=(거래가격+운임+보험료)×수입 관세율
 - 종량세=수입물품 수량×단위 당 관세액

- 특별소비세(SCT)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특별소비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 특별소비세(SCT)=(수입가격+수입관세)×특별소비세율

- 부가가치세(VAT)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더한 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함(5% 또는 10%)
 - 부가가치세(VAT)= (수입가격+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율

다. 기타 비용

- 「Circular No. 172/2010/TT-BTC of 2 November 2010」에 따라 2010년부터 베트남에서 수출입하는 경우 건당 통관수수료 20,000VND를 납부하여야 함³²⁾
 - 이 비용은 관세당국의 수수료 유치 계좌(fee custody accounts)로 운영되며, 세금 징수,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세관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사용됨

- 보세구역 사용료는 차량, 오토바이, 컴퓨터, 사무용 집기, 가전제품, 에어컨, 금, 기타 보석류 등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부과됨

- 「Decision No. 98/2008/QD-BTC of 4 November 2008」에는 해상보험료, 통세, 부표사용료 등을 포함한 해상운송 관련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항만수수료(seaport service charge)는 개별 항만당국에서 선박의 엔진용량 및 용적량, 화물의 규격과 주량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따라 부과함

32)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3 관세의 신고와 납부

- 수입신고는 화물이 도착하고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수출입신고서의 오류사항을 신고인이 발견한 경우, 수출입신고서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이 가능함
 - 이 경우 부족세액 또는 지연이자를 납부할 수 있음
 - 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

- 관세 등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은 수출입신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함
 -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일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일시 수출입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산절차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통관절차로, 특정한 경우 수출입 유형에 따른 정산 신고를 하여야 함
 -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하고 제품을 수출한 경우 원료의 수입통관이 진행된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정산하여야 함
 - 경제특구, 보세구역 내 생산업체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간 내의 수출, 수입, 반입, 반출, 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일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 보세구역 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임

- 한편, 과세당국의 관세조사 등으로 인해 적발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됨³³⁾

33)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42 제2편 통관제도

- 해당 과소납부세액의 최초 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일 0.05%, 90일 이후부터는 일 0.07%의 연체이자가 부과됨
- 2013년 7월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가산세에 대해서는 5년이 적용됨³⁴⁾
- 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금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제척기간의 적용 없이 언제든지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음

34)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III. 관세율 제도

1 개요

- 베트남에서의 관세율은 국회 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에서 정한 HS 코드 4단위의 '법정세율(statutory rates)'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 법정세율은 정부에서 적용세율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관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시행규칙(Circular, TT)으로 매년 공포함
 - 베트남은 WTO 양허세율을 모두 수용하였기 때문에 양허세율은 국회 상임위에서 정한 관세율의 범위 내에서 상한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가. 관세율의 종류

- 베트남 수출입세법에 따른 관세율의 종류는 기본관세율(ordinary rates),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최혜국관세율과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본수입관세는 수입한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품목의 경우 최혜국세율의 170%까지 부과됨³⁵⁾
 - 최혜국관세나 특혜관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임
 - 특정 기본관세율은 하위 법령에 따라 관련 최혜국관세율의 150%로 고정되어 있음
- 최혜국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은 베트남을 통상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MFN)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임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나 대만처럼 특별한 일부 경우에 특혜관세 자격이 주어짐
- 특혜관세(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는 FTA 등 베트남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
 - 베트남의 FTA 체결국가(2016년 9월기준)는 ASEAN 회원국으로서 일본, 중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우리나라가 있으며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는 일본, 칠레, 우리나라, 유라시안(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이 있음
 - ASEAN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홍콩 및 이스라엘과의 FTA도 논의 중에 있음
- 베트남은 2016년 3월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2015년 10월에 서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와 EU와의 FTA가 여기에 해당함
- 2010년 1월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TPP에 가입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면서 회원국들에게 98% 이상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함

35)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 2015년 10월 미국, 캐나다,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회원국들은 그동안의 여러 협상안을 마무리하였음
- 협약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65% 이상 즉시 철폐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98%까지 제거될 것임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민감 품목들은 비양허 품목이거나 관세율할당(TRQ)에 해당하는 품목들로서 쿼터 이내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쿼터 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시스템임
- 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약 40%에 달하며 농수산물, 섬유제품, 신발, 가구, 전자 및 전기제품, 고무 등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발효 즉시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³⁶⁾
 - 특히 TPP 회원국들은 베트남 섬유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 수출액 전체의 67%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12월 발효한 한·베트남 FTA에서 우리나라에게 89.9%를 개방하고 TPP 회원국에게는 98%까지 개방을 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³⁷⁾
- TPP회원국에게는 특히 7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중·소형차에도 관세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무관세 적용을 하기로 함

36) TUOI TRE NEWS, "Vietnam to drop up to 98% of tariffs after joining TPP", <http://tuoitrenews.vn/business/31575/vietnam-to-drop-65-of-tarrifs-after-landmark-trade-deal-takes-effect>, 2015. 11. 13, 검색일자 2016. 9. 18.

37) 박민식, 「우리나라 3대 수출국 베트남, TPP에서 98%이상 시장개방...자동차 수출 등 영향」,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2f9545860a5d4823a2697602ed84ab76>, 2016. 2. 4, 검색일자 2016. 7. 20.

나. 관세율 분포

- 베트남은 2007년 WTO 양허세율을 수용할 당시 농산물 22.4%, 비농산물 13.1%로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17.5%로 수용하였음
 - 관세율 양허가 2019년까지 모두 이행되면 전체 품목에 대한 베트남의 양허세율은 11.4%에 도달함
 - 대부분의 관세율 수준은 0% 내지 40% 수준으로, 설탕(100%), 와인과 증류주(65%), 담배(80~150%)와 차량(100%) 등과 같은 민감(sensitive) 품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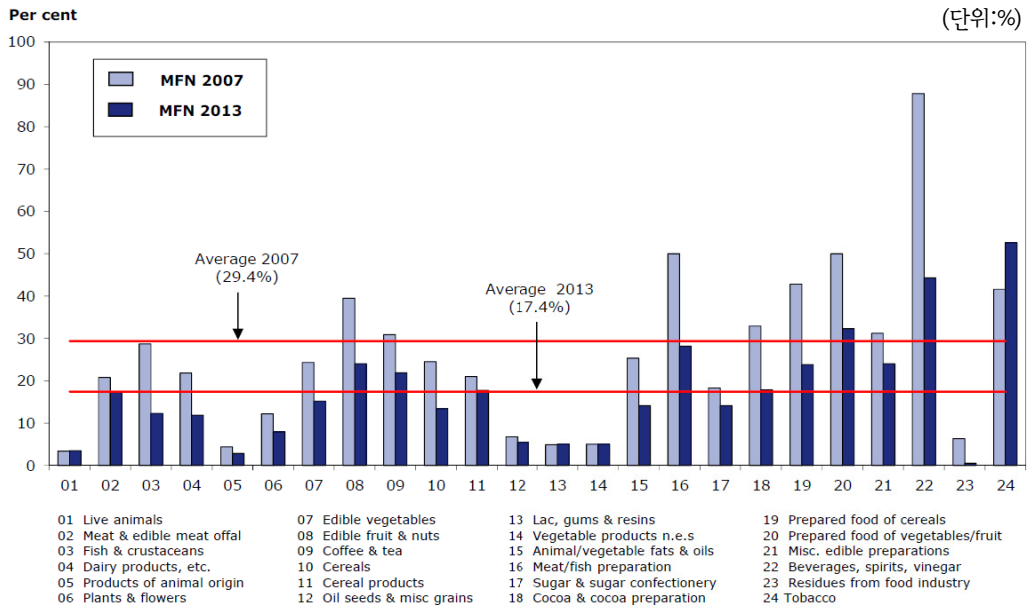
- 베트남은 복수국 간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가입함
 -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양허하였음
 - 화학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산업별 관세양허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양허하고 있음

- 베트남은 모든 관세율을 증가세를 기본으로 양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중고승용차에 대해서는 200% 증가세 또는 복합세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베트남은 특정 민감품목에 대해서 특정세율 또는 복합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중고승용차만은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림 2-Ⅲ-1]을 보면 농산물에 대한 양허수준이 2007년 29.4%에서 2013년 17.4%로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음
 - WTO에서 베트남의 관세율 분포를 농산물과 비농산물로 나누어 2007년 가입 당시와 2013년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임³⁸⁾
 - 농산물은 HS상 제1류부터 제24류 담배 및 담배제품으로 한정하고, 비농산물은 앞의 품목을 제외한 품목으로 정함
 -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2007년 평균 17.4%에서 2013년 9.3%로 낮아졌음

38) 재무부 시행규칙(Circular No. 193/2012/TT-BTC)상의 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WTO에서 산정함

[그림 2-III-1]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농산물에 대한 MFN 세율 변화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 46

- <표 2-III-1> 2014년에 대한 관세 분포를 살펴보면, 비농산물의 면세비율은 38.4%이며 농산물의 면세비율은 15.5%로 비농산물의 면세비율이 높음
- 농산물은 25%에서 50%의 세율 구간의 분포가 가장 많으며(23%) 비교적 편차 없이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15% 내지 25%의 세율과 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각 20%씩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면세품목의 비율이 3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III-1〉 2014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관세	8.7	15.9	18.9	8.8	20.8	24.4	2.3	0.3
실행관세	15.5	16.7	16.2	10.6	17.0	23.0	0.7	0.3
비농산물								
양허관세	15.0	34.0	13.6	12.8	20.1	4.1	0.4	0.0
실행관세	38.4	19.4	7.2	12.9	18.0	3.6	0.3	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5, http://stat.wto.org/TariffProfiles/VN_e.htm, 검색일
자 2016. 10. 13.

- 수입관세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2-III-2〉에 가장 높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류와 담배로, 최대 135%의 고세율이 적용되어 43%의 평균 세율을 보임
 - 커피와 차(26.8%), 과일, 야채 및 식물류(20.1%)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 식물류(9.6%)에 비해 의류에 고세율(19.8%)을 적용하고 있으며 화학제품의 세율이 3.1%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실행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의 실행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운송장비(17.5%), 의류(19.8%), 수산물과 수산가공품(15.6%) 및 신발(12.9%)로 조사됨
- 〈표 2-III-2〉에서 나타나는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과의 차이는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관세율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관세율정책의 잦은 변화는 WTO 회원국들의 베트남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³⁹⁾
 - 베트남의 관세율정책은 에너지 가격과 국내 물가상승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2008년 이후의 관세율의 변경은 축산업, 자동차 제조업, 철강산업 등 특정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9)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표 2-III-2〉 베트남 수입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15.0	7.0	40	14.2	8.3	40
유제품	16.6	0	35	9.6	9.5	20
과일, 채소, 식물	21.2	8.1	40	20.1	8.0	40
커피, 차	26.8	0	40	26.8	0	40
곡물 및 곡물조제품	20.9	2.6	80	17.3	12.6	40
종유, 지방 및 유지	11.6	1.4	35	8.4	15.7	35
당류와 설탕과자	33.3	12.5	100	17.8	11.8	40
음료 및 담배	50.2	0	135	43.0	0	135
면	14.0	20.0	20	6.0	40.0	10
기타 농산물	7.6	24.3	20	6.6	43.2	20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17.7	1.2	35	15.6	8.6	35
광물 및 금속	11.2	11.7	60	8.0	39.0	45
석유	34.2	0	40	11.9	11.1	20
화학제품	6.1	8.7	27	3.1	61.7	27
목재, 지류 등	11.5	15.4	25	10.4	25.3	25
직물	10.4	0.3	100	9.6	11.5	100
의류	19.9	0	20	19.8	0	20
가죽제품, 신발류 등	14.1	1.9	35	12.9	15.2	35
기계류	5.7	34.6	50	3.3	64.3	50
전자기기	9.7	31.5	35	7.9	49.5	35
운송장비	22.2	21.6	198	17.5	37.2	75
기타 제품	10.3	38.2	35	9.8	42.0	35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5, http://stat.wto.org/TariffProfiles/VN_e.htm, 검색일자 2016. 10. 13.

2 품목분류

- 베트남은 WCO HS 협약 가입국으로서 전 세계 공통인 HS코드 6단위를 사용하며, ASEAN 공동관세율로 HS 8단위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관세율표에 규정된 관세품목은 2007년 WTO 가입 당시 HS 코드 10단위 10,689개에서 2012년 HS코드로 변경된 후 2013년에 8단위 HS코드 기준 9,558개인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을 알고자 하는 경우 [그림 2-Ⅲ-2]과 같이 베트남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⁴⁰⁾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2-Ⅲ-2]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화면

VIETNAM CUSTOMS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Efficiency
About Us Public Services News & Events

Home > Public services > Tariff Database [Return back to lookup screen](#)

DESCRIPTION

Section XVII
Section description
Chapter 87
Chapter description
HS Code **87032393**
Description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000 cc but not exceeding 2,500 cc

DETAILS [Return back to lookup sc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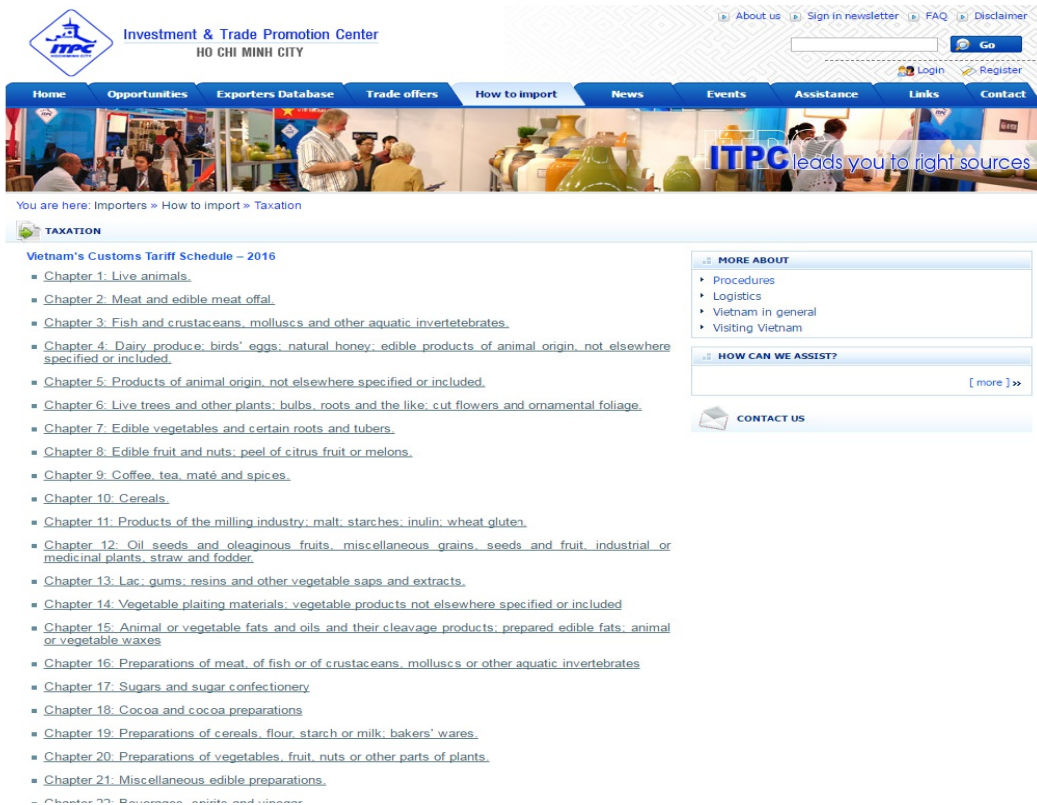
Tariff	Tax rate (%)	Effective Date	Legal Document	Changes
Favour	70	01/09/2016	122/2016/ND-CP	View
FTAs:				
ASEAN (ATIGA)	40	01/09/2016	129/2016/ND-CP	View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AANZFTA)	100	01/09/2016	127/2016/ND-CP	View

자료: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화면,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portlet=DetailsImportTax&language=en-US&code=87032393&searchTerms=hs%3d8703> 검색일자 2016. 9. 18.

40)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되며,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하면 적용되는 세율, 해당 시행령, 관세율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호치민 투자진흥청(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ITPC) 홈페이지 [그림 2-Ⅲ-3]에서도 관세율 확인 가능함⁴¹⁾
 - 투자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조회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됨
 - 류(Chapter)별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MFN세율, 부가가치세율과 FTA 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Ⅲ-3]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화면



자료: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홈페이지,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검색일자 2016. 9. 18.

41)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 관세율표 [그림 2-Ⅲ-4]의 HS Code 8703.23.93⁴²⁾보면 실린더 용량 2,000cc 초과 2,500cc 이하의 승용차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 승용차의 MFN 세율은 70%, ATIGA 40%, AANZFTA 100%, 우리나라와의 FTA 세율인 VKFTA는 78%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Ⅲ-4] 2016년 관세율표 예시

Vietnam Customs Tariff Schedule - 2016

Heading Subheading COD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MFN Rates	This Th. - Thuởng	Special preferential import duties														VAT Rates - TT83
					ATIGA	ACFTA	NON-ACFTA	AKFTA	NON-AKFTA	VKFTA	AANZFTA	AIFTA	VCFTA	AJCEP		VJEPA			
														15-16	16-17	15-16	16-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703.23.91	----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800 cc.	Unit	70	105	40	*		*		78	100	*		*	*	*	*	10	
8703.23.92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800 cc but not exceeding 2,000 cc	Unit	70	105	40	*		*		78	100	*		*	*	*	*	10	
8703.23.93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000 cc but not exceeding 2,500 cc	Unit	70	105	40	*		*		78	100	*		*	*	*	*	10	
8703.23.94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cc	Unit	61	91.5	40	*		*		74	100	*		*	*	*	*	10	
8703.24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000 cc.																		
8703.24.10	--- Ambulances	Unit	15	22.5	0	20		0	KH, MM, MY	0	10	*		*	*	*	*	5	
	--- Hearses:																		
8703.24.21	---- Completely Knocked Down		As instructed at points b.5.4 and b.5.5 article 3 item 1 Chapter 98										10						
8703.24.29	---- Other	Unit	15	22.5	0	20		0	KH, MY	0	5	*	10	3	2	4	3	10	
	--- Prison vans:																		
8703.24.31	---- Completely Knocked Down		As instructed at points b.5.4 and b.5.5 article 3 item 1 Chapter 98										10						
8703.24.39	---- Other	Unit	15	22.5	0	20		0	KH, MY	0	5	*	10	3	2	4	3	10	

Investment & Trade Promotion Centre of Ho Chi Minh City

자료: 베트남 관세청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검색일자 2016.10.13

- 관세율표에 보이는 FTA 세율의 약어는 다음을 나타냄
 - ATIGA: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 ACFTA: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42) 사람을 위한 승용차나 다른 교통수단 및 경주용차와 스테이션 웨건(station wagons)을 포함

- AKFTA: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⁴³⁾)
- VKFTA: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참고문서 : 201/2015/TT-BTC)
- AANZ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AIFTA: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 VCFITA: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TA)
- AJCEP: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VJEPA: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43) 167/2014/TT-BTC

IV. 감면 및 환급

1 관세의 감면제도

- 베트남의 관세 감면제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과세할 물품의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관세를 인하해주는 감세제도와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세하는 면세제도로 나뉨
 - 관세 면세는 국제적 관례의 존중 또는 국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과, 임가공 물품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됨
- 베트남의 관세 감세, 면세 및 환급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수출입관세, 가격대 유지세, 지원방지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⁴⁴⁾
 -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각각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⁴⁵⁾

44) 베트남 팩토리알,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http://vietnam.vnanet.vn/>, 검색일자 : 2016.11.01

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2

가. 관세 감세제도⁴⁶⁾

- 베트남의 관세 감세제도는 과세할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의 경우 수입 관세를 일정 비율로 감세하는 제도임
 - 관련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제18조와 세금 환급, 세금 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의 관세총국 결정서(No. 1780/QĐ-TCHQ)임
 - 감면에 대한 관세총국 결정서(No. 1780/QĐ-TCHQ)는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 관세 감세의 대상은 수입신고 전 과세물건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등 아래의 사례가 해당됨
 - 수출입 물품이 관세총국의 검열 중 훼손 또는 분실되는 등 가치가 손상된 물품
 - 재수출을 위한 가공 및 생산 계약을 맺고 수입된 기계·장비 및 수입 원료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관세 감세의 확정은 심사기관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수입 세금에 대한 감세가 검토됨
 - 이 경우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함

- 관세 감세의 적용은 먼저 세금환급 또는 세금면제 이후 관세 감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관세총국은 수출입 신고자의 보다 편리한 행정수속 절차를 위해 먼저 관세 감세를 진행하고 이후 관세 감세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함

- 관세 감세에 대한 신청절차는 면세 신청과 동일하므로 후술하도록 함

46) 베트남 팩토리알,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http://vietnam.vnnet.vn/>, 검색일자 : 2016.11.01

나. 관세 면세제도

1) 관세 면세제도

- 베트남의 관세 면세제도는 국제적 관례를 존중하고 국가의 정책목적과 행정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관련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제16조 내지 제17조와 세금 환급, 세금 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의 관세총국 결정서(No. 1780/QĐ-TCHQ)임
- 관세법상 관세 면세대상은 박람회 물품, 이산화물, 임가공무역 원재료, 외교관 물품 등 <표 2-Ⅳ-1>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표 2-Ⅳ-1> 베트남의 관세 면세 대상

구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한 물품 ○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물품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규정에 따른 이동재산(이산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부 규정 한도에 대응하는 베트남 내에서의 우대권 ○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기관 또는 개인의 수출입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가공무역 물품 ○ 위탁가공무역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품 면세기준에 속하는 수출입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비·기계 2. 설비·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악세사리 3. 설비·기계와 관계있는 공장라인에 설치되는 설비, 기계와 동 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물자 4.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건설물자 5.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상업센터, 기술용역, 슈퍼마켓, 골프장, 여행단지, 체육단지, 오락여가단지, 진료병원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회계, 자문용역 분야

〈표 2-IV-1〉의 계속

구분	비고
	투자사업계획을 위한 정부 규정 목록에 따른 최초 수입 설비물품
○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	1. 석유가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기계, 교체 부분품, 전용운송수단 2.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물자
○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물품	-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 부분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술-재료, 과학 서적을 포함
○ 투자권고 특별분야 영역목록 또는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목록에 속하는 사업계획의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 부품	- 생산 시작일로부터 5년 기간 안에 수입세가 면제됨
○ 보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한 물품의 수입	- 보세구역 제조물품이 외국에서 수입 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경우, 수입시점에 그 물품을 구성하는 수입 원료와 부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함
○ 정부 수상이 결정하는 기타 구체적인 경우	

자료: 베트남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제16조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관세의 감세와 면세의 신청 절차는 세관의 서류 접수, 서류 분류 작업, 세금 면제에 관한 서류 확인, 그리고 세금 납부자의 현재 주소 확인 후 세금의 환급 또는 면제를 진행함⁴⁷⁾
 - 관세 감면 절차의 관련 법령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금 및 세무관리 시행규칙(No. 38/2015/TT-BTC) 제129조에 의함
 - 세관의 세금 환급 또는 면제의 시행절차는 관련법령은 세금 관리의 보충법(No. 21/2012/QH13) 제18조 1항에 의함
- 세관은 관세 감면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고 동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감면 관련 서류의 보관, 세금처리, 연체금 납부, 벌금 납부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함

47) 베트남 팩토리알,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http://vietnam.vnnet.vn/>, 검색일자: 2016.11.01

2) 2016년 개정된 수출입세법상 관세 면세 내용⁴⁸⁾

-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수출입세법에 따라 24인승 이상의 차량은 투자용 고정자산으로의 수입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자 출퇴근 목적의 24인승 이상의 차량의 최혜국관세율(MFN), 한-아세안 FTA 세율, 그리고 한-베트남 FTA 세율이 모두 70%로 동일함
 - 이에 따라 다수의 한국 투자기업들은 관세비용 절감을 위해 비용이 낮은 베트남 제조 차량에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코트라에 따르면, 수출입세법 개정의 여파로 한국의 대(對)베트남 10인승 이상 차량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과거 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던 수출용 임가공 원자재가 관세 면세 가능품목으로 추가되었음
 - 베트남에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받은 원자재 등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가 일시 면제됨⁴⁹⁾
 - 추후 수입 신고자는 수출이 완료된 이후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유예 절차를 종료해야 함⁵⁰⁾

- 임가공 물품 중 수입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자재, 공급품, 부품, 반가공 제품, 수출용 상품 포장을 위한 완성 포장품 또는 포장 자재, 수출품 보관을 위한 부품, 샘플 등임⁵¹⁾

- 개정된 세법에 따라 관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임가공 업체는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유동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개정 전 임가공 기업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최종 수출 완료 시 수출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 비율만큼 환급을 진행함으로써 수출물품 제조기간 동안 관세액 만큼 현금 확보가 어려웠음

48) 코트라, 「베트남 신 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2016.09.22., 검색일자 : 2016.09.19

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0

5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51) 베트남 재정부가 각 지역 세관에 지시한 서류 No. 12166/BTC-TCHQ에 따름

- 또한, 임가공 원자재에 대한 관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던 업체는 불필요한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수출물품 제조에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세관에 관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기업은 수입시점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최장 275일 동안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수출시점에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한 뒤, 최종 수출이 완료된 후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침
 - 개정된 수출입세법은 임가공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의류와 수산물 산업에서 수입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임에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합리함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 외국인투자촉진에 의한 관세 면세제도

- 베트남의 관세 면세제도의 대표적인 물품은 해외투자 목적으로 수입되는 고정자산임
 - 해외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음
- 베트남은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와 중고 기계류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과 투자기획과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승인받은 수입계획에 의함
- 관세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MPI)로부터 투자허가서를 취득 후 수입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과(DPI)에 신청해야 함
 - 수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 공식 서한, 수입 재화의 목록(재화명, 수량 기술 사양성 및 금액), 투자 허가서 또는 사업 허가서 사본,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등이 있음
- 투자기획과(DPI)에 수입계획 신청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승인함
 - 투자 기업은 당해 승인을 받은 후부터 허용된 기계류 및 장비를 수입할 수 있음

- 중고설비 기계류의 수입 통관 시 투자기획과(DPI)에 제출할 서류는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통관 후 국내 판매 및 투자와 관련된 서류로 구분됨
 - 통관 관련 서류
 - ① 선하증권(B/L) ②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④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국내판매 및 투자 관련 서류
 - ①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 ② 투자기획과의 수입 계획 승인서 ③ 수령 서류(Receipt docs form) 1과 2, ④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 2부, 그리고 ⑤ 기업 및 제품설명서(Introduction letter)

2 관세의 환급제도

- 베트남의 관세 환급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비록 수출입 행위가 일어났으나 실제 베트남 시장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임
 - 관련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제19조 내지 제21조임
- 관세 환급대상은 수입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되거나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 행정절차에 따른 환급으로 <표 2-IV-2>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표 2-IV-2〉 베트남의 관세 환급 대상

구분	비고
○ 수입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및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 원상태 수출품
○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수출, 수입 물품이 실제로 수입, 수출되지 않은 경우	
○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보다 실제 수출, 수입이 적은 경우	

〈표 2-IV-2〉 계속

구분	비고
○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및 물자가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 수출입세금법상 면세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물품으로서 수출세,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에 한함
○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해야 하는 경우	
○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과 개인의 물품으로서 건설, 조립공정, 생산 업무에 사용되거나 기타 목적으로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 기계, 설비, 용구, 운송 수단으로 한정함

자료: 베트남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제19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세관 신고자는 물품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⁵²⁾
 - 환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⁵³⁾
 -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필증
 -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요량 증명서
 - 대금결제 확인서류
- 최초 수입 신고 시 임가공 원재료를 수출용 원재료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함⁵⁴⁾
 - 임가공 원재료를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출 이행기간에 제한이 없음

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53) 손영환,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05, p.17

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 세관 신고자는 세관 신고 또는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어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그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365일 이내 오류를 발견하여 환급신청 한다면, 과납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⁵⁵⁾
- 환급심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음⁵⁶⁾
 - 환급심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신청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환급관련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보완 요청문서를 송부해야 함
 - 관세 환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됨⁵⁷⁾
- 환급심사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의 실수로 인해 환급심사기간을 초과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액과 함께 환급이자⁵⁸⁾가 지급되어야 함⁵⁸⁾
 - 환급이자⁵⁸⁾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날로부터 환급되는 날까지, 환급시점 무역은행 대출이자율 수준에 계산된 이자를 지급함
- 환급이 완료된 물품이 수출입세법에 규정된 면세물품인 경우, 납세자가 차후 면세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함⁵⁹⁾
 - 환급세액 추징과 관련하여 추징세액 계산의 근거 및 추징액의 기한은 별도로 규정함

55) 관세청, 『베트남 관세법』, <http://www.customs.go.kr/kcshome/>. 검색일자 : 2016.06.15, 베트남 관세법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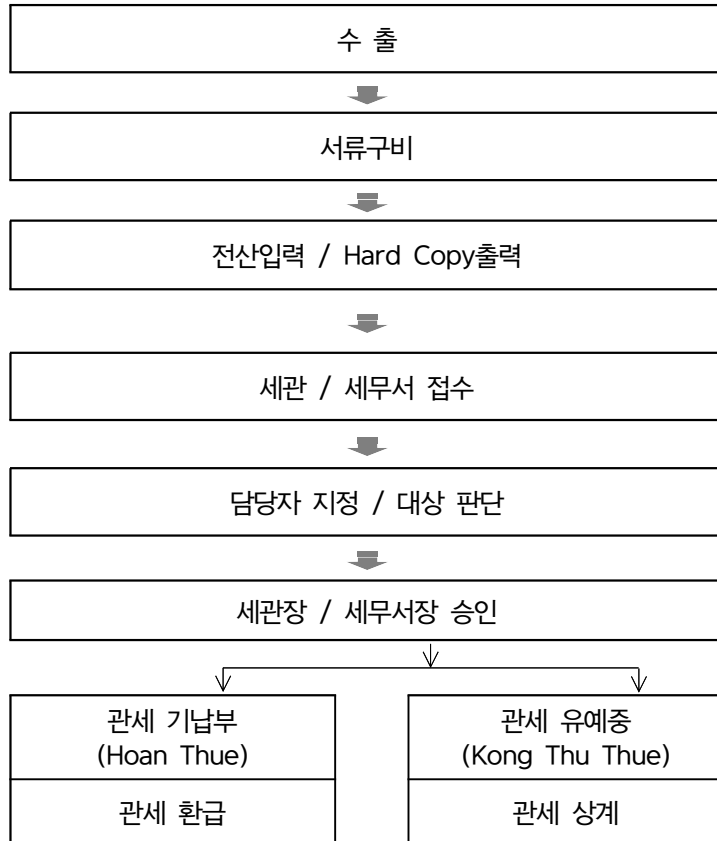
56) 베트남 관세법 제20조

5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58) 베트남 관세법 제20조

59) 베트남 관세법 제21조

[그림 2-IV-1] 베트남의 관세 환급절차



자료: 손영환,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05, p.17

V. 원산지제도

- 원산지제도는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행정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 국제물품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말함⁶⁰⁾
 - 원산지제도는 수출입 물품의 생산국과 조달국을 판정함으로써 FTA 비참여국의 관세 인하 무임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양자 간 협정인 FTA는 비참여국으로부터 하여금 자국 상품을 FTA 참여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여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베트남은 특혜 원산지제도(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비특혜 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를 운영하고 있음
 - 특혜 원산지제도는 관세의 면제나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협정을 맺은 당사국 간 거래되는 물품이 특혜관세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임⁶¹⁾
 - 비특혜 원산지제도는 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할당관세 부과를 위한 수량 또는 제한을 적용할 물품 확인, 그리고 무역통계 활용을 위해 법령으로 규정한 제도임⁶²⁾

60)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안세안 FTA 주요내용』, 2007.4, p.32

61) 대한상공회의소, 「특혜원산지제도」,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검색일자: 2016. 10.07

62) No.19-2006-ND-CP 제3조 2항

- 베트남 원산지제도에 따라 수입 통관 시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⁶³⁾
 - 베트남 관세법과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MFN)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사회안전, 공중보건 또는 환경위생을 위한 검사 또는 검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인 경우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역차별 관세, 보호관세조치, 할당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1 특혜 원산지제도

- 베트남의 특혜 원산지제도는 베트남이 서명이나 가입한 국제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우대 및 비관세를 우선 적용하는 제도임⁶⁴⁾
 - 베트남은 다자간 협정으로 아프타(AFTA)와 아세안(ASEAN) 협정이 있으며 국가간 협정으로는 일본 EPA, 칠레 FTA, 그리고 한국 FTA가 있음
- 베트남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또는 산업무역부 지정기관에서 발급해줌
 - 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① 물품 출항 후 선하증권(B/L)을 발급함 ② 베트남 통관시스템에 선하증권(B/L)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업로드함(통관시스템은 산업무역부의 경우 ECOSYS,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경우 COVCCI) ③ 해당 발급기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함 ④ 1~2일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음⁶⁵⁾

6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베트남」, 2012.12, p.17

64) No.19-2006-ND-CP 제4조

65) 코트라 해외비즈니스 포털,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http://tradedoctor.kotra.or.kr/sub/online_consult_view.jsp?vocno=VO490874&list_num=10&p=1, 검색일자: 2016.09.21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음
 -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 상업송장(Co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L)
 - 수출 물품 세관 관련 자료(Export Customs Sheet)
 - 수입 물품 세관 관련 자료 또는 원자재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Import Customs Sheet or VAT Invoice of Materials)

〈표 2-V-1〉 베트남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종류

FTA	발효일	FTA협정국	원산지증명서
ATIGA/AEC(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SEAN Economic Community)	1996.1.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Form D
아세안-중국 FTA	2006.1.1	아세안, 중국	Form E
아세안-한국 FTA	2007.6.29	아세안, 한국	Form AK
아세안-일본 CEP	2008.12.1	아세안, 일본	Form AJ
베트남-일본 EPA	2009.10.1	일본	Form VJ
아세안-인도 FTA	2010.1.1	아세안, 인도	Form AI
AANZ FTA	2010.1.1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Form AANZ
베트남-칠레 FTA	2014.1.1	칠레	Form VC
베트남-한국 FTA	2015.12.20	한국	Form KV
베트남-EAEU FTA	2016.10.5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Form EAV

자료: 코트라, 「베트남 신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검색일자 : 2016.09.22

가. 한·아세안(ASEAN) 원산지제도

-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의미를 갖는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에 정식 발효되었음
- 한-아세안 FTA협정은 ① 기본협정 ② 분쟁해결제도협정 ③ 상품무역협정 ④ 서비스무역협정 그리고 ⑤ 투자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베트남 물품이 아세안 회원국 또는 아세안과 FTA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에 수출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아세안 국가에 물품 수출 시 아세안 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D C/O)를,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아세안 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AK C/O)를 해당 국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세 특혜를 위한 수입 물품은 완전생산기준 또는 아세안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 비율 함량이 40% 이상인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어야 함⁶⁶⁾
- 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D, Form AK C/O)는 베트남의 산업통상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서 발급해줌⁶⁷⁾

1) 한·아세안(ASEAN) 원산지 결정 기준⁶⁸⁾

- 한·아세안 FTA 특혜를 위한 물품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비율(RVC) 40% 이상으로 하고 있음
 - 총 732개의 예외품목은 품목별 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RS)을 적용하는데 그 종류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완전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음⁶⁹⁾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 3>과 그 부록에 규정되어 있음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다루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농수산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공산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중 대부분이 세번변경기준(HS 4단위)을 이용하며,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적용이

66) 아세안과 개별 FTA 협정을 맺은 국가 중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는 40% 누적기준이지만 인도의 경우 35%임.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58

67) 상동

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인도네시아(개정)』, 2015.12, pp.87~91을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69)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2007.6.27, pp. 191~196

어려운 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 중 「완전생산기준(제3조)」이란 전적으로 체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임
 -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광물성 물품, 식물성 물품, 산동물, 바다에서 채취한 물품, 폐기물과 스크랩(부스러기)등이 있음
 - 단, 산동물의 경우 체약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것에 한함

-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 중 「실질적 변형기준(제4조)」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번변경기준(HS 4단위)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부가가치기준은 역내가치 포함 비율(RVC)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직접법(Build Up, BU) 또는 공제법(Build Down, BD)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함⁷⁰⁾

- 실질적 변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고자 함
 -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아세안 협정 체결국에서 옷을 만드는 경우, 여성용 블라우스(HS 6106)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다른 류에서 HS 6106으로 변경될 것 또는 ② 재단·봉제 등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직물은 면의 경우 52류에 해당하므로 중국산 면직물로 옷을 만드는 경우 52류에서 61류로 류 변경기준은 충족이 되며, 아세안 체결국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이뤄진다면 원산지를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하여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류 변경기준(HS 2단위)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서 아세안 체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재단·봉제 공정)가 40% 이상이면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제8조)」은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순·경미한 가공만을 거쳐 HS 4단위가 변

70) 직접법(BU)의 부가가치기준 비율은 원산지 재료가격(VOM)/물품가격(FOB)×100이며, 간접법(BD)의 부가가치기준 비율은 물품가격(FOB) - 비원산지 재료가격(VNM)/ 물품가격(FOB) ×100임

경되거나 역내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이 되더라도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임

- 원산지 불인정 공정기준이란 원산지 공정이 단독으로 수행되거나 다른 공정과의 결합만으로 완성되는 경우 등 ‘단순한’ 형태의 공정인 경우, 당해 물품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준임
 - 여기서 ‘단순한’의 의미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함⁷¹⁾
- 원산지 결정의 보충적 기준으로서 「직접운송원칙(제9조)」은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제3국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임
 - 다만,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제3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71) 다음의 경우 아세안 협정에서는 단순한 활동으로 간주함

-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또는 탈각
-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공정
-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다른 종류 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화학반응이 없는)
-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
- 동물의 도축(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

- 추가적으로 원산지 결정의 보충기준으로 재료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과 최종재의 소매용 포장재 및 부속품 등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음
 - 「재료누적기준(제7조)」이란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의 원산지는 최종재의 원산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최소허용수준(제10조)」이란 세번변경 기준을 제외한 3가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해당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이 해당 물품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 「소매용 포장재(제11조)」, 「부속품과 예비부품 및 공구(제12조)」, 「중립재(제13조)」 및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제14조)」까지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반사항임

2)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개정

- 2014년 1월 1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규정(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OCP) 개정안이 발효되었음⁷²⁾
 -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규정(OCP)에는 원산지 발급, 검증, 그리고 여타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K)이 첨부되어 있음
- 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규정(OCP)의 주요내용은 ① 원산지 증명서 서식의 개선 ② 다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③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그리고 ④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이 있음⁷³⁾
 -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규정(OCP)개정 전에는 수출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했으나, 개정 후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본선인도 가격정보(FOB)⁷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⁷⁵⁾
 - 원산지 증명서에 첨부 서식을 도입하여 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 과거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마련됨

7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아세안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2013.7.1, p.1.

7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아세안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2013.7.1, p.2

74)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본선인도가격정보(FOB) 기재요함

7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1.1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2013, p.1.

- 기존 규정이 ‘수출 시 또는 바로 그 직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해석이 모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그리고 선적 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발급 시점을 명확화 하였음
 -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수출 시점을 수출을 신고한 시점(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도 포함해온 반면, 아세안 A국 세관은 수출 시점을 선적 시점으로 해석해 온 바, 이로 인해 선적 전에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됨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미국 4년, EU 1년 등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개정됨

나. 한·베트남 FTA 원산지제도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의 첫 번째 개별 국가로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
 - 한·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의 양국간 불균형한 상품양허 수준을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음⁷⁶⁾
 -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호주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베트남 시장 접근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⁷⁷⁾
- 한·베트남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의 기준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기준을, 부속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⁷⁸⁾
 - 원산지 일반기준으로는 ① 완전생산 기준과 ②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원산지 일반기준에는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함량 미달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최소 허용수준(미소기준)과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부속서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음

76) 이승필, 「한·베트남 FTA와 원산지규정의 이해」, 『관세와 무역』, 2015.6, p.15

77) 상호주의란 수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다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임

78) 이승필, 「한·베트남 FTA와 원산지규정의 이해」, 『관세와 무역』, 2015.6, pp.16~17

- 또한 개성공단 등의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특혜 관세 수혜기회를 마련하였음

-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은 한·아세안 FTA와 비교시 ① 특혜 관련 신청절차 간소화 ② 전자상거래 무역형태 반영 ③ 특혜 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④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면제 기준 상향 그리고 ⑤ 원산지증명서 의무 제출규정을 완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수출자와 제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⁷⁹⁾

〈표 2-V-2〉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

구분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본선인도가격조건(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사후 검증	검증방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검증요청 회신기간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사후검증소 요기간	6개월 이내 완료	10개월 이내 완료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p.21

7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타결”」, 2014, p.11.

1)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

-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원칙 중 「완전생산기준(제3.2조)」은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나, 「실질적 변형기준(제3.3조)」은 다소 상이함
 - 세번변경기준에서 가장 엄격한 2단위 변경기준(CC)이 도입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4단위 변경기준(CTH), 6단위 변경기준(CTSH)이 적용됨
 -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나, 한·아세안 FTA처럼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는 제한조건이 없음
 - 한·아세안 FTA와 같이 부가가치기준은 집적법(BU) 또는 공제법(BD)을 선택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한·아세안 FTA에는 없는 중간재 규정(Roll-up)을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을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함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로 구성된 중간재로서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되기 위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임
 - 가령 국내의 자동차 생산자가 국내산 엔진 블럭과 중국산 샤프트를 구입하여 엔진을 직접 제조한 경우, 동 엔진은 중간재로서의 지위를 가짐
 - 중간재 규정(Roll-up)이란 상기 언급된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계약 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재의 비원산지 재료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내용임
 - 중간재 규정(Roll-up)을 통해 계약 당사국은 특혜 대상물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간재 수입이 아닌 중간재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이외에 「직접은송원칙(제3.8조)」와 보충적 기준인 「누적기준(제3.5조)」, 「최소허용기준(제3.9조)」, 「소매용 포장재(제3.10조)」, 「부속품과 예비부품 및 공구(제3.11조)」, 그리고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제3.13조)」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 일반원칙과 동일함

-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제3.4조) 및 <부속서 3-가>」은 한·아세안 FTA와 비해 그 기준을 크게 개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2-V-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과정과 교역패턴을 고

려하여 보다 무역 촉진적인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였음
 -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의 품목 중 약 460여 개(약 9%)가 개선됨

〈표 2-V-3〉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의 주요 내용

업종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주요 내용 ¹⁾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선택)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 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철강	원재료 조달과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대부분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또는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예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광폭냉연강판등))
석유화학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을 채택 (예 : 휘발류 제품)

주: 1) 한·아세안 FTA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기준(RVC 40%)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2015, p.8

2)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증명서 제반 규정⁸⁰⁾

□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는 베트남 산업통상부(MOTI) 또는 산업통상부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나, 협정 발효 3년 후 자율증명방식의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임⁸¹⁾

80) 「한·베트남 FTA 협정 제 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vn/2/kor/CHAPTER_3.pdf, 검색일자 : 2016.10.19
 81) 이승필, 「한·베트남 FTA와 원산지규정의 이해」, 『관세와 무역』, 2015.6, p.19

- 계약당사국에서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 세관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용됨⁸²⁾
 - 특혜 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과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 당시 특혜 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 일 후 1년 이내에 특혜 관세 사후신고가 가능함⁸³⁾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함
 - 사후신고를 위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이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으로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함⁸⁴⁾
 - 원산지 증명서는 1장의 원본과 2장의 사본으로 구성됨
 - 원본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며 제2사본은 수출국의 발급당국이,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함
 -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범위는 하나의 탁송품에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하며, 수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인장이 찍혀서 인쇄되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한은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자체를 포함)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음

-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멸실된 경우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을 발급할 수 있음⁸⁵⁾
 - 진정등본의 발급 시 최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차 발급된 진정등본에 기재됨

82) 상동

8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베트남 FTA 원산지 절차 및 원산지 검증」, 검색일자: 2016.10.18

84) 이승필, 「한·베트남 FTA와 원산지규정의 이해」, 『관세와 무역』, 2015.6, 제47권 통권 499호, p.19

85) 상동

- 2차 발급된 진정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함
- 원산지 증명서의 정정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서명한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발급기관에 의하여 정정이 인정됨
 -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발급당국은 1차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함
- 계약 당사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 단,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원산지 증명서상 사소한 불일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되지 않음
 -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배제하지 않음
 -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상 사소한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수정본 또는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만약 30일 이내에 수정본이나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은 즉시 특혜 관세 대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수행해야 함
 - 다수의 품목이 같은 원산지 증명서로 신고된 경우, 1개 품목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품목에 특혜 관세대우와 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⁸⁶⁾

-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전심사제도를

86) 관세청,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2015.12, pp. 73~74

도입하였음

- 사전심사 대상은 ① 품목분류 ② 관세평가기준 ③ 원산지 결정기준 ④ 기타 합의 가능한 서면요청 등이 있음
- 사전심사를 이용하려는 자는 물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심사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를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사전심사서를 발급 시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전심사 발급당사국은 사전심사의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 그 심사가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에 근거하였을 경우
 -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할 경우
 - 이 협정과 일치하는 자국의 국내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
 - 그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2 비특혜 원산지제도

- 베트남의 비특혜 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특혜 목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관련 법령은 상법상 물품 원산지에 대한 조항의 시행령(No. 19/2006/ND-CP of 20 February 2006 detail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on goods origin)에 의함⁸⁷⁾

87) 베트남 관세총국, 「No. 19/2006/ND-CP」, <http://www.customs.gov.vn/Lists/EnglishDocuments/ViewDetails.aspx?ID=792&language=en-US>, 검색일자 : 2016.10.06

- 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이란 점에서 두 나라 간에 협정을 맺고 상대방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비특혜 원산지제도로 보았음

가. 원산지 기준

- 베트남의 비특혜 원산지제도의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성됨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그 물품은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로 봄⁸⁸⁾
 - 해당 국가나 지역의 나무나 나무에서 수확된 제품
 -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키우는 동물
 - 상기 조건에서 수속된 동물의 제품
 -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사냥, 딛 설치, 어업, 채집과정을 통하여 받은 제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물품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최종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보고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로 봄⁸⁹⁾
 - 세번변경기준(change of goods' code number)은 물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봄
 - 물품의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할 때, 부가가치기준(ad valorem)과 특정 공정기준(goods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은 추가 또는 교체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 공정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정한 경우, 그 리스트를 공표하여야 함

88) No.19-2006-ND-CP 제7조

89) No.19-2006-ND-CP 제8조

나. 원산지 증명서 종류⁹⁰⁾

-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커피 원산지 증명서가 있음
 - 일반 원산지 증명서(B Form C/O)는 베트남에 특혜 우대가 없는 원산지 규칙을 만족시키는 모든 나라에 수출되는 물품에 발급됨
 - 일반 원산지 증명서 중 터키 원산지 증명서(Turkey Form C/O), 남아프리카 원산지 증명서(DA59 Form C/O), 그리고 페루 원산지 증명서(Peru Form C/O)는 특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별도 서식하에 발급하고 있음
 - 커피 원산지 증명서(ICO Form C/O)는 국제커피기구 규정 및 현행 베트남 원산지 규칙에 따라 각국에 수출되는 모든 커피 상품에 발급됨
 - 커피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GSP A Form C/O), 일반 원산지 증명서(B Form C/O) 형태로도 발급 가능함

- 베트남의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에서 발급하고 있음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베트남에 관세우대를 제공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 증명서(EU로 수출하는 신발류 상품 제외)와 비특혜 목적의 각종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기관임

다.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⁹¹⁾

- 베트남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정한 개발도상국에 해당되어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선진국에 수출시 동 물품은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반특혜관세(GSP)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임
 -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됨

90) Nguyễn Hữu Nam, 「CÁC MẪU C/O VÀ NỘI CẤP」, VCCI, 2013.06

91) 상동

- 2016년 현재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수입국)은 총 37개국으로, 이 중 베트남에게 공여하는 국가는 다음의 35개국임⁹²⁾
 - EU 27개국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임
 - 미국과 호주는 베트남에게 일반특혜관세(GSP)를 공여하지 않음
-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으려면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GSP A Form C/O)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발급 받아야 함

3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 확인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⁹³⁾

- 세관은 세관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검사하고 통관서류와 물품의 실물검사 결과를 기초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정하여야 함
- 만약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 제공 요구 및 물품 제조공장의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세관은 수출 신고자에게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수출물품의 생산현장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및 검증하여야 함
- 물품의 원산지 검사 후 검증을 기다리는 동안, 수출물품은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92) Nguyễn Hữu Nam, 「CÁC MẪU C/O VÀ NỘI CẤP」, VCCI, 2013.06

93) 베트남 관세법 27조

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⁹⁴⁾

- 세관은 세관 신고인의 신고내용, 원산지 증명 입증서류, 통관서류, 그리고 물품 실물검사 결과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 입증서류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 제조자나 수출자, 그리고 국제협약에 따른 자율 증명 수입자가 발행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의미함
- 만약 세관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국에서 물품의 원산지 검사를 진행하고 검증하여야 함
 - 원산지 및 관련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검사 요청 및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발급기관에 송부할 수 있음⁹⁵⁾
 - 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검사 요청할 때에는 검사이유, 원산지 증명서과 화물의 원산지의 정확도에 대한 의심 정보를 통보해야 함
 - 검사 업무는 수입자가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0일 초과하지 않아야 함⁹⁶⁾
-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지만, 특혜세율은 적용될 수 없음⁹⁷⁾
 - 수입 신고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는 물품의 원산지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됨

94) 베트남 관세법 27조

9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베트남」, 2012.12, p.17

96) 상동

97) 베트남 관세법 27조

VI. 보세제도

1 개요

- 보세(保稅)제도란 일정한 장소를 한정하여 그곳을 관세구역 이외로 두고 세관의 관리하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보세화물)을 장치, 검사, 판매 등의 활동을 인정하면서 보세구역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의 징세를 유보하는 제도임
 - 보세구역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력을 높여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을 촉진하여 수출 및 산업진흥 효과가 있음⁹⁸⁾

- 베트남의 보세구역(Khu phi thuế quan; Non-Tariff Area)은 창고기능을 수행하는 보세창고와 화물컨테이너기지, 그리고 임가공생산지역으로 공업단지(Industrial Park/Zone, IP/IZ),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그리고 경제특구(Economic Zone, EZ)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 보세창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CFS·컨테이너화물기지가 있음
 -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베트남의 공업단지

9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6.

(IP/IZ)와 수출가공구(EPZ)제도가 있음

- 경제특구(Economic Zone, EZ)는 제조가공 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장의 보세제도에서 제외하였음⁹⁹⁾

2 보세창고제도

- 베트남의 보세창고는 자가 보세창고(Kho bảo thuế), 영업용 보세창고(Kho ngoài quan), 그리고 CFS·컨테이너화물기지(Địa điểm thu gom hàng lẻ)로 구분됨¹⁰⁰⁾
 - 자가 보세창고란 자가 보세창고주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통관되었으나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원료,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고임
 - 영업용 보세창고란 수출 대기상태로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 외국으로의 수출 또는 베트남으로의 수입을 대기하면서 반입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장치장 구역임
 - CFS·컨테이너화물기지란 일반 운송수단에 적재·양하되는 화주의 화물을 다수의 컨테이너에 수집, 분할, 분리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창고 또는 장치장 구역임
-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통계, 운수 장비, 그리고 물품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세관과 전산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¹⁰¹⁾
- 관세총국은 보세창고의 설치, 활동기간의 연장, 활동의 일시정지 및 종료를 결정할 권한을 지님¹⁰²⁾

99) 경제특구(EZ)는 베트남 정부의 장려하에 운영되는 우수한 투자정책을 가진 특수 인센티브 지역임. 산업 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로서 비관세 지역뿐만 아니라 관세지역,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본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코트라, 「베트남 공단현황 안내 및 경제특구(EZ) 투자 이점」,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27439>, 2014.2.20., 검색일자: 2016.10.10

100) 베트남 관세법 제4조

101) 베트남 관세법 제63조

가. 자가 보세창고

- 자가 보세창고란 자가 보세창고주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통관되었으나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원료와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고임
- 자가 보세창고는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설립될 수 없고, 수출물품 제조업체의 공장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¹⁰³⁾
- 자가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와 물자는 입고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음¹⁰⁴⁾
 - 단, 물품 제조과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 지국장에 의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 기간 연장의 기간은 제조기간에 부합하여야 함
- 자가 보세창고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물품장치의 권리와 물품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¹⁰⁵⁾
 - 자가 보세창고주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음
 -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와 물자를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음
 - 자가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분류, 재포장 및 이동시킬 수 있음
 - 자가 보세창고주는 다음의 의무를 갖고 있음
 - 자가 보세창고내 원료, 물자를 제조에 투입하는 예상계획을 관세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1회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국에 문서로 자가 보세 창고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함
 - 늦어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 동안의 자가 보세창고로 반입한 수입 세관신고서, 원료·물자 수량 종합명세서, 수출 세관신고서 및 수출 수량 종합명세서를 작성하고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관세국에 송부하여야 함

102) 베트남 관세법 제62조

103) 베트남 관세법 제62조

104) 베트남 관세법 제61조

105) 베트남 관세법 제63조

나. 영업용 보세창고

- 영업용 보세창고란 수출 대기상태로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 외국으로의 수출 또는 베트남으로의 수입을 대기하면서 반입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장치장 구역임
- 영업용 보세창고는 각 지역의 다음 각 구역에 설치될 수 있음¹⁰⁶⁾
 - 항만 항구, 민영 국제공항, 내륙에 설치되는 수출입항, 육로 국경관문 세관,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 공업구, 첨단공업구(Hi-Tech Zone), 비(非)관세구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역
-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물품은 입고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장치될 수 있음¹⁰⁷⁾
 -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세관국 국장은 1 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영업용 보세창고의 운영사업자와 창고이용 화주는 다음과 같이 물품의 이동 권리와 물품관리 의무가 있음¹⁰⁸⁾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와 물품 화주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음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될 물품의 수탁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화주와의 합의하에 영업용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음¹⁰⁹⁾
 - 화주는 세관공무원의 감시 아래 재포장, 물품의 품목분류, 물품샘플 채취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화주는 창고 내에서 물품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음

106) 베트남 관세법 제62조

107) 베트남 관세법 제61조

108) 베트남 관세법 제63조

109) 물품을 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타 영업용 보세창고로 이동 시, 운영사업자는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세관국 국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야 함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고 있음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관세기관의 물품검사 요구를 이행할 책임을 가진
 -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국에 영업용 보세창고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1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다. CFS·컨테이너화물기지

- CFS·컨테이너화물기지란 일반 운송수단에 적재·양하되는 화주의 화물을 다수의 컨테이너에 수집, 분할, 분리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창고 또는 장치장 구역임
- CFS·컨테이너화물기지에 반입된 물품은 ① 아직 통관수속을 하지 않은 수입물품 ② 통관 수속을 완료한 수출물품, 그리고 ③ 세관신고서를 등록하였으나 물품 실물 검사가 CFS·컨테이너 화물기지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정된 수출물품을 포함함¹¹⁰⁾
 - CFS·컨테이너화물기지가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의 범위를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CFS·컨테이너화물기지는 각 지역의 다음 각 구역에 설치될 수 있음¹¹¹⁾
 - 항만 항구, 민영 국제공항, 내륙에 설치되는 수출입항, 육로 국경관문 세관,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 공업구, 첨단공업구(Hi-Tech Zone), 비(非)관세구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역
- CFS·컨테이너화물기지에서는 물품이 CFS·컨테이너화물기지에 반입된 날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장치될 수 있음¹¹²⁾
 -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CFS·컨테이너화물 기지를 관리하고 있는 세관지국 지국장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함

110) 베트남 관세법 제 61조

111) 베트남 관세법 제 62조

112) 베트남 관세법 제 62조

- 화주, CFS·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 및 화물수집서비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음¹¹³⁾
 - 화주는 물품의 소유권 양도, 물품의 포장, 재포장, 포장 강화, 수리, 보관을 할 수 있음
 - CFS·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CFS·컨테이너화물기지를 관리하는 세관국에 CFS·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1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화물수집서비스 사업자는 하나의 컨테이너로 모아서 운송하는 다수의 화주의 화물들을 분할, 합병 할 수 있고 보관중인 물품을 분류 또는 재분류 할 수 있음

3 보세임가공제도

- 2013년 3월 기준, 베트남은 총 289개의 공업단지(IZ)와 수출가공구(EPZ)를 가지고 있음¹¹⁴⁾
 - 관련 법령은 공업구에 대한 조건, 적용순서 및 절차에 대한 시행령(NO. 29/2008/ND-CP)임
- 2010년 기준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생산품 중 공업단지와 수출가공구의 생산비율은 1996년 8%에서 2010년 32%로 빠르게 증가하였음¹¹⁵⁾
 - 대부분의 공업단지와 수출가공구는 베트남의 핵심 경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베트남 남부에 124개, 북부에 52개, 그리고 중앙에 23개가 위치하고 있음¹¹⁶⁾
 - 베트남은 세계적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고 있어 해외투자자의 공업구와 수출가공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¹¹⁷⁾

113) 베트남 관세법 제 63조

114)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p.77~78

115) 상동

116) 상동

117)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만·베트남·싱가포르의 산업집적지』, 2011.12, p.72

- 그러나 2013년 기준 비록 베트남 정부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및 경제특구의 수를 늘리고 있으나 사용빈도 수가 낮고, 지역별 공업단지의 운영실적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짐¹¹⁸⁾
 - 운영되는 공업단지의 비율은 2007년 74%에서 2010년 65%로 떨어졌으며 약 50개의 공업단지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약 50%의 공업단지에서 약 84%의 수출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공업단지의 운영 실적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하다고 함

가. 공업단지(Industrial Park/Zone)

- 공업단지(Industrial Park/Zone, IP/IZ)는 공업제품의 생산 및 제조에 수반되는 모든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 특수 공단으로 정부와 국회 시행령하에 설립된 공단임
 - 공업단지(IP/IZ)는 수출과 내수판매의 병행이 가능하여 수출가공구(EPZ)와 차이가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총 288개에 이르는 공업단지가 각지에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호치민 시와 동나이 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조성되어 있음¹¹⁹⁾
 - 이 중 운영하는 공업단지는 190개이고, 나머지 98개는 부지 개발중임
-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업단지 외 구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이 따르므로, 사업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 사업을 위해 공업단지 내 공장 토지를 분양하거나 소규모 공장을 임대하여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음¹²⁰⁾

118) WTO, *Trade Policy Review : Viet Nam*, 2013.08.13., pp.77~78

119) 코트라,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 특징 및 공단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2014.11.10.,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7322>.
검색일자: 2016.10.11

120)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베트남 공단 진출에 알아야 할 사항」, http://www.kinp.or.kr/bbs/board.php?bo_table=bbs43&wr_id=271, 검색일자: 2016.11.01

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란 수출물품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고 확정된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공업구역을 뜻함
 - 수출품 제조의 특수화 및 특화된 수출활동을 위해 설립된 특수산업지역으로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 및 운영되는 지역이며 정부에서 관리함

-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 EPE)은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공업단지(Industrial Park), 경제특구(Economic Zone, EZ) 내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를 수출하는 기업임
 - 수출가공기업(EPE)이 베트남 영토 내 보세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 간의 물품 거래는 수출입으로 간주됨

- 수출가공기업(EPE)은 베트남 내수시장에 일정 제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내수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제한받음¹²¹⁾
 - 베트남 내수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다른 수출가공기업(EPE)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
 - 추가 생산 공정 없이 내수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다른 수출가공기업(EPE)에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 권한 없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출가공기업(EPE)을 운영 시 ①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 ② 현물 검사의 축소, 그리고 ③ 수입 원재료의 사용기한 제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음¹²²⁾
 - 아래의 경우 수입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 수출가공기업에서 사용 또는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및 기계장치

121) 코트라, 전문가 기고, 「베트남 진출 EPE(수출가공기업)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 검색일자 : 2016.10.12

122) 코트라, 『2013년도 주요 10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3, p.164

- 제품 가공을 목적으로 베트남의 국내기업에서 구입한 공급물자, 원재료 및 재공품
 -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¹²³⁾
 - 수출가공기업(EPE)은 일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
 - 또한 수출가공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의한 서비스, 건설, 설비공사를 수령할 때의 부가가치세는 수출가공기업(EPE)에 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 수출가공기업(EPE)에서 수출입 시 통관 수속 종료 후 즉시 수리되므로 일반적으로 현물검사가 면제됨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사용기한 및 제품 수출기간의 제한이 없음
- 반면, 수출가공기업(EPE)은 베트남 내수시장의 유통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공장을 재임차할 수 없는 등 일부 단점도 가지고 있음¹²⁴⁾
- 베트남 산업무역부(MOTI) 지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은 내수시장에서 물품을 유통할 수 없음
 - 만약 수입 물품을 내수시장에 유통하려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구매자가 수입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주택임대, 통근운송, 차량구매, 그리고 베트남 내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용역 등이 있음
 - 수출가공기업(EPE)은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공장을 재임차할 수 없음

123) 코트라, 전문가 기고, 「베트남 진출 EPE(수출가공기업)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 검색일자: 2016.10.12

124) 상동

VII. 수출입규제

- 베트남은 건강, 안전과 사회 보안에 일반적으로 위해가 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 규제는 「관세법」에 열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불허하는 수입금지가 가장 엄격함
 - 통관단계에서 각종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가하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수입규제는 자동허가(automatic licensing)와 비자동허가(non-automatic licensing)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Line management' 품목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서 수입규제를 주관하고 있음
 - 2008년 베트남 관세당국은 화장품, 농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주의 수입 물품에 대한 자동수입허가(automatic licensing)제도를 시행하고 2010년에는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함
- 수입물품의 기술 및 표준 관리는 과학기술부 산하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STAMEQ)에서 주관함

- 농산물, 식품 등의 위생 및 식물검역은 농림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여러 법령을 공포하여 관리하고 있음

1 수출입 금지

- 베트남은 국제 무역의 이행에 관한 여러 협약과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멸종위기의 동식물, 환경 오염물질 등의 일반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주로 마약류, 총기, 폭발물, 화약류, 위조화폐,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물품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물품 등이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며 [부록 I]을 참조
 - 수출입 금지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은 수출입 금지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의심화물로 결정된 것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됨

2 수입제한

가. 자동수입허가

1) 목적

-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규제는 「Decree No. 12/2006/ND-CP of 23 January 2006」에 의거하여 'line management'를 시행하여 수입허가는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함
 - 다양한 범주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각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베트남은 수입규제조치로서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한 자동허가와 비자동허가 절차를 도입하였음

- 인간, 동식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기하고 지역산업과의 공동 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임
- 2008년 여러 범주의 소비재 품목과 농산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함
 - 초기에는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수출입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입신고 심사를 목적으로 하였음
- 산업통상부는 2010년 자동수입허가 적용 품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ircular No. 24/2010/TT-BCT of 28 May 2010 replaced Circular No. 17.」¹²⁵⁾를 시행하여 WTO를 비롯한 각국에서 비관세조치로 지목되었음¹²⁶⁾
 - 미국 무역부(USTR)가 발행한 『2011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는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자동수입허가 취득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동 조치를 WTO에 통지하여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없이도 자동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소 제도가 개선되었음
- 2011년에는 대상품목을 축소, 2012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수입허가를 면제함
 - 자동수입허가 관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다소 개선하였지만, 2012년에 철강제품을, 2014년에는 비료 등의 품목을 추가함

125) 부록: 자동수입허가 대상(HS코드별)

<http://www.ecolex.org/details/legislation/circular-no-242010tt-bct-on-the-application-of-regulations-on-automatic-import-licensing-to-a-number-of-good-items-lex-fao-c098412/>, <http://faolex.fao.org/docs/pdf/vie98412.pdf>

1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86

1) 적용 품목

- 2010년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으로 확대됨
 - 육류, 육류제품, 어류, 어류가공품, 초콜릿과 초콜릿 가공품, 특정 채소, 과일, 곡물 및 밀가루 제품, 주류, 식초와 음료, 플라스틱 제품, 직물 및 의류제품, 신발, 화장품, 가정용 전기제품, 차량 및 오토바이, 가구, 장난감 및 철강제품 등 식품, 직물, 의류 등이 있음(부록 II 참조)
 - 다만, 재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자동수입허가(AIL) 적용이 배제됨

2) 절차

-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을 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서 2부와 사업자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를 산업무역부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청함
 - 발급신청 비용은 무료임
- 산업무역부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동수입허가서(AIL)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발급된 자동수입허가서(AIL)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을 가짐
 - 발급된 자동수입허가서(AIL)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수정 또는 재발급이 가능함
- 신청인이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산업무역부에서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보완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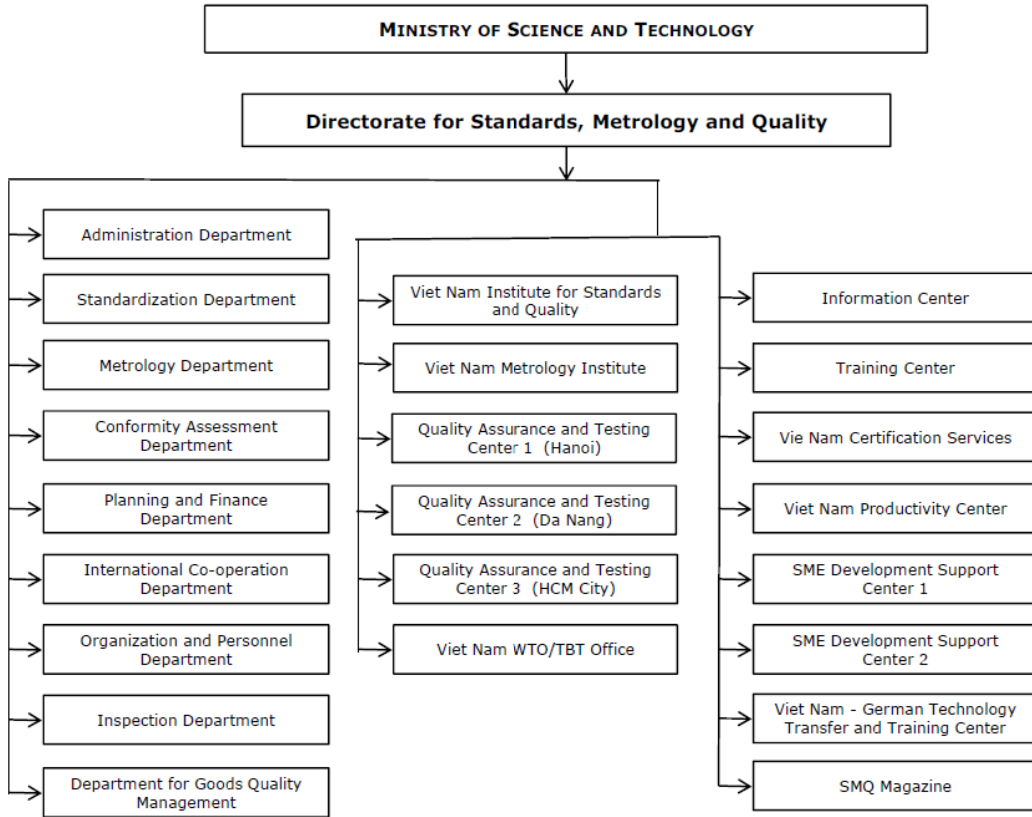
나. 기술표준 및 인증(Standards, Technical requirements and conformity assessment)

- 정부기관인 과학기술부(the Ministries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여러 유관기관에서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 등 기술표준에 관련된 기타 절차를 처리하고 있음
 - 베트남은 WTO TBT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무역기술장벽)협정 가입국으로서 동 협정 15.2조에 WTO와 관련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협의하고 있음
 - 산업통상(Industry and Trade), 농업개발(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교통(Transport), 보건(Health), 노동(Labour), 문화(Culture), 체육관광(Sports and Tourism) 등 분야별로 다양한 부처들이 포함됨

- 베트남의 기술관련 표준을 주관하는 주된 부처는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품질관리국(the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hodology and Quality, QCVNs)임
 - 국제 및 국내기구들과 관련 사안을 협의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으나, 기술표준과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 동 표준품질관리국은 표준과 기술규정을 개발하는 부서와 인증, 품질관리 공인, 품목 공인, 시험 및 연구소 검증, 물품의 품질관리 요건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들로 세분화되어 있음

- 베트남 표준관리연구소(the Viet 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 VSQI)를 거쳐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기술표준안이 마련됨
 - 베트남 표준관리 연구소는 이 표준안에 대해 국내 표준의 개발에 참여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당해 연구소 홈페이지에 해당 안을 공표할 때까지 기술위원회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

[그림 2-Ⅶ-1]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품질관리국 조직도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68

- 기술장벽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기술규정 및 표준법」(the Law on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이 있음
 - 관련 시행령, 내각 결정 등은 이들 법령의 이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시행규칙 「Circular No. 21/2007/TT-BKHCN Guiding the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as revised by Circular No. 29/2011/TT-BKHCN)」과 고시 「Decision No. 22/2007/QD-BKHCN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Technical Board for National Standards both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의거하여 체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법에 규정된 기술규정은 두 가지 유형 즉, 국내 기술규정(QCVNs)과 지역 기술 규정(QCDPs)으로 나뉨
 - 지역 기술규정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단체의 승인을 거쳐 의 무강제 대상인 경우가 일반적임

- 한편, 「품질관리법」(the Law on Products and Goods Quality of 2007)에 의 거하여 [그룹1] 과 [그룹2] 품목군으로 나누어짐
 - 위험가능성이 적은(incapable of causing unsafety) [그룹1] 품목군과, 위험가능 성이 존재(capable of causing unsafety)하기 때문에 물품의 운송, 저장, 보존 및 용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그룹2] 품목군으로 나누어 품질관리를 규제함
 - [그룹1] 의 물품들은 적용가능한 표준에 따라 생산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반면, [그 룽2] 에 해당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서 적절한 기술규정에 따라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규제도 함께 받아야 함

- 다양한 소관부처들이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위험을 야기할 가능 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VIII. AEO제도

1 개요

- 베트남의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의 정식 명칭은 '세관우대제도(Priority regime)'로 2011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함
 - 베트남의 AEO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관서류의 전체 검사와 건수 검사를 생략하고 간편한 세관신고 및 우선적인 세무절차를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베트남의 AEO 운영은 세관우선제도 시행세칙(the priority customs regime No. 72/2015/TT-BTC)에 의함
 - 2011년 베트남 재무부와 관세총국은 시행세칙(Circular) No. 63/2011/TT-BTC (Priority Customs System)를 제정하여 AEO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음
 - 이후 시행세칙(Circular) No. 105/2011/TT-BTC로 개정되었으며, 시행세칙(Circular) No. 65 및 105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8일부터 「신속하고 간단한 세관 절차 시범사업(prioritized enterprises)」이 시행됨
 - 2013년 7월 27일 시행세칙(Circular) No. 86/2013/TT-BTC 「우선세관제도(the priority customs regime)」로 제도를 공식화하였고 2015년 5월 12일 No.72/

2015/TT-BTC 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임

- 베트남은 AEO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각종 관련된 법규를 <표 2-VIII-1>와 같이 마련해두고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이 AEO로 공인한 기업을 ‘우대기업(DNUT)’으로 칭하고 있음

<표 2-VIII-1> 베트남의 AEO 관련 법령 요약

구분	법 규
1	세관법('14.6.25 Law No.54/2014/QH13) - (관련 조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주요 내용) 우대제도 적용 조건, 우대기업제도, 우대제도 관련 관세기관과 기업의 책임 등
2	수출입세법('16.4.6 Law No.107/2016/QH13) - (관련 조항) 제9조 - (주요 내용) 관세납부 관련 우대기업에 부여되는 우대혜택
3	‘세관수속, 세관검사·감독·감사 관련 관세법 시행조치 및 세부규정’ 정부 발행 시행령 ('15.1.21, Decree No.08/2015/ND-CP) - (관련 조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주요 내용) 우대기업으로 공인받기 위한 조건, 우대기업 공인 신청 및 절차 및 우대제도 기한연장, 우대제도 적용 정지, 우대기업 관리와 관련한 관세기관과 기업 당사의 책임 등
4	‘기업 수출입 제품에 대한 세관수속, 세관검사·감독 관련 우대제도 적용 규정’ 재무부 시행세칙 ('15.5.12 Circular No.72/2015/TT-BTC)
5	‘우대기업 공인조건 심사·우대제도 적용·우대기업 관리 규정 발표’ 관세청 결정문 ('15.9.14 Decision No.2659/QD-TCHQ)

자료: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604>, 검색일자: 2016.09.18

- 2016년 8월 기준, 베트남의 AEO 공인기업 수는 총 54개이며 2013년 이후 약 5배 정도 증가하였음¹²⁷⁾

127)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604>, 검색일자: 2016.09.18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변동 없이 8개, 2013년 11개, 2014년 21개를 거쳐 2015년에 부러 2배 이상이 증가한 51개, 그리고 2016년 8월 기준 54개임
 - AEO기업 대부분은 전자,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65%가 외국인투자기업임
- 우리나라 기업 수는 전체 AEO 인증기업의 약 16%에 상당하는 10개 기업임¹²⁸⁾

2 AEO제도

- 베트남 AEO제도는 크게 ① 공인기준 ② 공인절차 ③ 공인 혜택, 그리고 ④ 사후 심사로 구분할 수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은 AEO 공인요건 심사, 공인, 공인기한 연장, AEO 자격정지(잠정 정지 포함)에 대한 업무를 관할함
 - 일선 세관에서는 AEO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 평가 및 감독, 기업 대상 조세 및 세 관 관련 법규·정책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가. AEO 공인기준 및 대상

-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은 베트남 관세법(No.54/2014/QH13)과 재무부 시행세 칩(No.72/2015/TT-BTC)에 규정되어 있음
 - 관세법 제42조에서는 AEO의 적용 조건, AEO 기본 적용내용, AEO 관련 관세기관 과 기업의 책임 등 사후심사 내용을 규정함
 - 재무부의 AEO 시행세칙은 전반적인 AEO 공인기준, 공인 혜택, AEO 사후심사 세 부절차를 규정함
-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의 적용요건은 ① 법규준수도 ② 수출입 금액의 규모 ③ 전자식 통관과 세금납부 시스템 보유 여부 ④ 수출입 대금결제방법 ⑤ 내부통제

128) AEO 공인을 획득한 한국기업에는 삼성전자베트남(SEV), 삼성전자베트남 타이응우옌, 삼성전기, 삼성 HCMC CE Complex, 삼성 SDI 베트남, 삼성 디스플레이, 한솔전자 베트남, 엘지전자, 태광비나, 창신 베트남 등이 있음. 자료: 코트라, 「베트남 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2016.09.22., 검색일자: 2016.09.19

- 시스템 보유 여부, 그리고 ⑥ 회계감사 성실히행도로 구분됨
 ○ AEO 공인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표 2-VIII-2>로 요약함

<표 2-VIII-2> 베트남의 AEO 공인기준

구분	조 건
법규준수도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공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세관 및 조세 관련 법규 준수도를 평가함 ○ 공인신청기업은 다음의 행위로 위법 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탈세, 세금사기, 밀수 및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적 화물운송 - 세관 관련 행정 위반행위로서, 처벌 수준이 관세지국 국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자의 관할권을 벗어난 경우 ○ 통관 에이전시의 경우,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세관 및 조세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된 세관신고서류의 비율이 0.5% 이하일 것 ○ 규정에 따른 세금체납이 없을 것
기업 수출입규모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공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평균 거래액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 위탁 수출입 거래액은 동 거래액 산출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출입 금액이 최소 1억달러인 기업 - 베트남 현지 생산 제품의 연간 수출액이 최소 4천만달러인 기업 - 베트남 현지 생산 농·수산물의 연간 수출액이 최소 3천만달러인 기업 - 통관 에이전시의 경우, 자사 명의의 세관신고서류 수가 연간 5만개 이상인 기업 ○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수출입 금액 규모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전자통관과 전자 세금납부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ustoms(전자통관), E-Tax(전자세금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 ○ 세관기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 관리용 정보통신기술(IT)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수출입 결제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은행을 통한 수출입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것 ○ AEO 공인 신청기업은 자사 거래은행 리스트 및 예금계좌 번호를 세관기관에 통보할 것

〈표 2-VIII-2〉의 계속

구분	조 건
내부통제시스템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동 전반의 실질적 운영상황을 관리,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이행·유지할 것 - 수출입 제품의 공급체인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치·수단 및 규정을 보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과 항만 간 제품 운송 과정 모니터링 • 운송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의 안전성 검사 • 담장, 출입구, 창고, 생산구역, 행정구역 등 중요구역에서의 감시·감독 • 직원들의 직무에 부합하는 근무지에서의 근무 및 인사이동 •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통제 • 직원들의 안전보장
회계감사 이행성실도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재무부 규정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 ○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는 독립적 회계감사 법규에 규정된 회계감사 서비스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 기업에 의해 감사될 것 ○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재무보고 관련 감사 의견은 베트남 감사 기준에 근거해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일 것

자료: 베트남 재무부, http://www.moit.gov.vn/Images/FileVanBan/_72-2015-TT-BTCeng.pdf,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2016.09.02, 검색일자: 2016.09.18. 참조하여 저자 작성

- AEO 공인 대상 기업은 ① 수출입업체 ② 첨단기술업체 및 대규모 투자업체 ③ 베트남 제조물품 수출자 ④ 통관절차대리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운송업체와 물류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상이함

- AEO 공인 대상 기업은 공인 신청일 기준 최근 24개월 동안의 법규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항 발생시 공인 대상에서 제외됨¹²⁹⁾
 - 수출입 금지 물품의 수출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세금 사기 및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
 - 관세신고 오류로 인한 행정적 벌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세관검사에 불응하여 행정적 벌금(과태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129) 손영환, 「베트남 AEO 현황」, 주호치민 총영사관, 2014

나. AEO 공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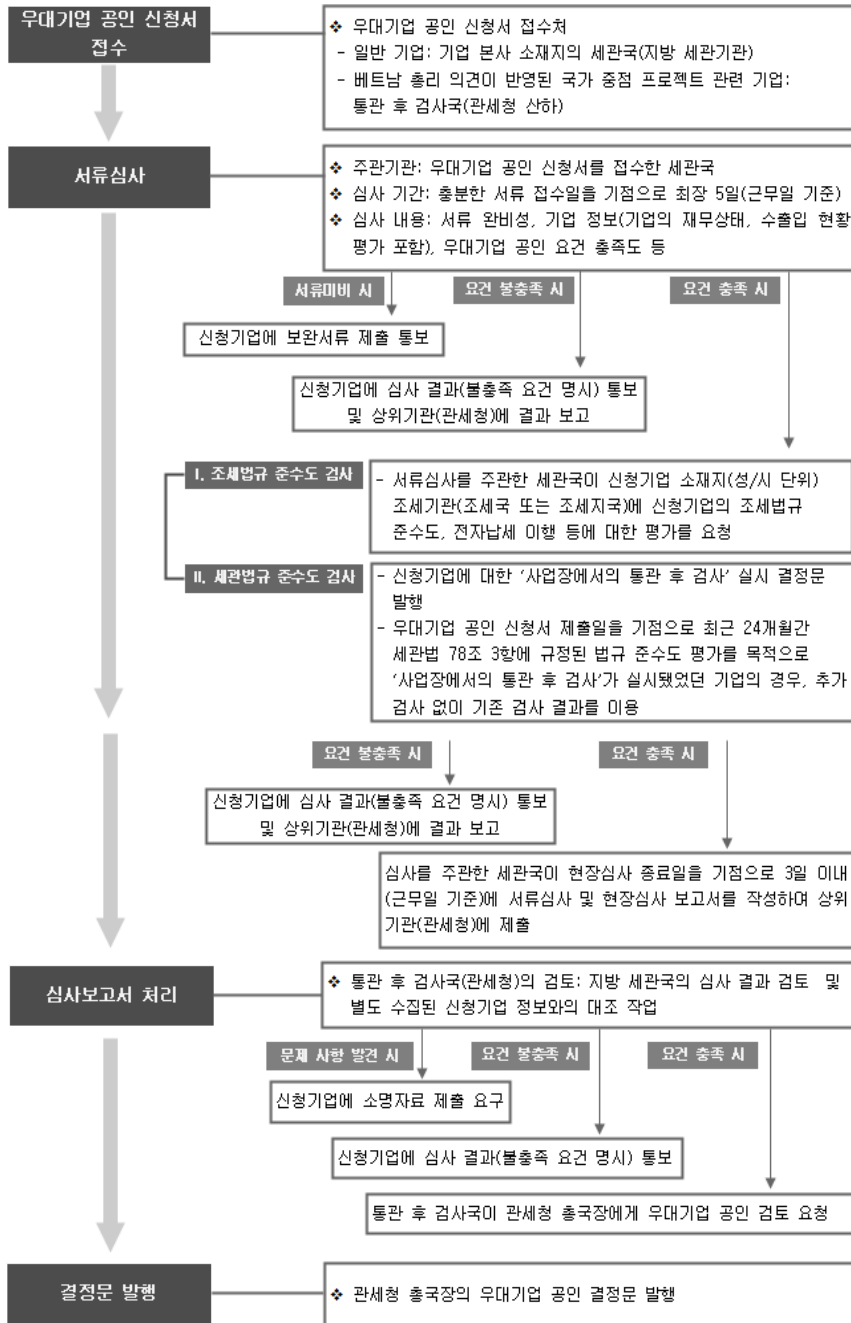
- AEO 공인절차는 크게 ① 공인 신청서 접수, ② 관세총국 서류심사, ③ 심사보고서 처리, 그리고 ④ AEO MOU 체결 및 결정문 발행으로 구분됨¹³⁰⁾
 - 공인 신청서 제출 시 최근 2년간의 수출입거래내역, 법규준수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자체진단 보고서를 사후통관검증부서(Post Clearance Audit Department, PCA)에 제출
 - 첨단기술업체는 과학기술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규모 투자업체는 투자 허가를 득하기 전에 국무총리(수상)에 의해 투자계획을 승인받아야 함¹³¹⁾
 - 세관총국은 지역 세관 또는 세무서에 신청서 자문을 의뢰
 - AEO 공인심사 방법은 서류 심사 또는 현장 방문이며 총 공인 심사기간은 45근무일이나 추가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서류 심사 후 AEO 공인요건 충족 시 세관 우선제도(priority customs regime) 관련 관세총국과 MOU 체결 및 공식 결정문을 발급

- [그림 2-VIII-1]은 AEO 공인절차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보여줌
 - 우대기업 대우를 받고 싶은 기업은 AEO 공인 신청을 위해 일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함
 - 세관은 AEO 공인 심사기준에 따라 AEO 공인 신청서를 근무일 기준 최장 5일 동안 심사함
 - 세관은 심사 완료 시 심사 결과와 별도 수집된 신청기업 정보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AEO 공인 신청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함
 - 추가 서류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기업은 관세총국장의 권한으로 AEO 공인 결정문을 발행하고 이를 신청기업에 전달함

130) 상동

131) 베트남 관세총국,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그림 2-Ⅷ-1] 베트남 AEO 공인 절차



자료: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2016.09.02

다. AEO 공인 혜택

- AEO 공인업체는 통관이행 과정 또는 통관 후 실시되는 각종 입증서류 검사 면제 및 물품 실물검사가 면제됨¹³²⁾
 - 법률위반의 의혹이 있거나 법률준수 평가를 위한 랜덤검사는 면제되지 않음
 - 단, AEO 지정기업 가운데 수출가공기업(EPE)은 랜덤으로 실시되는 제품 실물검사까지도 면제됨¹³³⁾

- 통관 혜택에 있어서 AEO 공인업체는 우선통관을 위한 각종 부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음¹³⁴⁾
 - 세관신고 법규 준수도 평가를 목적으로 스캐너를 이용한 실물검사를 랜덤 실시할 경우, 신속통관을 위해 AEO 공인업체 물품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통관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AEO 공인업체는 문제 발생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세관지국 지국장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AEO 공인업체는 화물의 선적과 하역 등 순서와 관련하여 세관지국, 항만, 창고 운영기관의 협조하에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받게 됨

- AEO 공인업체는 세관신고 작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세관신고서 또는 입증 가능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함¹³⁵⁾
 - 이 경우 세관 신고인은 해당 신고서를 전산 시스템상 등록한 날 또는 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서류에 속하는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AEO 공인업체 중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수입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환급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받음¹³⁶⁾

132) 베트남 관세법 제43조

133)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2016.09.02

134) 상동

135) 세관신고 작성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는 천재지변 등 사고로 인해 전산시스템 신고가 불가능함을 관세 총국이 공지한 경우 등이 있음. 자료: 상동

136) 베트남 관세총국,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_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 세관총국은 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서와 기업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함
 - 세금환급의 결정은 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이루어짐¹³⁷⁾
 - AEO 인증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전에 가공, 수출 생산을 위해 수출입된 물품의 결산 보고서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함
 - 세금환급 및 재화 수출입 내역은 매 3년 세관총국에 의해 정기적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는 해당 기업의 AEO 공인 유효기간 연장 결정에 반영됨¹³⁸⁾
- 수입 물품 통관 시 타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전문적인 검사의 경우, AEO 공인업체는 전문 검사 인증서 제출이 면제되고 동 규정에 대한 충족 상태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함¹³⁹⁾
-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안전 관련 전문적 검사 대상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입하는 경우, AEO 인증기업은 타법령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통관에 필요한 전문 검사 규정 충족 상태를 신고하는 것으로 통관이 가능함
 - 단, 기업은 사후 세관기관의 검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검사 인증서를 충분히 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또한 AEO 공인업체는 타법령에 의한 전문 검사 이행 시 검사 결과 입수 전 수입 물품을 자사 창고로 운반 및 보관이 가능함
- 추가적으로 2016년 개정된 수출입세법에 따라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¹⁴⁰⁾
- 개정된 「수출입세법」의 납부기한 규정은 다소 강화되었으나, AEO 업체 또는 세관 인정 우선기업(priority enterprise)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개정된 「수출입세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는 통관이나 상품 출고 전 세금을 즉납하여야 하나, AEO 업체와 같은 세관 인정기업은 수입물품 통관 또는 상품을 출고한 날의 다음달 10일 전까지 수출입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137)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2016.09.02

138) 상동

139) 상동

140) 코트라, 「베트남 신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검색일자: 2016.09.22

- AEO 관련 규정은 구 「수출입세법」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에 새로 명시되었음

〈표 2-Ⅷ-3〉 베트남 AEO 공인 혜택 요약

혜택 구분	혜택 내용	비고
통관 서류 및 실물 검사 면제	○ AEO 공인업체는 통관이행 과정 또는 통관 후 실시되는 각종 입증서류 검사 면제 및 물품 실물검사가 면제됨	법률위반의 의혹 또는 법률 준수 평가를 위한 랜덤검사의 경우 제외
우선통관 혜택	○ 랜덤검사 진행 시 AEO 공인업체 물품을 우선적으로 검사 ○ 통관중 문제 발생 시 사건 발생시간으로부터 8시간 내 세관지국 서면답변 수신 ○ 화물 적재 및 하역과 관련하여 세관, 항만, 창고 운영기관의 협조 제공받음	
미완성 세관 신고서 통관 가능	○ AEO 공인업체는 세관신고 작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세관신고서 또는 입증 가능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	미완성 세관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완전한 신고서 제출
선환급 후검사	○ 수출입세금 환급신청 후 1일내 환급 ○ 회계결산 종료 90일 전 수출입물품 결산보고서 제출/관세총국 검사	수출물품 또는 베트남 제조 물품에 한함
타법령 검사 인증서 면제	○ 통관시 구비하여야 할 타법령 인증서의 서류 제출 면제	사후검사 대비하여 인증서 보관 필수
수출입세 납부기한 연장	○ 일반적으로 통관 전 수출입세를 즉납하여야 하나 AEO 업체는 상품 출고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자료: 저자 작성

라. AEO 사후심사

- 베트남 AEO 공인업체의 사후심사 방법은 ① 연간 내부평가보고서 검토 ② 기업 상담전문관 제도(Account manager) ③ 공인 갱신 심사로 구분됨¹⁴¹⁾

- 내부평가보고서는 AEO 공인업체가 주체가 되어 관세총국에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AEO 공인업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관에 회계감사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제공하고 세관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검사 및 감시를 집행함¹⁴²⁾
 - 내부평가보고서는 AEO 공인업체가 공인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수출입물 품의 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는 내용을 담아야 함¹⁴³⁾

- 기업상담전문관 제도(Account manager)는 AEO 등급 유지와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해 각각의 AEO 공인기업에 지정 세관인력을 부여하는 제도임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의 법률 준수를 검사, 감시 및 평가하고 국제 및 관세에 관한 정책, 규정에 관하여 업체에 안내할 책임이 있음¹⁴⁴⁾

- 공인 갱신 심사는 관세총국이 주체가 되어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기준 충족 시 공인을 갱신, 불충족시 정지 또는 해지함¹⁴⁵⁾
 - 공인 유효기간은 AEO 공인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년임
 - 공인 갱신 심사는 3년 중 최소 1회로 서류 심사 또는 현장 실사로 진행됨
 - 공인 심사 대상은 공인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안에 해당되는 기업 중, 관세총국

141) 베트남 관세총국(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142) 베트남 관세법 제45조

143) 베트남 관세총국(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144) 베트남 관세법 제44조

145) 베트남 관세총국(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산하 통관후 검사국의 기업 재평가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이 자동 선별됨¹⁴⁶⁾

- 통관후 검사국은 해당 기업 소재지의 조세국과 세관국에 조세 및 세관 관련 법규 준수도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기업 평가를 요청함
- 통관후 검사국의 평가 결과, 해당 기업이 AEO 공인 요건 충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함

- AEO 공인 사후 심사 결과 일부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관세총국은 AEO 공인의 정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음¹⁴⁷⁾
 - 공인 정지는 AEO 공인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지난 6개월간 변동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됨
 - 공인 해지는 AEO 공인업체가 공인기준을 위반시 해당됨

3 상호인정약정(MRA)

-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위해 AEO의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 혜택을 얻고자 노력중임¹⁴⁸⁾
 -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 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AEO제도에 차이가 있음

146)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검색일자: 2016.09.19

147) 베트남 관세총국(GDVC), 「Vietnam AEO program」, http://www.wcoomd.org/en/events/event-history/2016/icao-wco-joint-conference/~/_media/97E050248870423FAA1B3F94F80E16DE.ashx, 검색일자: 2016.10.10

148) 관세청, 「상호인정협정(MRA)」, http://post.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0&layoutMenuNo=21881, 검색일자: 2016.10.19

- 그러나 베트남은 2013년 AEO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MRA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임¹⁴⁹⁾
 - 우리나라는 2009년 AEO제도 시행 이후 2016년 기준 세계 최대로 13개의 MRA 체결국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첫 번째 MRA 체결국이 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여러 차례 체결 논의를 거침¹⁵⁰⁾
 - 2014년 9월,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총국장회의에서 AEO MR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016년 4월, 베트남 관세총국 직원들의 한국 방문에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한국 관세청 직원들이 베트남 관세총국을 방문해 MRA 추진 절차 1단계인 한-베트남 간 AEO 공인기준 비교 작업을 실시하였음
 - 2016년 말, 한국 관세청은 양국 간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149) 코트라,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1)」, 검색일자: 2016.09.19

150) 상동

IX. 납세자 불복제도

1 개요

- 납세자 불복제도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처분을 받은 시점에 따라 사전심사제도와 사후불복제도로 구분됨
 - 사전심사제도는 행정결정, 행정처분 또는 관련기관의 부과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사후불복제도는 행정결정, 행정처분 또는 관련기관의 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세관 신고인(납세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2013년 베트남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처음 소개되었음
 - 사전심사제도의 적용 대상은 물품의 과세가격, HS code, 그리고 원산지의 결정으로서 이용 가능 절차는 관세법 제28조에 명문화되어 있음
 - 대상, 절차, 검토기한 등 세부적인 규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금 및 세무관리 시행규칙(NO. 38/2015/TT-BTC)」에 의함
 - 기존에는 서면 사전심사가 없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수출입업체들의 불편함이 많았다고 함

- 베트남의 관세제도와 통관환경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후불복제도는 ① 관세법 ② 수출입세법 ③ 세무행정법 ④ 행정불복법, 그리고 ⑤ 행정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음

- 베트남의 행정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이 재량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상 사후불복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함
 -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양한 법령으로 사후 불복제도를 규정하였으나, 통관에 관한 세관의 재량권이 크고 실제 베트남의 통관현실 문제로 인해 세관신고인(납세자)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함¹⁵¹⁾
 - 또한 2013년 법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행정절차, 행정규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부패방지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¹⁵²⁾

2 납세자 불복제도

가. 사전심사제도¹⁵³⁾

- 베트남은 2013년 7월 1일부로 관세평가, 관세율표 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실시됨
 - 관련 법령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No. 8356/BTC/TCHQ(OL8356))」이며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소개됨
 - 이번 사전심사제도로 수출입업체는 통관단계 이전에 세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불확실한 과세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세당국과 업체 간 통관단계에서의 마찰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었음

151)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 개인질의 및 답변에서 발췌하여 작성

152) 법제연구원,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설계』, 2013.11, p.26

153) 트레이드 네비, 「관세평가 및 관세율표 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 <http://www.tradenavi.or.kr/>, 검색일자: 2016.10.24; 베트남 관세법 제28조, 검색일자: 2016.08.0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사전심사제도 절차

- 수출입 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 확인하려는 경우, 수출입하기 90일 전 관할 세관에 사전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 수출입 또는 예정물품 신고자는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을 세관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물품 정보, 관련 입증서류, 그리고 물품 샘플을 제공하여야 함
 - 물품의 샘플을 제공할 수 없다면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은 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가격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신고자가 제공한 입증서류와 샘플에 기초하여 원산지를 확인함
 - 관할세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세총국에 해당 신청을 보고 하여야 함
 - 만약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관할 세관은 입증 가능한 서류의 보충을 요구하여야 함
 - 관세총국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승인 또는 거절)를 하여야 함

- 사전확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은 수출입 신고인은 사전확인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세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에서 사전확인 결과 통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인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입 또는 예정 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인 결과 통보서는 결과 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지속되며 물품의 향후 통관에서 법적 유효성을 가짐
 - 단 실제 수출입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 시와 다른 경우는 해당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할 수 없음

2) 사전심사제도 요건

- 물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심사제도 이용을 위해 신고자는 <표 2-Ⅸ-1 >의 사전확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¹⁵⁴⁾
 - 품목분류 사전확인의 경우, 물품 샘플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품정보에 대한 서류를 원본으로 제시하여야 함
 - 원산지 사전확인의 경우 상품명, 상품코드, 원산지재료 정보, 그리고 물품 CIF가격 정보에 대한 서류는 원본으로 제시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는 복사본 제출이 가능함
 - 관세가격과 물품가격 사전확인의 경우 물품정보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복사본 제출이 가능함
 - 만약 물품이 수출입 거래 전이거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물품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세관에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함

-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자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한 물품을 수출입한 이력이 없을 것
 -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연속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을 것
 - 수출/수입 물품에 대해 밀수출입죄, 불법거래 및 탈세 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것
 - 수출/수입에 대한 결제방법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가 활용되었을 것
 - 분할운송이 아닌 일괄운송 거래일 것

154)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금 및 세무관리 시행규칙 NO. 38/2015/TT-BTC 제7조 규정에 의함. 베트남 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467&seqno=118487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6. 10. 12

〈표 2-IX-1〉 베트남 사전확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구분	신청서 양식	샘플	물품정보 관련 서류
품목 분류	부록 Appendix IV (No. 01/XĐTMS/TXNK)	수출입 물품의 샘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문서(구성요소 분석) ○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징, 구조, 기능, 상품의 운영방법 ○ 카탈로그 및 상품사진
원산지	부록 Appendix V (No. 01/XĐTXX/GSQ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 상품코드 ○ 원산지 재료 정보 ○ CIF가격 정보 ○ 제조업자나 수출자가 제공한 재료비 등의 정보 ○ 상품제조에 사용된 근무일수 목록 ○ 제조업자가 제공한 분석증명서 또는 전체 제조공정 설명서 ○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 사진
관세 가격	부록 Appendix VI (No. 02/XĐTTG/TXNK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직접 체결한 영업계약서 ○ 거래와 관련된 서류(있는 경우) ○ 수출품의 인보이스 가격이 수출시점에서 실제 판매가격으로 변환되어야 할 때 관련서류 ○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 사진
물품 가격	부록 Appendix VI (No. 02/XĐTTG/TX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직접 체결한 영업계약서나 이와 동일한 서류 ○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증거서류 ○ 거래와 관련된 서류(있는 경우) ○ 기술문서, 카탈로그, 상품 사진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B/L 및 이와 동등한 운송서류

자료: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467&seqno=118487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6. 10. 12

나. 사후불복제도

- 「관세법」에서 말하는 사후불복제도는 통관 후 관세기관에 의해 처분된 내용에 위반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세관신고인(납세자)이 관세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을 무효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 베트남의 사후불복제도는 ① 관세법 ② 수출입세법 ③ 세무행정법 ④ 행정불복법, 그리고 ⑤ 행정소송법 등이 있음
 - 「관세법」에서는 세관신고인의 사후불복 가능성을 규정하였으나 절차와 요건 등의 상세규정은 명시하지 않음
 - 「수출입세법」과 「세무행정법」에서는 사후불복 가능성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적용요건과 절차 등의 상세내용을 「행정불복법」에 위임하였음
 - 단, 「수출입세법」의 사후불복에 관한 규정은 2016년에 개정되면서 삭제됨

1) 「관세법」상 사후불복제도 관련 규정

- 베트남 「관세법」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제18조)’에서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과 관세공무원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법률위반의 적용요건,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음
- 또한 「관세법」 ‘물품 품목분류(제26조)’에서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의 물품 품목분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¹⁵⁵⁾
 - 그러나 물품 품목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용요건,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음

155) 베트남 관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관세기관은 최초 세관신고인이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분석, 감정 및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세관신고인의 견해와 함께 물품 샘플을 채취할 권한이 있음

2) 「수출입세법」상 사후불복제도 관련 규정

- 베트남 「수출입세법」 ‘불복 제기 및 불복 해결(제22조)’에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액, 벌금, 처벌형식에 관하여 관세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과 벌금을 완전히 납부하여야 하고 처벌형식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불복과 고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불복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¹⁵⁶⁾
- 「수출입세법」에서 납세자는 관세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먼저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고, 사후적으로 「행정불복법」에 따라 불복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였음
- 그러나 2016년 9월 1일 새롭게 개정된 「수출입세법」에서는 ‘불복 제기 및 불복 해결(제22조)’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사후불복에 대해 별도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도 없어, 사후불복의 제기 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3) 「세무행정법」상 사후불복제도 관련 규정¹⁵⁷⁾

- 베트남 「세무행정법」 ‘납세자의 권리(제6조)’에서 “납세자는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 결정 또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세무행정기관의 의무(제8조)’에서 “세무행정기관은 그들의 권한에 따라 세법 집행과 관련된 이의제기와 공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denunciations)를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법 ‘부과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의무(제41조)’에서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완납하고, 이후 세금에 대한 문의,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후구제 여지를 남겨놓음

156) No. 45/2005/QH11 제 22조

157)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세무행정법』,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7053?astSeq=570>, 검색일자: 2016.11.14

- 「세무행정법」 제41조에서 “납세자는 세무행정기관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부과 통보받은 납세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뒤, 세무행정기관에 과세가격평가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마지막으로 같은 법 ‘이의제기와 고발(제116조)’에서 이의제기와 고발에 관한 적용요건, 절차 및 기한 등의 내용은 「행정불복법」에 따른다고 규정함

4) 「행정불복법」상 사후불복제도 관련 규정¹⁵⁸⁾

- 베트남 「행정불복법」 제2조에서의 행정심판(Complaint)이란 사인, 기관, 조직뿐 아니라 공무원 또는 당 간부가 행정관청의 행정상 결정(administrative decision, 행정처분), 행위 또는 징계처분에 관해 그 처분행위가 위법하고 개인적 권리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함
-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해 「행정불복법」 제33조에서 불복 제기는 2단계로 구성되며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음
 - 제1차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1차 행정심판(settlement on complaint)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1차 행정심판기간(30일)까지 제1차 행정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때에는 그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행정심판 청구자는 제2차 행정심판을 제2차 심판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제2차 행정심판기간(45일) 내에 심판이 내려지지 않거나 ② 청구자가 1차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임
-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자가 제2차 행정심판 대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158) 법제연구원,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설계』, 2013.11, p.38 및 베트남 행정불복법 No. 02/2011/QH13.

- 당 간부 또는 공무원의 업무태만 등에 대한 징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다루며, 이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있음
 - 행정심판절차와 동일하게 2단계의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또한 별도 법령이 아닌 「행정절차법」에서 다룸¹⁵⁹⁾

5) 「행정절차법」상 사후불복제도 관련 규정¹⁶⁰⁾

- 베트남 「행정절차법」 ‘소송 개시를 위한 소멸시효(제104조)’는 행정결정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함¹⁶¹⁾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본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행정사건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 정부기관 및 단체임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행정결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징계하고 결정을 통지받거나 또는 안 날로부터 1년
 - 행정결정 또는 경쟁 사건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해결에 대한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 기관이 작성한 선거인명부의 심판청구 결과의 통지일로부터,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판 시효의 만기일로부터 선거일 5일 전까지
- 소송제기가 가능한 소멸시효의 종류 중 기관 통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제기가 소제기 시효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지속되어 소제기를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산정되지 않음¹⁶²⁾

159) 종래 하나의 법률 안에서 행정심판(Complaint)과 함께 다루어졌던 공무상 불법행위신고(denunciatio n)는 2011년 11월 「공무상 불법행위신고법(Law on Denunciation)」이 별도로 제정됨으로써 단일법을 구성하게 되었음. 동법은 당 간부,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public employees)에 의해 범해진 직무상 불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160)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행정절차법, No.64/2010/QH12』,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priority/31904>, 검색일자: 2016.11.14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모든 행정절차행위는 이 법에 적용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으로 파악됨

161) 「행정절차법」 제 104조1항: 시효란 소송 제기의 법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효가 만기되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함

162) 「행정절차법」 제104조 3항: 원고가 이 조 제2항 제a호, 제b호에 기술된 시효 내에 불가항력 또는 다른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 또는 다른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지속된 기간은 소송개시를 위한 소멸시효에 산정되지 않는다.

X. 벌 칙

- 베트남의 관세행정 벌칙의 입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형법 및 관세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세·무역과 관련한 범죄를 구성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베트남 「형법」(Criminal Code, No. 100/2015/QH13)에서 규정함¹⁶³⁾
 - 규정하는 관세형벌의 종류는 징역, 벌금 및 몰수임
 - 관세법과 관세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는 「세관구역에서 정부 행정 위반 혐의 및 행정 결정 집행에 관한 벌칙을 공포한 시행령」(the Government promulgating the penalties on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n customs, No. 127/2013/ND-CP, 이하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규정하는 관세형벌의 종류는 벌금¹⁶⁴⁾과 몰수임

163) 관세행정형벌 중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베트남 형법(CRIMINAL CODE; BỘ LUẬT HÌNH H SỰ, No.100/2015/QH13)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벌칙규정으로 <제188조>몰수, <제200조>탈세, <제239조> 미승인 폐기물의 수입, <제246조> 미승인 외래종의 수입과 국내공급, <제259조> 미승인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출입 등이 있음

164) 베트남 형법의 영문번역본은 벌금(Phạt tiền)을 'Fine'으로 규정하였고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Fine'을 벌금으로 해석함

1 개요

- 베트남의 관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와 관련한 규정은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서 규정함
 - 세관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예방 조치 및 행정처벌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관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벌칙, 벌금, 개선조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함
 - 2004년 및 2007년도에 공표되었을 당시 「세관구역에서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집행 처리를 규정한 행정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벌칙(penalties)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2013년 개정에 사용함¹⁶⁵⁾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은 ① 관세행정 위반에 대한 일반규정 ② 관세행정벌칙(이하 ‘관세형벌’)의 종류, 그리고 ③ 벌칙 집행을 위한 세관행정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반규정은 법령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의 일반규정과 행정위반의 면책대상, 행정위반에서 제외되는 행위 등 면책규정을 포함하는 통칙의 역할을 함

- 베트남의 관세·통관과 관련한 다음의 법령을 위반 시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이 적용됨¹⁶⁶⁾
 - 베트남 관세법(Law on Customs) 등 관세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률 규정
 - 세관검사와 세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 규정
 - 수출입세법(Law on Import and Export Tax) 등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
 - 수출입 물품, 베트남에 입출국하는 운송수단, 환적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한 법률 규정

165) 개정 전 시행령은 No. 138/2004/ND-CP과 No. 97/2007/ND-CP이 있음

166) 관세·통관법령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베트남 관세법(No. 54/2014/QH13), 세관 절차, 세관 감독 및 검사; 수출입 세금에 대한 시행령(No. 38/2015/TT-BTC), 수출입세법(No. 107/2016/QH13), 그리고 관세법상 세관절차, 검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시행령(No. 154/2005/ND-CP) 등이 있음

2 관세형벌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 명시된 관세형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몰수가 있음
 - 대다수의 형벌은 벌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법 물품이 위법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압수한 뒤, 위법사실이 성립한다면 몰수절차를 밟음
 - 벌금과 몰수 이외에 베트남으로부터의 위법 물품 반출과 탈세에 대한 벌금과중처벌이 있음
 - 벌금과 몰수 이외에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위법 물품의 경우 베트남으로부터의 재수출 또는 폐기가 요구됨
 - 탈세나 세금사기의 경우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회피세액과 회피세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함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벌금의 최고액은 6천만동(VND)으로 2017년 1월 4일 기준 약 317만원(KRW)임
 - 동법 제10조(통관과 관세조사의 위반), 제11조(세관감독에 대한 위반), 제12조(세관 통제에 대한 위반) 및 제14조(수출입물품의 관리와 운송수단의 환적관리 위반)에서 최고 벌금액에 해당하는 형벌을 규정함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제척기간은 관세행정법령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음¹⁶⁷⁾
 - 벌금 처분과 별개로 체납세액, 과다환급 및 부족 세액 등 위반이 추가로 발각되면 발각일로부터 직전 10년간의 회피세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위반자가 고의적으로 행정집행을 회피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벌금 부과 제척기간은 위반자의 회피행위가 멈춰진 날로부터 새롭게 적용됨

167) 베트남 세관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부과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로 의견이 나뉘었었음. 이에 대하여 해당 법조문의 베트남 원어와 베트남 법령사이트(<http://thuvienphapluat.vn>)에서 영문으로 번역한 법조문을 참고한 결과, 베트남 원어는 'Thời hiệu'라고 규정하여 '처분시효'로 해석이 되고 영문 번역본은 'Limitations'라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을 뜻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벌금 부과 제척기간'으로 용어를 통일함

가.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의 일반규정

1) 일반규정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이 적용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음¹⁶⁸⁾
 - 관세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 세관검사와 세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규정
 -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
 - 수출입 물품, 베트남에 입출국하는 운송수단, 환적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한 법률 규정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 따른 벌금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¹⁶⁹⁾이며 추가적인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 발각일 직전 10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됨¹⁷⁰⁾
 - 세금회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세금 사기, 신고납부세액의 부족, 과도한 감면 또는 환급을 구성하는 행정위반은 동 위반을 행한 날로부터 5년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벌금 처분과 별개로, 체납세액, 과도한 감면 또는 환급, 그리고 회피한 세금이 있고 이러한 위반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동 발각일로부터 직전 10년 간의 과부족 또는 회피 세금을 정부 예산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만약 위반자가 고의적으로 행정집행을 피하거나 방해하면 벌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위반자의 회피행위가 멈춘 날로부터 다시 재개됨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위반행위이며, 개인의 위반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처분받는 벌금의 절반을 처분받음¹⁷¹⁾
 - 다만 ① 이 법 제9조(외국통화의 세관신고 등) ② 제14조 1항(수출입 물품과 운송수단의 세관신고에 대한 위반행위)은 개인만이 벌칙 처분을 받음¹⁷²⁾

168) No. 127/2013/ND-CP 제1조 1항

169) 베트남 개정 조세범처벌법(2015.12.29.)상 7년

170) No. 127/2013/ND-CP 제3조

171) No. 127/2013/ND-CP 제4조

172) 대상은 No. 127/2013/ND-CP 제9조(베트남 입출국시 외국통화, 베트남 통화 또는 금에 대한 세관신고의 위반)과 제14조1항(수출입물품의 관리와 운송수단의 환적관리 위반)이 있음

- 또한 개인의 위반행위가 이 법 <제8조> 세금신고절차에 대한 위반에 해당 시 예외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벌금이 처분됨
- 세관지국장, 밀수조사 및 예방국장, 그리고 세관총국장은 위반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해당 물품을 압수 또는 파기하여야 함¹⁷³⁾
 - 위반 물품이 통관절차 완료 기한 내 통관하지 않는 수입 물품인 경우의 처리
 - 수입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되고 90일이 지났으며, 그동안 아무도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언론에 해당 내용을 방송하고 세관 관할구역에서 사후 공고를 게시하여야 함
 - 방송 또는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압수 또는 파기
 - 위반 물품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운송수단인 경우의 처리
 -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은 언론 방송 및 세관 관할구역에 사후 공고
 - 방송 또는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도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압수 또는 파기
 - 물품이 특허, 계약, 선하증권 또는 적하목록 규정에 위배되고 이에 따라 수신인에게 수령 거부된 경우 해당 물품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으로 간주함
 - 위반 물품이 반드시 재수출되거나 베트남으로부터 내보내어야 하는 수입 물품인 경우의 처리
 - 벌칙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고도 재수출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설명이 없는 한 압수되거나 파기됨

2) 면책규정

- 다음의 경우 정상참작하여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행정 위법 대상으로 보지 않음¹⁷⁴⁾

173) No. 127/2013/ND-CP 제23조

174) No. 127/2013/ND-CP 제2조

- 법 위반자가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정상참작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¹⁷⁵⁾
 - 최초 위반인 경우
 - 위법물품의 가치가 최소 벌금에 규정된 총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행정위반으로 분류되지 않는 면책행위로 봄¹⁷⁶⁾
- 위반행위가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벌칙 면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¹⁷⁷⁾
 - 세관당국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예상치 못하게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차량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해당 사고가 해결되면 해당 물품과 차량을 베트남으로부터 반출시켜야 함
 - 물품 화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 위반으로 보일 법한 수입 물품의 오류를 세관에 미리 알린 경우
 - 화주 또는 법정대리인은 세관에서 물리적인 검사나 검사면제 결정을 내리기 전 오류통보를 하여야 하며, 물품의 종류가 총기·마약 등과 같은 위법 물품인 경우 면책규정에서 제외됨

175) 베트남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No. 15/2012/QH13 제9조)에서 규정한 정상참작행위는 다음과 같음

- ① 법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제한하거나 방지하려고 노력한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 처리한 경우
- ② 법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위반사실을 보고하거나 위반사실에 대해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 또는 행정위반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 ③ 법 위반자가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감정적으로 자극되어 행정적 위반을 저지른 경우 등
- ④ 법 위반자가 타인에 의해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되어 행정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 ⑤ 법 위반자가 임신부, 노약자,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등 스스로의 행동을 감지하거나 통제할 능력을 박탈당한 경우
- ⑥ 법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 행정위반을 저지른 경우
- ⑦ 법 위반자의 무지로 인해 행정위반을 저지른 경우
- ⑧ 기타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정상참작의 경우

176) No. 127/2013/ND-CP 제5조

177) 베트남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No. 15/2012/QH13 제11조)에서 규정한 행정 제재대상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① 긴급 상황에서의 행정위반행위
- ② 정당방위를 위한 행정위반행위
- ③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한 행정위반행위
- ④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행정위반행위
- ⑤ 만 14세 미만의 행정위반자는 행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세관신고서의 오류 내용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
 - 납세신고규정의 위반 또는 세금 회피·사기가 발생하였으나, 신고세액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세액계산 오류로 보이는 경우
 - 개인의 경우 50만VND를 초과하지 않는 세액계산 오류
 - 법인의 경우 200만VND를 초과하지 않는 세액계산 오류
 - 수출입 물품의 수량 또는 무게의 차이가 세관신고서와 극히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 실제 부과된 수출입세금의 총금액 중 10%를 초과하지 않는 오류로서, 그 오류는 1천만VND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출입 물품의 품목명은 올바르지만 세액 결정에 필요한 HS Code가 불일치한 경우로서 최초 1회만 용납됨
- 관세행정 위반자 또는 위반 물품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벌칙 이행이 어려운 경우,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음¹⁷⁸⁾
- 세관 통제와 관련된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은 처분받은 벌금이 300만VND 이상이고 자연재해, 화재, 재앙, 전염병 또는 치명적인 질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벌금을 면제 또는 경감을 요청할 수 있음
 - 벌금의 면제 또는 경감 적용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이유
 - 자연재해, 화재, 재난, 사고, 감염 등에 의해 손상된 재산 또는 물품의 가치, 재난에 의한 수선비용
 - 면제 또는 감면되는 벌금 금액
 - 손상된 재산이나 그 치료비용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공증사본을 동봉
 - 최대 벌금 경감액은 미리 결정된 미납 벌금액과 같으며 손상된 재산이나 물품 또는 수선비용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정위반에 대한 벌금의 경감 및 면제는 행정결정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반 제한규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78) No. 127/2013/ND-CP 제24조, 행정위반관리법 제77조 2항(벌금의 경감 또는 면제를 공여하는 권한과 그 절차)을 준용함

나. 관세형벌의 종류

- 베트남의 관세형벌은 총 9가지의 종류로 구분되며 죄목은 통관 및 통관신고 절차, 관세신고절차, 통관과 세관조사, 세관의 감독 및 통제, 탈세, 수출입물품의 관리, 그리고 보세구역 관리의 위반 등으로 구성됨

- 베트남의 관세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표 2-XII-1>에서 간략히 요약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 V]를 참고할 것

〈표 2-X-1〉 베트남의 관세형벌 종류 및 내용 요약

(단위: 1만동(銅)VND)

법령 (No. 127/2013/ ND-CP)	내용	관세형벌
〈제6조〉 통관절차 완료와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규정 위반	○ 통관일정보다 늦게 서류제출	○ 경고 또는 50~100
	○ 관세 감면대상 물품의 사후관리 불이행 등	○ 100~500
	○ 재수출 예정물품의 재수출 불이행 등 ○ 좌석 24석 미만의 정기적인 국경출입 차량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 불이행	○ 500~1,000
	○ 재수출 또는 재수입물품은 베트남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3,500~5,000
〈제7조〉 통관신고절차의 위반	○ 세관신고 불이행 또는 세관신고서 내용의 부정확 등	○ 50~100
	○ 세관신고 불이행 또는 세관신고서 내용의 부정확한 경우로서 생산·수리 또는 보증을 위해 환적항구 등으로 보내지는 물품 등	○ 100~300
	○ 관세 감면 수출입 물품으로서 세관신고 불이행 또는 세관신고서 내용의 부정확 등	○ 300~500
	○ 수출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가격에 대해 거짓정보 제공 시	○ 2,000~4,000
〈제8조〉 세금신고절차의 위반	○ 신고납부세액의 부족 또는 과다 감면·환급을 신청한 납세자	○ 위반행위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부족 등 금액의 10~20% 범위를 벌금으로 부과
〈제10조〉 통관과 세무(관세)조사의 위반	○ 납부세금 변동이 없는 통관서류의 위조	○ 경고 또는 50~100
	○ 세관요청(직원할당, 물품 및 차량제공 등) 불이행 등	○ 200~400
	○ 사후통관의무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 400~1,000
	○ 세관의 세무조사결정 미준수	○ 1,000~2,000
	○ 세관검사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물품과 아닌 물품을 교환한 경우	○ 2,000~6,000 및 수출입 금지물품 등인 경우 압수
	○ 타법인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전산통관절차를 완료한 경우	○ 2,000~6,000
〈제11조〉 세관 감독에 대한 위반	○ 운송중인 물품 및 재수출물품의 정보가 관세서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	○ 1,000~2,000
	○ 세관 감독하에 있으나 무허가 물품 판매	○ 2,000~4,000 및 압수
	○ 세관 감독하 또는 통관 서류 물품이 무허가 판매된 경우로서 수출입금지 물품 등인 경우	○ 4,000~6,000 및 압수 또는 파기

〈표 2-X-1〉의 계속

법령 (No. 127/2013/ ND-CP)	내용	관세형벌
〈제12조〉 세관 통제에 관한 위반	○세관지역 내 차량 운행 시 세관공무원 지시 불이행	○ 100~200
	○합법적인 서류 없이 세관영역에서 수출입 물품의 보관, 판매 및 운송하는 경우 등	○ 위법 물품 가치에 따라 200~600 및 압수
	○부정확한 경로로 국경을 통과한 외국운송 수단	○ 500~1,000
	○합법적인 이유 없이 목적지 이외의 항구로 물품 양하 등	○ 3,000~6,000 및 압수
〈제13조〉 탈세와 세금 사기에 대한 처벌	○탈세와 세금 사기를 저지른 납세자	○ 법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회피한 세금과 동등한 금액 또는 처분된 벌금의 10~20% 범위 ○ 세금채납액은 전액 납부되어야 함
〈제14조〉 수출입물품의 관리와 운송수단의 환적관리 위반	○외국인의 수출입규정 및 환적규정 위반	○ 50~200 및 압수
	○인도주의적 원조물품 등의 수출입규정 및 환적규정 위반	○ 100~300 및 압수
	○수출입신고필증과 다른 내용의 차량 또는 물품 등	○ 500~1,000
	○수출입 면허를 미취득한 운송중인 물품 등	○ 1,000~3,000
	○수입금지 품목을 수출입 면허 없이 재수출 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등	○ 3,000~6,000
〈제15조〉 보세창고와 관세유예창고 관리 위반	○보세창고와 관세유예창고의 임대료를 세관에 미통보 등	○ 50~200
	○세관 승인 없이 보세창고 간 물품 이동 등	○ 200~500
	○보세창고에서 외국으로 발송한 물품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등	○ 500~1,000
	○보세창고 보관 불능 물품을 해외에서 송부 받은 경우 등	○ 1,000~2,000

자료: 저자 작성

3 관세형벌의 추가 집행

- 제2장에서 관세형벌의 종류와 벌칙 적용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관세행정법령 위반자가 최초 벌칙 집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추가적인 제재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함

가. 개요

-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은 관세행정 위반자가 기한 내에 법령이 정한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산(assets)을 불법적으로 청산 또는 도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원칙,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함
 - 관세행정 위반자가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 따라 처분받은 행정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불법적으로 자산을 청산하는 경우, 세관총국 등 집행권한자로부터 추가적인 행정결정을 처분받게 됨¹⁷⁹⁾
- 관세행정 위반자에 대한 제한은 ① 금전 제한 ② 무역활동 제한 ③ 자산처분 제한 및 ④ 영업활동 제한 등이 있음
 - 관세행정 절차 위반자의 은행 계정에서 강제적인 금전 이체를 하거나 계정을 원천 봉쇄하고, 위반자의 급여나 소득에서 금액 공제하는 등의 금전적인 제한
 - 수출입 통관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송장을 무효처리하는 등 무역활동 제한
 - 법에 따라 위법 자산을 경매를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몰수하는 등 자산 처분 제한
 - 사업허가등록증, 기업등록증, 기업 설립 및 운영 허가증 등 취소 등 영업 제한

나. 관세형벌의 추가 집행 규정

- 세관행정에 대한 벌칙 및 추가적인 개선 조치에 대한 집행을 결정하는 자(이하 ‘행정 결정 집행자’)는 다음과 같음¹⁸⁰⁾

179) 이 법 제25조 3항과 26조, 그리고 35조에 행정결정이 집행되는 필수적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180) No. 127/2013/ND-CP 제29조

- 세관총국장
 - 세관지국장
 - 세관총국과 연계된 밀수 조사 및 예방 국장
 - 세관총국과 관련된 통관 후 검사 국장
 - 세관지국 일부 부서의 소장과 통관 후 검사국 부서의 소장
 - 행정 결정 집행자는 그러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¹⁸¹⁾
 - 권한의 위임은 행정집행의 대표 이행자가 부재일 때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의 범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세관통제에 관한 행정결정(이하 ‘행정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¹⁸²⁾
- 납세자 또는 보증인이 세금 납부 기한 또는 과세에 대한 행정 결정의 집행 마감일로부터 90일까지 세금 납부에 대한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위반자가 과세에 대한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자산을 청산하거나 도망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위반자 또는 보증인은 벌칙에 대한 결정이 접수된 날부터 또는 결정서에 기재된 기한일로부터 10일 후에는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및 개선조치」에 따른 기타 행정 결정 사항을 이행할 수 없음
- 조세위반과 기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¹⁸³⁾
- 조세에 관한 행정결정은 ① 미납 세금 및 연체료에 대한 통보 ② 조세 부과에 대한 결정 ③ 과도한 환급으로 인한 과세 연체에 대한 통보 ④ 세관 통제와 관련된 조세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결정임
 -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및 개선조치」에 따른 기타 행정결정
 - 행정결정의 집행은 이 법 제26조 ‘행정결정 대상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¹⁸⁴⁾
-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행정 결정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¹⁸⁵⁾

181) No. 127/2013/ND-CP 제29조 5항

182) No. 127/2013/ND-CP 제26조

183) No. 127/2013/ND-CP 제25조 3항

184) No. 127/2013/ND-CP 제35조 1항

185) No. 127/2013/ND-CP 제25조 4항

- 이 법 제25조 3항인 ‘조세에 관한 행정 결정과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 및 납세자
 - 위반자의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고 위반자의 계좌에서 정부 예산 또는 주 재무부의 세관당국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지 못하는 주 재무부, 은행, 기타 신용기관, 법인 및 개인
 - 납세자가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 또는 벌금을 내야 할 책임을 갖지만 의무를 불이행한 보증인
 - 납세자의 금전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몰수 결정을 이행하지 못한 조직과 개인
 - 세관당국이 제기한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이행하지 못한 관련 조직과 개인
- 행정 결정 집행자는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에 규정된 다음의 내용에 따라 집행처분을 할 수 있음¹⁸⁶⁾
- 주 재무부, 상업은행, 신용기관 등 위반자의 계정에서 금전 이체 및 위반자의 은행 계정 봉쇄를 요청
 - 위반자의 급여나 소득에서 공제
 - 수출입 통관절차를 정지시킴
 - 송장 무효처리 시행
 - 법에 따라 위법 자산을 경매를 이용하여 판매
 -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반자의 자산과 금전을 몰수하는 처분
 - 사업허가 등록증, 기업 등록증, 기업 설립 및 운영 허가증 등 취소
 -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구제조치 적용을 강요
- 행정결정 집행자가 송장을 무효처리하거나 사업허가등록증 등을 취소하는 경우, 집행 내역의 문서화와 함께 공문을 작성하여 조세청과 해당 송장과 사업허가등록증을 발급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함¹⁸⁷⁾
- 행정 집행 결정자는 집행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송달받은 법 위반자는 행정 집행 시행과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186) No. 127/2013/ND-CP 제27조 및 제29조 4항

187) 상동

- 집행 결정의 통지는 집행이 실시되기 전 5일 이내에 위반자,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알려야 함¹⁸⁸⁾
 - 통지는 직접송달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등기를 이용한 서면으로 진행 가능함¹⁸⁹⁾
 - 서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집행결정자는 최소 5일간 인민위원회 행정구역 및 위반자 등 통지받을 자의 거주지 관할구역에 통지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함
 - 집행에 대한 결정을 받은 조직 또는 개인은 이를 시행해야 하며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함¹⁹⁰⁾
 - 집행비용은 집행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매 개최비용, 자산의 분해 및 운송 발생비용, 자산 보관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임¹⁹¹⁾
- 행정집행 결정의 효력은 결정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¹⁹²⁾
- 단, 위반자가 집행 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가 중단된 때부터 행정집행 결정의 효력이 다시 시작됨
 - 세금, 벌금, 또는 연체이자가 정부 예산에 전액 납부된 경우 행정 집행은 종료됨

188) No. 127/2013/ND-CP 제30조

189) No. 127/2013/ND-CP 제34조

190) No. 127/2013/ND-CP 제31조

191) No. 127/2013/ND-CP 제37조

192) No. 127/2013/ND-CP 제32조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 베트남의 통관과 관련된 법령은 「관세법」과 재무부 장관 및 관세총국에서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있음
 - 베트남 「관세법」(No. 54/2014/QH13) ‘제3장 제1목 총칙’에서 통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16조부터 제43조까지 통관원칙, 통관절차, 통관서류, 관세신고, 서류·실물 검사 등을 다루고 있음
 - 아래와 같이 통관 절차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음¹⁹³⁾
 - 세관의 통관 절차, 검사 및 감독에 대한 시행령(No. 154/2005/ND-CP)
 - 세관의 통관 절차에 대한 지침, 검사 및 감독, 상품에 대한 수출입 세금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시행령(No. 194/2010/TT-BTC)
 - 물품 수출입을 위한 세관 서류 발행에 대한 시행규칙(1171/QD-TCHQ)
 - 전자 통관 절차의 물품 수출입을 위한 세관 서류 발행에 대한 시행규칙(2396/QD-TCHQ)

- 베트남의 수출입 통관은 관할지 세관과 입항지(수입)/출항지(수출)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되어 총 2회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¹⁹⁴⁾

193)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2013.04,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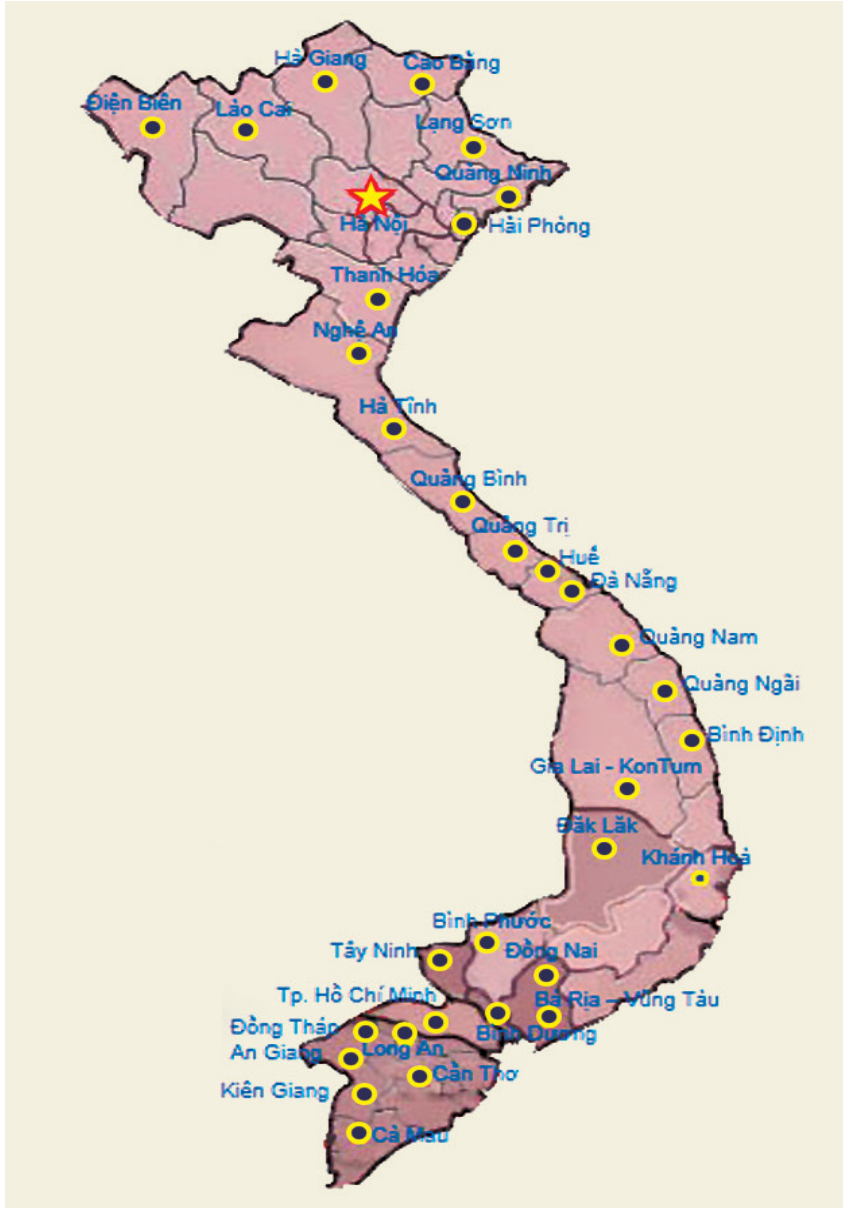
194)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 물류 및 통관현황」, 2016.04, pp.33~34

- 관할지 세관에서 전산으로 수출입 신고를 접수 하면 무작위로 검사 여부가 결정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① 통관 승인 ② 선적서류 제출 ③ 지정장소 입고 후 실물검사를 진행함
 - AEO 인증기업의 경우 신속통관을 위해 검사 면제 및 선적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 받음
 - 출항지 세관은 관할지 세관에서 검사 완료 후 승인 완료된 수출입 신고서 사본을 송달받아 내용 확인 후 서명함
 - 화주는 출항지 세관의 서명이 기재된 수출신고서 사본을 다시 수령함
- 베트남은 세관정책 현대화 계획 및 통관 절차 완화를 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 전자통관(E-CUSTOM)방식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음¹⁹⁵⁾
-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 「ECUS5VNACCS」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음
- 베트남의 수출입 통관은 세관 관할지역 33개 성에서 담당하고 있음¹⁹⁶⁾

195)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 물류 및 통관현황」, 2016.04, p.32

196) 33개 성에는 하노이(Hà Nội), 호치민(HCM), 다낭(Đà Nẵng), 하이퐁(Hải Phòng), 칸토(Cần Thơ), 안강(An Giang), 바리아-붕타우(Bà Rịa-Vũng Tàu), 빈딘(Bình Định), 빈중(Bình Dương), 빈 푸옥(Bình Phước), 카마우(Cà Mau), 까오방(Cao Bằng), 닥락(Đắk Lắk), 동나이(Đông Nai), 동탑(Đông Tháp), 디엔비엔(Điện Biên), 꼰똥(Gia Lai-Kon Tum), 하안장(Hà Giang), 하띤(Hà Tĩnh), 키엔지앙(Kiên Giang), 칸호아(Khánh Hoà), 랭선(Lạng Sơn), 라오까이(Lào Cai), 롱안(Long An), 네안(Nghệ An), 팜빈(Quảng Bình), 팜남(Quảng Nam), 팜닌(Quảng Ninh), 팜나이(Quảng Ngãi), 팜찌(Quảng Trị), 락이닌(Tây Ninh), 탄호아(Thanh Hoá), 투아띠엔(Thừa Thiên), 그리고 기타 2개의 특명 성이 있음

[그림 3-1-1] 베트남 세관지국 분포도



자료: 관세청, 『베트남 관세법 2014』, 2014.11

I. 수입 통관 절차

1 개요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됨
 -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음
 - 가공무역은 수입 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함
 - 가공무역은 수출진흥 목적에 따라 보세지역의 활용 특혜와 수출용 원재료 관세면세 등 관세 혜택을 받음

- 일반적인 수입 통관과 달리, 베트남은 (1) 비상업적인 물품의 통관기한이나 보관장소의 제한을 두는 통관절차의 특례와 (2) 특수한 운송형태 또는 관세혜택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물품 관리자의 통관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법문화함
 - 통관절차의 특례 대상으로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면세점 판매 물품, 기증품과 선물, 그리고 긴급안보 물품이 있음
 - 우편·특송 화물과 임가공물품의 수입은 물품관리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서 따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¹⁹⁷⁾
 - 그 중 특히 육류나 수산물,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과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 시에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모두 함께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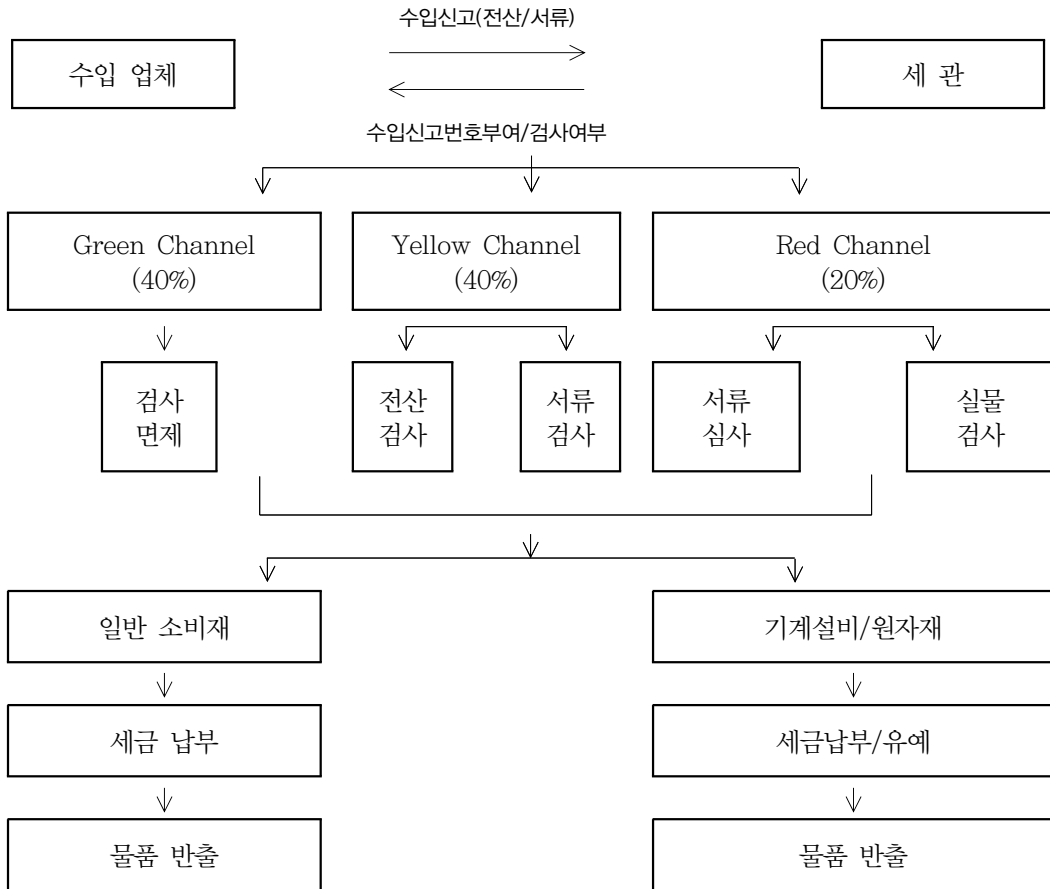
2 수입 통관 절차¹⁹⁸⁾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짐
 - 통관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걸린다고 함

197) 자동수입허가 대상 품목은 시행세칙(Circular) No.17/2008/TT-BCT와 No.24/2010/ TT-BCT에 H 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특정 도자 및 유리제품, 철강제품, 일부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음료 등임

19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베트남(개정)』, 2015.12, pp.50~54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그림 3-1-2] 베트남의 수입 통관 절차



자료: 손영환,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5, p.15

가. 수입신고

-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통관의 대상이 되는 상업적 물품에 대해 열거주의 형식으로 정의함¹⁹⁹⁾

199) 코트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 (요약)」,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027>, 검색일자: 2016.10.18

- 제154/2005/ND-CP호 정부 시행령 제2장 제1목에 규정된 상업적 수출입 물품은 다음을 포함함
 - 물품 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입 물품
 - 일시수입·재수출 방식에 따른 물품
 - 국경관문 변경 물품
 -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에 따른 수출입 물품
 - 외국상인과의 임가공계약 이행을 위한 수출입 물품
 -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입 물품
 - 인접국가와 국경무역 활동관리에 관한 정부수상 규정에 따른 국경을 통한 수출입 물품
 - 상인이 아닌 법인, 개인의 상업목적 수출입 물품
 - 수출가공업체의 수출입 물품
 - 세금징수유예 창고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
 - 전시회, 박람회 참여를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되어 건설공정과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대, 임차되는 재산 등

- 세관신고자는 수입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국경 관문에 물품이 도착한 일자는 운송서류에 포함된 적하목록에 날인된 관할 세관의 관인에 기재된 일자 또는 국경 관문을 통과한 운송수단의 신고서 또는 운송수단 감시일지에 기재된 일자임²⁰⁰⁾
 - 수입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15일 기한내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²⁰¹⁾

- 세관신고는 서류와 전산을 통한 수입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함
 -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E-Custom)의 실행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무역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베트남 재무부는 전국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2020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임²⁰²⁾

200) 상동

201) 관세법 제25조 2항

2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1

- 베트남의 주요 3대 항만으로는 북부 하이퐁항, 중부 다낭항과 남부 호치민항이 있음²⁰³⁾
- 다수의 계약·주문 건이 결합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수입 유형에 따라 1건의 세관신고 또는 다수의 세관신고로 구분됨²⁰⁴⁾
 - 다수의 계약·주문 건에 속하는 수입품목이 ① 한 판매자의 단수 또는 다수의 영수증을 보유하고 ②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일괄 인도되고 ③ 하나의 운송장으로 운송된 경우, 1건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 또한 하나의 수입물품에 종류별 세금 납부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1건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 수입물품이 여러 유형에 속하고, 복수 운송장과 상업송품장 등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 각 유형에 따라 복수 신고서로 신고함²⁰⁵⁾
 - 단 원본 증명서류들은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첨부 보관되고, 기타 세관신고서에는 사본 증명서류들이 첨부되며 증명서류상에 '원본은 ...일자, ...호 세관신고서에 첨부돼 있음'을 기재함
- 세관신고 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에 물품 계약서와 주문서 번호 등 물품 관련 내용을 충실히 신고하고, 세관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기 어려운 경우 상세 목록을 첨부할 수 있음
 - 수입물품 세관신고서의 물품량 란에는 다수의 계약·주문 신청된 물품의 총량만 신고하여야 함

203) 코트라, 「국가정보 : 베트남-통관절차 및 운송」,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cdKey=101084&itemIdx=9718&categoryType=003&categoryIdx=217>, 검색일자: 2016.11.01

204) 코트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 (요약)」,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027>, 검색일자: 2016.10.18

205) 가령 하나의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판매자이거나 송장별 인도조건이 다양하거나, 다수의 운송장으로 운송되거나 마지막으로 수입물품의 종류별 세금 납부시기가 상이하면 각 기준별 품목을 정리하여 다수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함

나. 납세신고

- 납세신고는 세관신고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나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
 - 세관신고는 물품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HS CODE, 원산지, 상업송장, 운송장, 품명, 중량, 포장명세서 등의 내용이 있음
 - 납세신고는 물품의 수입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물품가격, 계산된 세금, 감면 여부 등이 있음

- 세관신고와 물품 사용에 있어서 세관신고인은 다음과 같이 신고 목적에 따른 책임을 짐²⁰⁶⁾
 - 신고서의 각 항목, 수출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 또는 면세, 면세 검토, 감세 검토, 환급 검토, 세금 징수유예 검토의 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자진해 충실, 정확, 그리고 진실되게 신고하여야 함
 -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세액, 면세된 세액, 면세 검토, 감세 검토, 환급 검토, 세금 징수유예로 검토된 세액,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스스로 확정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짐

- 납세신고의 방법은 법령에 따라 세관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방식의 방법(E-CUSTOM)에 의함²⁰⁷⁾

- 등록된 세관신고서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통관수속을 처리할 효력을 가짐²⁰⁸⁾
 - 등록된 세관신고서의 효력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시점부터 적용됨

206) 코트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 (요약)」,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027>, 검색일자: 2016.10.18

207) 베트남 「관세법」 제29조

208) 상동

-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아래의 상황에 따라 보정 신고를 할 수 있음²⁰⁹⁾
 - 통관 수속중인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의 검사를 통보하는 시점 이전까지 보정신고를 할 수 있음
 - 통관된 물품의 경우: 통관완료일로부터 60일 기한 이내 및 관세기관이 통관 후 세무조사 및 감사를 결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보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단, 수출입 허가 대상 물품으로서 품질, 의료, 문화, 동물, 식물 검역,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보정신고의 경우는 제외함
 - 보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세관신고인이 세관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고 및 처리함

- 법 규정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율 신고 시 감세 이전 세율과 감세비율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²¹⁰⁾
 - 납세해야 할 세액을 세관신고서상의 세액 총액란에 기재하여 하나의 세금 납부증으로 신고함

- 수입 관련 세금은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 납부하여야 하나,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및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면세 또는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투자 목적 공장설비용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수출재화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물품 중 물품 반출 전 관세 납부 대상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다음의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임²¹¹⁾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란 「관세법」 위반 등 관세총국이 관리하여야 할 다음의 업체를 말함

209) 상동

210) 코트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 (요약)」,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027>, 검색일자: 2016.10.18

2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베트남(개정)』, 2015.12, p.56

- 재무부가 지정하는 소비재 및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 관세 납부 유예기간 중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 「관세법」 위반으로 1년 내 국(局) 1회, 지국(支局)에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상기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투자 목적의 공장설비 또는 수출용 원재료,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수입 물품의 경우 물품 반출 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 세관 검사

- 세관 검사란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 물품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를 포함함
 - 일반 통관의 경우 10%의 샘플 검사를 하고 있으나,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함²¹²⁾
 - 베트남 정부는 2012년 5월 1일 수입물품 관리 체계 확립과 불법·요건미달 수입품의 국내 유통 근절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 강화를 요지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²¹³⁾
 -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 허용 이후, 일부 제철·제약 분야에서 수입 급증 이 발생해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함

1) 세관 검사 대상 및 장소

- 세관 검사대상이 되는 수입 통관서류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중 통관 필수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허가서류 등 품목별 추가서류로 구분됨
 - 수입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음²¹⁴⁾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매매 계약서(Sales Contract)
 - 필수 서류에 더하여, 해당 경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2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베트남(개정)』, 2015.12, p.53

2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2

214) 베트남 「관세법」 제24조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희망 시 원산지증명서(C/O)
 - 수입 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I/L)
 - 수입 쿼터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쿼터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 수입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허가 등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허가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검사 면제 통보서, 각종 증명서 등²¹⁵⁾
- 세관은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위험관리 적용을 토대로 실물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의 물품은 실물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²¹⁶⁾
- 실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 법률위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실물검사 면제대상 물품
 - 실물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① 긴급 안보물품 ② 국방·안보 업무에 전용되는 물품, 그리고 ③ 정부수사 결정에 따른 기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물품 등이 있음
 - 살아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동식물 및 기타 사전검사 대상 특별물품
-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를 실시함
-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수입 통관이 허용됨
 -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의료장비,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경우 품질 검사를 강제하고 있음²¹⁷⁾
- 다음의 경우 통관 후 5년 이내에 세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는 경우
 -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 수입 관련 자료나 세관원의 수색 또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215) 수입신고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수입신고시, 타법령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양식으로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자료: 베트남 「관세법」 제25조 3항

216) 베트남 「관세법」 제33조

2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78

2) 세관 검사 기한

- 서류 심사의 종료는 세관이 통관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²¹⁸⁾
 - 세관은 통관 서류 심사 시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충분성과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 서류와의 부합성을 검사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함²¹⁹⁾
 - 통관서류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짐²²⁰⁾

- 물품 실물검사의 완료는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에 물품을 충분히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8근무시간임²²¹⁾
 - 전문분야 검사 물품의 제시 시점은 전문분야 검사결과를 입수한 시점으로부터 계산됨²²²⁾
 - 물품이 대량, 많은 종류이거나 검사가 복잡한 경우,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관세기관의 장이 물품 실물검사 기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기간은 최대 2일을 넘지 않아야 함

3) 세관 검사 방법

-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짐²²³⁾
 - 세관 공무원에 의한 통관서류 검사 시 세관신고 내용과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및 충분성을 검사
 - 세관신고서와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 서류와의 부합성 검사

218) 베트남 「관세법」 제23조

219) 베트남 「관세법」 제32조

220) 상동

221) 베트남 「관세법」 제23조

222) 전문분야 검사대상은 품질, 의료, 문화, 동물 및 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출입 통과 시 검사를 규정한 물품임.

223) 베트남 「관세법」 제32조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정책, 조세정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
- 실물검사의 방법은 세관신고인 입회하에 세관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함²²⁴⁾
 - 물품 실물검사는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후, 세관신고인 또는 그의 합법적 대리인 입회하에 물품검사 장소에 반입하여 검사함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부재중이더라도 물품 실물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물검사 방법은 장비이용 또는 제3자 입회검사가 있음²²⁵⁾
 - 세관신고인이 부재중임에도 물품의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국가의 안녕과 질서 보호
 - 위생, 환경 보호
 - 법률 위반 징후
 -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이 넘었음에도, 세관신고인이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 세관신고인 부재하의 물품 실물검사는 상황에 따라 다음 형식으로 진행되며 제3자 입회검사의 경우 관련 각 기관의 서명이 포함된 검사 문건이 작성되어야 함
 - 검색기를 통한 비(非)파괴 검사
 - 기술 장비의 활용 또는 관세기관의 기타 업무상 수단에 의한 검사
 - 세관구역 내 대표 국가기관, 운송사업자 및 공항과 항만, 창고, 보세장치장 운영사업자 대표의 입회하에 검사를 위한 물품 개장
- 실물검사는 물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린채널(Green Channel), 옐로우채널(Yellow Channel), 레드채널(Red Channel)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함
 - 그린채널(Green Channel): 저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함
 - 옐로우채널(Yellow Channel):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자산 성격의 기계

224) 베트남 「관세법」 제33조

225) 베트남 「관세법」 제34조

장치류 또는 관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되나,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가 진행됨

- 레드채널(Red Channel): 고위험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뉨
 -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임

〈표 3-1-1〉 채널(Channel)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신고 시)

채널(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그린채널(Green Channel)		전산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옐로우채널 (Yellow Channel)	전자서류 옐로우채널 (E-Yellow Channel)	전자서류(E-Document)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함
	종이서류 옐로우채널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레드채널(Red Channel)		종이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1

3 기타 수입 통관제도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와 다르게, 일부 특수한 유형의 수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 통관의 절차적 특례를 정하고 있음
 - 베트남 「관세법」 제46조부터 제58조의 ① 일시수입과 재수출 물품 및 일시 수출과 재수입 물품 ② 면세점 판매 물품, 그리고 ③ 기증품과 선물의 경우, 별도의 수입 통관절차에 의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됨
 - 또한 ④ 우편과 특송 화물, 그리고 ⑤ 임가공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을 처리·관리하는 운영사업자와 화주, 그리고 세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

가. 일시 수입·재수출 물품 및 일시 수출·재수입 물품²²⁶⁾

- 베트남의 일시 수출입 물품이 되는 대상은 포장용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기계장비, 외국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부품과 같이 일시적 수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음
 -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회송되어 온 용기
 - 일정기간 동안 작업 수행을 위한 기계류, 장비, 작업용구
 - 제조, 시공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계류, 장비, 시공 용구, 거푸집(주형), 샘플
 - 외국 선박, 항공기의 부품교환, 수리를 위한 수입 엔진의 부품과 부속
 - 전시회, 전람회, 제품소개 행사 참여 물품
 -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물품.
- 일시 수출 물품은 규정기한 내에 재수입되어야 하고, 일시수입 물품은 규정기한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며 수출 통관을 거쳐야 함
 - 만약 일시수입 물품이 국내 소비에 전용되어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경우에 준용하여 수입 통관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일시 수출 물품이 재수입되지 않거나 일시 수입 물품이 재수출하지 않고 판매, 기증, 교환된 경우, 일시 수출입 물품은 일반적인 물품과 같이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226) 베트남 「관세법」 제46조, 제48조

- 하나의 세관신고서로 이루어진 다수의 일시 수출입 물품은 다시 구분하여 여러 건의 재수입, 재수출 세관신고서로 진행할 수 있음
- 일시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재수출의 통관 절차는 국경 관문 세관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해당 물품은 국경 관문 세관구역에 또는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장치되어야 함
 - 해당 물품은 일시수입 통관수속을 하는 때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 재수출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음
 - 해당 물품의 세관신고인 또는 사업운영자는 베트남에서 머무르는 전 과정에서 일시 수입 물품을 보관하고, 일시 수입한 물품을 완전히 재수출할 책임을 짐

나. 면세점 판매 물품²²⁷⁾

- 면세점 판매 물품은 세관의 감시를 충족하는 면세점과 면세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함
- 면세점 판매 물품의 창고 보관기한은 통관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세점을 관리하는 관세지국 지국장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면세점을 관리하는 세관지국에서 통관 수속을 하여야 함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통관수속을 하는 때부터 판매될 때, 수출될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세관검사 및 감시를 받음
 - 면세점에서 판매할 일시수입 물품이 국내에 소비되는 것으로 전용하려면, 수입 물품과 마찬가지로 통관 수속을 하여야 함

227) 베트남 「관세법」 제47조

다. 기증품·선물과 긴급안보 물품 등

1) 기증품·선물²²⁸⁾

- 기증품과 선물은 과세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관 수속이 되어야 함
 - 만약 면세되는 기증품, 선물인 경우 동 물품의 기준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세관은 기증품과 선물이 수출입 금지 물품리스트에 속하는지 관리하고 그러한 물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함

2) 긴급안보 물품²²⁹⁾

- 긴급안보 물품이란 ① 긴급요구 서비스 물품 ②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으로 구분됨
 - 긴급요구 서비스 물품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확인문서가 첨부된 자연재해, 역병의 피해극복 서비스 용품 또는 긴급 구조요구 서비스 용품임
 -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 물품은 국방부 부장 또는 공안부 부장의 확인문서가 첨부된 물품임
- 세관신고인은 긴급안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불완전한 세관신고서 또는 이러한 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먼저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기한 이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수출입하는 경우 1회의 완전한 신고로 진행할 수 있음
-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은 국방부 부장 또는 공안부 부장의 확인문서로 비밀 유지 요구가 있는 경우, 세관신고와 실물검사가 모두 면제됨

228) 베트남 「관세법」 제49조

229) 베트남 「관세법」 제50조

라. 우편·특송물품 및 이사화물²³⁰⁾

- 우편과 특송물품은 우편서비스 공급사업자와 국제 캐리어 서비스 운영사업자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화물임
- 이사화물은 개인, 가족, 조직 또는 법인에 의해 베트남이나 외국으로의 거주 또는 사업활동 영위를 위해 이동되는 화물임
- 우편·특송물품과 이사화물은 통관 수속을 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함
 - 우편과 특송물품의 통관을 위임받은 우편서비스 공급사업자, 국제 캐리어 서비스 운영사업자는 세관신고인의 의무를 이행하여 통관한 다음, 해당 물품을 수하인에게 운송 및 전달할 수 있음
 - 이사화물은 수출입하는 개인, 조직 또는 법인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 또는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임가공물품의 수입 통관²³¹⁾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함
- 관세기관은 수출용 원재료와 물자를 수입하는 임가공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할 책임이 있음
 - 수출용 원료와 물자를 수입하는 업체의 임가공 작업장과 임가공이 가능한지의 능력을 검사하여야 함
 - 수출물품을 임가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수입 원료와 물자의 사용을 검사하고, 수출 물품 임가공 업체의 재고물품 수량을 검사하여야 함

230) 베트남 「관세법」 제52조~53조

231) 베트남 「관세법」 제59조~60조

- 수출용 원료와 물자를 수입하는 업체의 원료와 물자에 대한 결산, 관리내역, 사용 내역을 검사하여야 함
-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
 - 만약 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하여야 함
 - 만약 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함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하여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세기관에 수입 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하여야 함

II. 수출 통관 절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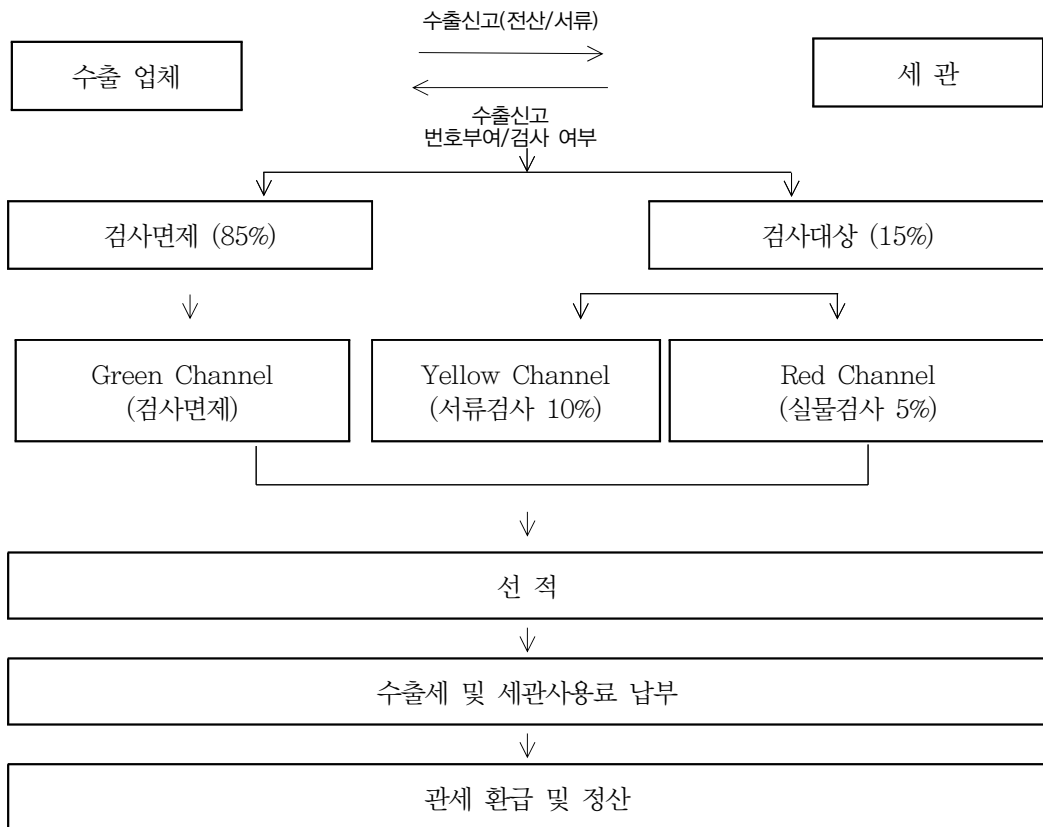
- 베트남의 수출 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수출 통관의 검사비율은 15%으로, 수입 통관의 심사비율(60%)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편임
- 베트남은 원유, 철강 스크랩 및 귀금속 등 일부 품목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베트남의 수출세제는 2006년도 WTO 가입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
- 베트남은 가입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수출 허가 및 제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2 수출 통관 절차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짐²³²⁾

[그림 3-II-1] 베트남의 수출 통관 절차



자료: 손영환,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주호치민영사관, 2014.5 p.16

- 수출자는 수출 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²³³⁾

2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5.12, p.55

233) 베트남 「관세법」 제25조 1항 a목

- 수출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물품을 집결한 다음 제출하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함
- 특송 서비스로 내보내는 수출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2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출신고서의 효력은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일로부터 15일 동안 유효함

- 수출신고자는 수출 통관 시 다음 서류를 출항지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²³⁴⁾
 - 수출신고필증
 - 수출계약서
 - 포장명세서
 -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허가서

- 수출 물품 검사는 무작위로 진행되며 통관 물량 기준으로 약 15%가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다고 함²³⁵⁾
 - 검사 면제대상은 요건을 갖춘 수출 물품이나 수입원재료를 가공하여 제조된 수출품을 제외한 일반수출 물품 등 검사를 면제하여도 문제가 없는 물품이 해당됨
 - 물품 검사대상은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 등 실물검사가 필요한 다음의 물품임
 - 수차례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화주의 수출입 물품
 - 실물검사 면제항목에 해당되나 세관기관에 의해 관세법 위반 징후가 포착된 경우
 - 세관의 위험도 평가 및 정보 분석 결과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자 무작위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
 - 물품 검사방법은 세관공무원의 수작업을 통한 실물검사와 물품 전용기계(컨테이너 검색기 등)으로 진행됨

2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5

235) 외교부, 「베트남 통관절차 안내」, 베트남 관세총국 호치민시 관세국, pp.13~17

3 기타 수출 통관 관련 사항

가. 수출세 부과 품목

- 베트남은 자원유출의 방지, 국내 시장의 안정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자원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해 규조토, 주석, 대리석, 원유, 석탄 등 일부 자원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관세를 부과함²³⁶⁾
 - 2006년 1월 1일 이후 금속, 원피·가죽 및 목재 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베트남의 수출관세율은 WTO 최혜국대우 세율(MFN)을 기준으로 적용됨
- 베트남의 수출세제는 2006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금속 스크랩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원유와 보석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을 높이고, 일부 목재 반제품과 비철금속 반제품 등은 수출세율을 낮춤²³⁷⁾
 -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WTO 가입을 위해 금속 스크랩(고철)에 대한 수출관세를 5년간 35~45%에서 17~22%로 줄이는 데 동의하였음
 - 원유 (4%에서 10%), 일부 목재 제품 및 보석에 대한 수출관세가 증가하였음
 - 특히 미네랄, 침향나무, 금속 광석 및 농축 물, 석탄, 고무, 다이아몬드, 금과 은 등은 수출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었음
 - 반면 캐슈넛(Cashew Nut), 포장재, 기목 상판(parquet-flooring), 문과 틀 관련 자재 및 철 또는 비합금강의 잉곳 및 반제품과 같은 기타 품목은 더 이상 수출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0%의 수출관세율이 부여되었음
- 2013년도 1월 1일 기준, 베트남의 수출세 부과품목에 대한 내용을 <부록 IV>에 수록하였음

2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베트남』, 2015.12, p.55

237)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p.60~61

나. 수출허가 및 제한품목²³⁸⁾

- 2009년 9월 16일, 베트남의 농업 및 농촌 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농수산물과 임산물의 전문화된 수출입 관리를 위해 수출허가 또는 수출제한 대상목록을 규정하였음
 - 관련 법령은 시행규칙 No. 60/2009/TT-BNNPTNT이며 2011년 12월 28일 시행규칙 No. 88/2011/TT-BNNPTNT으로 개정되었음
 - 수출 금지 대상인 농수산물 및 임산물과 수출 조건이 적용되는 어류(aquatic species)의 내용이 개정 법령에 추가되었음

- 2006년도에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자동 수출 승인을 통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은 시행령 No. 12/2006/ND-CP임
 -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자동 수출 승인 대상 물품은 없으며 자동 수출 승인을 통해 공식적인 수출이 진행된 사례 또한 없음
 - 베트남 정부는 광물의 자동 수출 승인을 적용하려는 법안을 거절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No. 41/2012/TT-BCT에 특정 광물의 수출에 대한 품질 기준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2012년 9월 20일, 베트남 건설부(The Ministry of Construction)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건축석재, 모래, 자갈, 장식, 점토 등 8가지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시행규칙 No. 04/2012/TT-BXD임

- 2013년 기준 수출 허가 대상품목은 무기 및 탄약, 독성 화학물질, 마약, 골동품 등이 있음

238)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p.62~64

〈표 3-II-1〉 베트남의 수출 허가 및 제한품목

수출허가품목	수출제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탄약, 폭발물, 기술적인 군사장비 - 골동품 - 마약 - 유독성 화학물질 - 통나무, 제재목, 껍질을 벗긴 목재, 장작, 목재 또는 장작에서 채굴하는 석탄 - IA 그룹의 다른 목재 제품 및 IIA 그룹의 고품질 제조 팔레트¹⁾ - 등나무 재료 - 각종 야생동물 및 희귀한 자연 동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두 - 야생동물 및 사육된 야생동물 - 진귀한 보석, 금속 및 천연진주 - 목재 제품(수공업품을 제외하고 수입목재 및 인공 팔레트에서 재배된 재목에서 생산된 것)²⁾ - 광물금속

주: 1) 특정 식물의 종은 WTO의 통지를 필요로 함(WTO WT/ACC/VNM/48, 표 18 참조)

2) 1998년 7월 31일 국무총리 결정 No.136/1998/QD-TTg에 의함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 176

참고문헌

- 관세청, 『베트남 관세법 2014』, 2014.11
- 관세청,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2015.12.
-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2007.6.27.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 - 부속서 제 3장 원산지 규정」, 2015.12.
- 손영환,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2013.04.
- _____,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2014. 5.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4.
- 이승필, 「한·베트남 FTA와 원산지규정의 이해」, 『관세와 무역』, 제47권 통권499호, 2015.6.
- 법제연구원,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설계』, 2013.11.
- 조영태·박중문·백지현,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한-베트남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동향분석 제111권, 2016.3.
- 코트라, 『2013년도 주요 10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3.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베트남」, 2012.1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 _____,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인도네시아』, 2015.12.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만·베트남·싱가포르의 산업집적지』, 2011.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86.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1.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Nguyễn Hữu Nam, *CÁC MẪU C/O VÀ NỘI CẤP*, VCCI, 2013.06.

〈웹사이트 및 기타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1.1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20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아세안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2013.7.1.

_____,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타결”」, 2014.

_____,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2015.

관세청, 「상호인정협정(MRA)」, http://post.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0&layoutMenuNo=21881, 검색일자: 2016.10.19.

대한상공회의소, 「특혜원산지제도」,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검색일자: 2016.10.19.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 제 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vn/2/kor/CHAPTER_3.pdf, 검색일자: 2016.10.19.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세무행정법』,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7053?astSeq=570>, 검색일자: 2016.11.14.

_____, 『베트남 행정절차법, No.64/2010/QH12』,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priority/31904>, 검색일자: 2016.11.14.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Lists/HaiQuanVietNam/Default.aspx>, 검색일자: 2016. 10. 2.

_____,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portlet=DetailsImportTax&language=en-US&code=87032393&searchTerms=hs%3d8703>, 검색일자: 2016. 9. 18.

_____,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검색일자: 2016.10.13

- 베트남 관세총국 호치민시 관세국, 「베트남 통관절차 안내」, http://vnm-hochiminh.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3770&tablename=TYPE_LEGATION&seqno=fd207bfba043f8ef98fcf060&fileseq=facf9f009011008043fbefec, 검색일자: 2016.10.31.
- 베트남 통계청(GSO), 『Thematic Data』,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6&ItemID=14220, 검색일자: 2016. 10. 20.
-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청 홈페이지,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검색일자 2016. 9. 18.
- 베트남 팩토리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http://vietnam.vnandt.vn/>, 검색일자: 2016.11.01.
- 베트남 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467&seqno=118487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6. 10. 12.
- 베트남 재무부 홈페이지(영문), http://www.mof.gov.vn/webcenter/portal/mof/r/m/gioithieubo/tochucbomay?centerWidth=670px&leftWidth=286px&rightWidth=0&showFooter=false&showHeader=false&_adf.ctrl-state=15cci3ftc0_126&_afrLoop=32999790293878124#!%40%40%3F_afrLoop%3D32999790293878124%26centerWidth%3D670px%26leftWidth%3D286px%26rightWidth%3D0%26showFooter%3Dfalse%26showHeader%3Dfalse%26_adf.ctrl-state%3Dxwc0yihpy_4, 검색일자: 2016. 9.23.
- 코트라, 「베트남 공단현황 안내 및 경제특구(EZ) 투자 이점」,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27439>, 검색일자: 2016.10.10.
- _____,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 특징 및 공단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7322>. 검색일자: 2016.10.11.
- _____, 「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 (요약)」,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1027>, 검색일자: , 2011.11.21., 검색일자: 2016.10.18.
- _____, 전문가 기고, 「베트남 진출 EPE(수출가공기업)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 <http://>

-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38388), 검색일자: 2016.10.12.
- _____, 「베트남 신 수출입세법, 무엇이 새로워졌나?」,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4213>, 검색일자: 2016.09.22.
- _____, 「국가정보 : 베트남-통관절차 및 운송」,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cdKey=101084&itemIdx=9718&categoryType=003&categoryIdx=217>, 검색일자: 2016.11.01.
- _____,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604>, 검색일자: 2016.09.18.
- _____, 「베트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 개정」,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2425>, 검색일자: 2016. 7. 20.
- _____,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장벽 구축」,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1202>, 검색일자: 2016. 7. 20.
- 코트라 해외비즈니스 포털,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http://tradedoctor.kotra.or.kr>, 검색일자: 2016.09.21.
- 코트라,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 2015년 상반기 무역적자, 불황형 흑자에서탈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986&ARTICLE_SE=20301, 2015, 검색일자: 2016. 10. 20.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국가정보-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자 2016. 8. 20.
- 트레이드 네비, 「관세평가 및 관세율표 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 <http://www.trade-navi.or.kr/>, 검색일자: 2016.10.24.
- 하나로티엔에스, 「베트남 물류 및 통관현황」, <https://www.kidmac.com/kor/bbs/view/B0000033/2012.do;jsessionid=85F78E159B515C71B34FAC06A6F675E>

- 1?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100173&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_f_Setting=&recovery=&pageIndex=8, 검색일자: 2017. 1. 18.
-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베트남 공단 진출에 알아야 할 사항」, http://www.kinp.or.kr/bbs/board.php?bo_table=bbs43&wr_id=271, 검색일자: 2016.11.01.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베트남 FTA 원산지 절차 및 원산지 검증」, http://www.kofoti.or.kr/bbs/data/1602_data_21.pdf, 검색일자: 2016.10.18.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 「국가별 통관절차」,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7&natnCd=VN>, 검색일자: 2016. 7. 24.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포털, 「주요국 통관요건」, http://ntb.kita.net/barrier/major_requisite.screen?menuid=ntb020302#, 검색일자: 2016. 7. 24.
- 박민식, 「우리나라 3대 수출국 베트남, TPP에서 98% 이상 시장개방...자동차 수출 등 영향」,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2f9545860a5d4823a2697602ed84ab76>, 2016. 2. 4, 검색일자: 2016. 7. 20.
- 타익훤(Thạch Huệ), 「ATIGA 스케줄 따라 역내 관세 2018년까지 철폐」, 베타타임즈, <http://cvnpost.com/post/16144.cvn>, 2016. 1, 검색일자 2016. 7. 20.
- PWC 「Vietnam News Brief」, September 2016, <https://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newsbrief-0112166-12167-en.pdf>, 검색일자: 2016. 9. 18.
- PWC(PricewaterhouseCoopers), “Vietnam pocket tax book 2016-korean”, <http://www.pwc.com/vn/en/publications/2016/pwc-vietnam-pocket-tax-book-2016-korean.pdf>, 검색일자: 2016. 9. 18.
- TUOI TRE NEWS, “Vietnam to drop up to 98% of tariffs after joining TPP”, <http://tuoitrenews.vn/business/31575/vietnam-to-drop-65-of-tarrifs-after-landmark-trade-deal-takes-effect>, 검색일자: 2016. 9. 18.

부록 I. 수입금지 물품

HS 코드	대상	근거법령
1207 91 00	Poppy seeds	Law No. 23/2000/QH10 on drug prevention and combat as amended by Law No. 16/2008/QH12 and its guiding legal documents
1302 11 00	Opium, anhydrous morphine anhydrous content	
2618 00 00	Granulated slag (slag sand)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Circular No. 1/2012/TT-BTNMT of 28 January 2013
2619 00 00	Slag, dross (other than granulated slag), scalings and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2620	Ash and residues (other than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containing metals or metal compounds	
2621 00 00	Other slag and ash, including seaweed ash (kelp)	
3601 00 00	Propellant powders	
8710 00 00	Tanks and other armoured fighting vehicles, motorized, whether or not fitted with weapons, and parts	Decree No. 12/2006/ND-CP
9301 00 00	Military weapons, other than revolvers, pistols and the arms of heading 307: revolvers, pistols	
9302 00 00	Revolvers and pisto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303 or 9304	
9304	Other arms (e.g.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truncheon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307	
9305	Part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headings 9301 to 9304	
9306	Bombs, grenades, torpedoes, mines, missiles and similar munitions of war and parts thereof; cartridges and other ammunition and projectile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t and cartridge wads	
9307	Swords, cutlasses, bayonets, lances and similar arms and parts thereof and scabbards and sheaths thereof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p.54~55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록 II.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0301~0305, - 0306.14,0000 - 0306.24 - 0307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Fish, and Crustaceans, mollusk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 1601.00,0000 - 1602~1605	육류 및 어류 등의 조제품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f crustaceans, mollusk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 1704	코코아 미함유한 사탕과자	Sugar confectione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 1806	초콜렛과 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식품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 1901.10 - 1902 - 1903.00,0000 - 1904~1905	곡물,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 cooks' products
- 2001~2009	야채, 과일, 견과류 기타 식물성 조제품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 2101~2104 - 2105.00,0000 - 2106.90,1000/ 2000/3000 - 2106.90,9100/ 9200/9400/9910/ 9920/9990	각종 조제식품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 2201~2208 - 2209.00,0000	음료, 알코올 및 식초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 3303.00,0000 - 3304~3307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 용품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 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Baths, shower-baths, sinks, wash-basins, bidets, lavatory pans, seats and covers, flushing cisterns and similar sanitary ware, of plastics.
-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 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 화장용품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6101~6117 (6113 및 6114, 30.0010 제외)	의류와 그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	Chapter61 :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 6201~6217 (6210 및 6217, 6211.33,0010/39,0010/43,1000, 6216.00,1000 제외)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 6301	모포류와 여행용러그(rug)	Blankets and travelling rugs
- 6302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Bed linen, table linen, toilet linen and kitchen linen.
-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 침대용 밸런스(valance)	Curtains (including drapes) and interior blinds; curtain or bed valance.
- 6304	그밖의 실내용품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	Other furnishing articles, excluding those of heading 94.04.
-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Floor-cloths, dish-cloths, dusters and similar cleaning cloths
-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 불문),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whether or not with accessories, for making up into rugs, tapestries, embroidered table cloths or serviettes, or similar textile article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 6401~6406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럭·서포트타일(supporttile)·필러타일(fillertile)과 이와 유사한 것	Ceramic building bricks, flooring blocks, support or filler tiles and the like.
-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Roofing tiles, chimney-pots, cowls, chimney liners, architectural ornaments and other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 6906.00.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Ceramic pipes, conduits, guttering and pipe fittings.
-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도자제의 모자이크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 불문)	Un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un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 불문)	Glazed ceramic flags and paving, hearth or wall tiles; glazed ceramic mosaic cubes and the like, whether or not on a backing.
-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물품	Ceramic sinks, wash basins, wash basin pedestals, baths, bidets, water closet pans, flushing cisterns, urinals and similar sanitary fixtures.
-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f porcelain or china
- 6912.00.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자기제의 것은 제외)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toilet articles, other than of porcelain or china.
-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kitchen, toilet, office, indoor decoration or similar purposes (other than that of heading 70.10 or 70.18).
-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 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바비큐(barbecue)·화로·가스 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Stoves, ranges, grates, cookers (including those with subsidiary boilers for central heating), barbecues, braziers, gas-rings, plate warmers and similar non-electric domestic applianc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 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iron or steel wool;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iron or steel.
-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Table, kitchen or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pot scourers and scouring or polishing pads, gloves and the like, of aluminium;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aluminium.
- 8413.20.1000	액체펌프	Water pumps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8413.70.2200	그 밖의 원심펌프	Impulse-turbo water pump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100 Watts, of a kind for household use
- 8414.51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W
-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 공기조절기	Window or wall typ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 8415.81.9110 - 8415.81.9910 - 8415.81.9920	냉각유닛과 냉 · 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공기조절기(반전기능열펌프 포함)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a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 (reversible heat pumps) - of an output exceeding 21.1kW but not exceeding 26.38kW - of an output not exceeding 21.1kW
- 8515.82.9010	기타 (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공기조절기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of an output not exceeding 26.38 kW
- 8515.83.901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	Not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of an output not exceeding 26.38kW
- 8418.10.10.00 - 8418.21.0000 - 8418.29.0000 - 8418.30.0010 - 8418.40.0010	냉장고 · 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 여부 불문),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 제외)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electric or other; heat pumps other than air conditioning machines of heading 84.15.
- 8419.11.1000 - 8419.19.1000 - 8419.81	가열 · 조리 · 배소(焙燒)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	Machinery, plant or laboratory equipment, whether or not electrically heated (excluding furnaces, ovens and other equipment of heading 85.14), for the treatment of materials by a process involving a change of temperature such as heating, cooking, roasting, distilling, rectifying, sterilising, pasteurising, steaming, drying, evaporating, vaporising, condensing or cooling, other than machinery or plant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 8421.12.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 액체용이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8421.21.1100 - 8421.21. - 8421.22	나 기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	dryers;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8422.11	가정용 접시 세척기	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 8443.31 - 8443.32 - 8443.39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 불문)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s and facsimile machines, weatherornut combined:
-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 포함)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 8451.21.0000 - 8451.80.1000	직물, 의료용의 건조기	Dryingmachines
- 8470.10.0000 - 8470.21.0000 - 8470.29.0000 - 8470.30.000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 형 전자수첩	Calculating machines and pocket-size data recording, reproducing and displaying machines with calculating function
- 8471.30.1000 - 8471.30.2000 - 8471.30.9090 - 8471.41.1000 - 8471.41.9090 - 8471.49.1000 - 8471.49.9090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 8508.11.0000 - 8508.19.0010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s.
-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Shavers, hair clippers and hair-removing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미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curlingtongheater)],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for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example, hair dryers, hair curlers, curling tong heaters) and hand dryers; electric smoothing 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5.
- 8517.11.0000 - 8517.12.0000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포함)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 8518.10.1900 - 8518.10.9000 - 8518.21.0000 - 8518.22.0000 - 8518.29.1000 - 8518.30 - 8518.40.9000 - 8518.50.009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 여부 불문],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 인지 여부 불문),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정주파 증폭기, 음향증폭세트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loudspeakers, whether or not mounted in their enclosures;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microphone, and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 8519.30.0000 - 8519.81.1000 - 8519.81.2000 - 8519.81.3000 - 8519.81.7090 - 8519.81.9090 - 8519.89.2000 - 8519.89.9090	턴테이블(레코드데크) 또는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및 기타의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 Turntables (record-decks) - Using magnetic, optical or semiconductor media - Other
- 8521.10.0090 - 8521.90.1900 - 8521.90.9900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 8525.80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 8527.12.0000 - 8527.13 - 8527.19.9100 - 8527.19.9900 - 8527.91.1000 - 8527.92.1000 - 8527.99.1000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 결합된 것인지 여부 불문)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whether or not combined, in the same housing, with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or a clock
- 8528.71 - 8528.72 - 8528.73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 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기구나 재생용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 불문)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 corporation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8703.10.9000		
- 8703.21.2900		
- 8703.21.9090		
- 8703.22.1900		
- 8703.22.9090		
- 8703.23.5100		
- 8703.23.5200		
- 8703.23.5300		
- 8703.23.5400		
- 8703.23.9100		
- 8703.23.9200		
- 8703.23.9300		
- 8703.23.9400		
- 8403.24.5010		
- 8703.24.5090		
- 8703.24.9010		
- 8703.24.9090		
- 8703.31.2000		
- 8703.31.9090		
- 8703.32.5100		
- 8703.10.9000		
- 8703.21.2900		
- 8703.21.9090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Motor cars and other motor
- 8703.22.1900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 8703.22.9090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 8703.23.5100	(stationwagon)과 경주용 자동차 포함]	than those of heading 87.02),
- 8703.23.5200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 8703.23.5300		racing cars.
- 8703.23.5400		
- 8703.23.9100		
- 8703.23.9200		
- 8703.23.9300		
- 8703.23.9400		
- 8403.24.5010		
- 8703.24.5090		
- 8703.24.9010		
- 8703.24.9090		
- 8703.31.2000		
- 8703.31.9090		
- 8703.32.5100		
- 8703.32.5900		
- 8703.32.9100		
- 8703.32.9900		
- 8703.33.5100		
- 8703.33.5100		
- 8703.33.5200		
- 8703.33.9000		
- 8703.90.5100		
- 8703.90.5200		

〈부록 2〉의 계속

HS-code	대상 품목	
	국문 ¹⁾	영문
- 8703.90.5300 - 8703.90.5400 - 8703.90.9000		
- 8711.10.9100 - 8711.10.9900 - 8711.20.1000 - 8711.20.4100 - 8711.20.4200 - 8711.20.4300 - 8711.20.9000 - 8711.90.4000 - 8711.90.9000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 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 부착 여부 불문], 사이드카(side-car)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 8712.00.1000 - 8712.00.3000 - 8712.00.90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자전거 포함)	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
- 9401.30.0000 - 9401.40.0000 - 9401.51.0000 - 9401.59.0000 - 9401.61.0000 - 9401.69.0000 - 9401.71.0000 - 9401.79.0000 - 9401.80.9000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제9402호의 것은 제외)	Se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4.02), whether or not convertible into beds
- 9403.10.0000 - 9403.20.0090 - 9403.30.0000 - 9403.40.0000 - 9403.50.0000 - 9403.60.0000 - 9403.70.0090 - 9403.81.0090 - 9403.89.009	그 밖의 가구	Other furniture

주: 1) 국문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참조

자료: 산업통상부 Circular No.24/2010/TT-BCT Appendix No.01

부록 Ⅲ. 검사 및 품질관리 의무 대상품목

소관 부처	법령명	주요 품목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ircular No. 08/2012/TT-BCT	Pressure equipment Lifting equipment for industrial use Chemicals Industrial explosives Oil and gas mining equipment, except for marin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Circular No. 14/TT-BCA of 2012	Fire prevention and fighting equipment Technical equipment Ammunitions, weapons Support instrument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ircular No. 20/2011/TT-BTTTT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Computers, network and IT equipment Radio and transmission equipment
Ministry of Health	Circular No. 44/2011/TT-BYT	Foods Pharmaceuticals Vaccines Medical bio-products Cosmetics Drug materials Drugs for human use Domestic chemicals Insecticides Disinfectants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ircular No. 50/2009/TT-MARD	Plants Animals Fertilizers Animal feeds Plant protection drugs Veterinary drugs Bio-products for use in agriculture, forestry or aquaculture Irrigation works and dyke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Circular No. 01/2009/TT-BKHCHN	Petrol, diesel, and biofuels Motorbike helmets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Electrical wires Toys
Ministry of Transport	–	Means of transport Loading and unloading means and equipment Specialized transport equipment for construction, marin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equipment Traffic works
Ministry of Construction	–	Civil works Industrial works Technical infrastructure works
Ministry of Defence	–	Military equipment and facilities Ammunitions, weapons and products in service of defence Defence works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부록 IV. 2013년도 베트남 수출세 부과품목

(단위: %)

HS Code	품목명	실행 세율	2012 WTO 권고세율
0801.31.00	Cashew nuts in shell	0	
1211.90.14, 1211.90.19, 1211.90.98, 1211.90.99	Agarwood	15	
2502-2516, 2518-2522, 2524, 2526, 2528-2530	Minerals	5~30	
2601-2617	Metal ores and concentrates	10~40	
2621	Other slag and ash, including seaweed ash (kelp); ash and residues from the incineration of municipal waste	0~7	
2701-2704	Coal	10~20	
2709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0~10	
2709.00.10	Crude petroleum oil	10	
2804	Hydrogen, rare gases and other non-metals	0~5	
2817	Zinc oxide; zinc peroxide	0~5	
2818	Artificial corundum,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aluminium oxide; aluminium hydroxide	0	
4001-4002 4005	Rubber	0~5	
4101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10	
4102	Raw skins of sheep or lamb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 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with wool on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c) to this Chapter	5	
4103	Other raw hides and skin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b) or Note 1(c) to this Chapter	0~10	

〈부록 4〉의 계속

(단위: %)

HS Code	품목명	실행 세율	2012 WTO 권고세율
4401	Fuel wood, in logs, in billets, in twigs, in faggots or in similar forms; wood in chips or particles;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0~5	
4402	Wood charcoal(including shell and nut charcoal), whether or not agglomerated	0~10	
4403	Trees' roots and bush of natural wood	10	
4404	Hoopwood; split poles; piles, pickets and stakes of wood, pointed but not sawn lengthwise; wooden sticks, roughly trimmed but not turned, bent or otherwise worked,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walking-sticks, umbrellas, tool handles or the like; chip wood and the like of natural wood	5	
4406	Railway or tramway sleepers (cross-ties) of natural wood	20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exceeding 6mm of natural wood	5~20	
4408	Sheets for veneering and laminated wood (whether or not assembled), other wood, sawn lengthwise, sliced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spliced or end-joint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mm of natural wood	5	
4409	Wood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eba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u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ends or face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end of natural wood	5	
7102	Diamonds, whether or not worked, but not mounted or set	5~15	
7103.10.00 7103.91.00 7103.99.00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precious stones (other than diamonds) and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 Otherwise worked: -- Rubies, sapphires and emeralds -- Other	15 5 5	
7104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synthetic or reconstructed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5~10	

〈부록 4〉의 계속

(단위: %)

HS Code	품목명	실행 세율	2012 WTO 권고세율
7105.90.00	Dust and powder of precious stones of 7103	3	
7106	Silver (including silver plated with gold or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 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5	
7108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 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0~10	
7113	Articles of jewellery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0~10	
7114	Articles of goldsmiths' or silversmiths' wares and parts thereof,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0~10	
7115	Other articles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0~10	
7204	Iron and steel wastes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steel, whether or not in bundles)	15~17	17
7401	Copper mattes; cement copper (precipitated copper)	15~20	
7403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unwrought	10~20	
7404	Copper waste and scrap	22	22
7405	Master alloys of copper	15	
7406.10.00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15	
7406.20.00	Powders of lamellar structure; flakes	15	
7407	Copper bars, rods and profiles	10	
7501	Nickel mattes, nickel oxide sinter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0~5	
7502	Unwrought nickel	5	
7503.00.00	Nickel waste and scrap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hether or not in bundles)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nickel,	22	22
7504.00.00	Nickel powders and flakes	5	
7505.11.00	Nickel, not alloyed, in bars, rods and profiles	5	
7505.12.00	Alloyed nickel bars, rods and profiles	5	
7601	Unwrought aluminium	15	
7602.00.00	Aluminium waste and scrap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hether or not in bundles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aluminium,)	22	22
7603	Aluminium powders and flakes	10	
7801	Unwrought lead	15	
7802.00.00	Lead waste and scrap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lead, whether or not in bundles)	22	22

〈부록 4〉의 계속

(단위: %)

HS Code	품목명	실행 세율	2012 WTO 권고세율
7804.20.00	Lead powders and flakes	5	
7806	Other articles of lead	5	
7901	Unwrought zinc	10	
7902.00.00	Zinc waste and scrap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zinc, whether or not in bundles)	22	22
7903.10.00	Zinc powder	5	
7903.90.00	Zinc powder and flakes	5	
7904	Zinc bars, rods, profiles	5	
8001	Unwrought tin	10	
8002.00.00	Tin waste and scrap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of tin, whether or not in bundles)	22	22
8003.00.10	Tin bars, rods	5	
8003.00.90	Tin profiles	5	
8007	Aluminium powder and flakes	5	
8110-8113	Waste and scraps of metal and metallic ceramics and their products (excluding turnings, shaving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whether or not in bundles)	22	22
8101-8113	Semi-products of metal and metallic ceramics and Products of metal and metallic ceramics	5	
8104	Magnes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15	

출처: WTO, *Trade Policy Review Vietnam*, WT/TPR/S/287/Rev.1, November 2013, pp.173~175

부록 V. 베트남 관세행정벌칙 시행령상 관세형벌 종류

제 2장. 관세행정 위반, 벌금 및 추가조치²³⁹⁾

제6조. 통관절차 완료와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규정 위반

1. 통관 일정보다 늦게 세관서류 또는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500,000VND에서 1,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다음의 경우 1,000,000VND에서 5,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금 면제가 가능한 물품으로의 HS Code 변경을 할 때,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정대로 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b) 각종 보고, 세금 정산 또는 세금 환급을 위한 서류 제출을 일정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c) 서류상 등록된 가공 계약에 따라 임대되거나 차용된 잉여 원재료 및 소모품, 스크랩, 기계류 또는 장비의 사용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 d) 가공계약에 따른 물품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또는 세관당국에 등록된 기간 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지 않은 경우
 - e)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차량을 예정대로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지 않은 경우
 - f) 자유무역지역에서 세관 감독하에 놓인 물품의 정보 제공과 각종 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g) 미리 예정된 가공무역 생산 제품과 수입 원재료로 제조된 수출 물품의 총량을 조정하지 못해 차이가 있는 경우
 - h) 세금계산서 작성기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5,000,000VND에서 1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재수출을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을 예정대로 재수출하지 못한 경우
 - b)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차량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 벌칙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 차량을 예정대로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지 않은 경우
 - c) 베트남 내에서 운송중인 물품으로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차량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 벌칙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 차량을 예정대로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좌석이 24석 미만이라면 35,000,000 VND에서 5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39) 본 <부록 V>는 베트남 시행령 No.127/2013/ND-CP의 제6조부터 제15조(제9조 제외)를 연구자가 번역 및 의역한 것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견해와 무관함

5. 추가조치

- a) 이 조에 규정된 사항의 위반자는 해당 물품을 베트남에서 반출해야 함
- b) 재수출 또는 재수입이 강요되는 물품은 베트남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한 반드시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여야 함

제7조. 통관신고절차의 위반

1. 다음의 경우 500,000VND에서 1,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서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로서 이 조의 2,3,4항 및 이 법 제8조, 13조 및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b)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서 정보 중 이름, 물품 종류, 수량, 중량,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로서 물품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환불되지 않는 원조인 경우
2.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서 정보 중 이름, 물품 종류, 수량, 중량,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다음의 경우 1,000,000VND에서 3,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생산, 수리 또는 보증(warranty)을 위해 환적항구, 해외공장, 자유무역지대, 그리고 국내 공장으로부터 보내지는 물품. 단, 이 법 제13조 1항 h목(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
 - c) 운송중인 물품
 - d) 비관세지역(non-tariff zone)에서 사용되거나 파괴된 물품
 - e) 물품명과 수입원재료 목록의 물품 표시(물품명) 또는 수출 물품목록의 물품 표시(물품명)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등록된 목록 정보와 수출제조공장의 실제 물품과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 3,000,000VND에서 5,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법령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수출입 물품으로서 세관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서 정보 중 이름, 물품 종류, 수량, 중량, 그리고 물품 가치(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 b) 비관세지역(non-tariff zone)에 위치한 업체의 물품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 c) 수출 가공을 위해 업체 스스로 충당한 원재료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d) 세관에 통지 없이 수출가공공장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dd) 가공물품과 수입원재료 또는 수출가공기업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수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출 물품명, 수량, 중량, 가치(가격)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0,000,000 VND에서 4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이 법 제13조 1항 e목(수입 원재료가 아닌 다른 원재료로 만들어진 임가공 제품의 수출, 임가공으로 수출된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재료로 만들어진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의 수입)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부정확한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감면된 세액 또는 환급액이 과다한 경우 이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8조. 세금신고 절차의 위반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감면 또는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 신고납부세액 부족 또는 과다한 감면, 환급의 10%를 벌금으로 부과:
세관당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전, 납세자가 세관신고서 등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수를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정하는 경우
2. 신고납부세액 부족 또는 과다한 감면, 환급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 a)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수출입물품으로서 세관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서 정보 중 이름, 물품 종류, 수량, 중량, 물품 특징, 개수, 세율, 그리고 물품 원산지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로서 이 법 제13조에 대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 b) 이 조 (a)항의 세관신고 진행 후 밝혀진 위반행위로서 세관 위반기록명단에 기재되기 전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세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 c) 관세 면세 물품(tax-free goods)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d) 가공물품과 수입원재료 또는 수출가공기업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수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dd) 쿼터 적용물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e) 세금 정산 신청서, 세금 확정 신청서, 세금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 g)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감면,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행위의 경우
3. 이 법 제13조의 내용은 탈세 또는 세금사기에 대한 벌칙 적용에 이 조보다 우선한다.
4. 이 조는 이 법 제14조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통관과 세무(관세)조사의 위반

1. 신고한 통관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경우로서 그 위조가 납부할 세금의 액수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고 또는 500,000VND에서 2,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다음의 경우 2,000,000VND에서 4,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합법적인 이유 없이 세관 당국의 요청에 의해 직원을 할당하거나 물품 또는 차량의 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b) 서식 및 문서 보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4,000,000VND에서 1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당국 요청에 따라 반드시 사후 통관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보관물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b) 수출입 물품이나 수출입 차량과 관련 있는 서류 또는 전산파일을 온전히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일정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c) 세관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와 통관신고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호환성이 세관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세관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5. 다음의 경우 20,000,000VND에서 6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검사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서로 교환한 경우
 - b) 세관 인장(customs seal)의 위조 또는 위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c) 타인의 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통관 절차를 완료한 경우
 - d) 불법 서류를 사용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6. 추가 벌칙
- a) 이 조 제 5항의 (a), (b), (d)목의 위법 물품이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정지된 물품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거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필요한 자격(license)사항을 보유하지 못한 물품인 경우 압수된다.
 - b) 이 조 제 5항의 (c)목의 서류는 압수되고 봉인된다.
7. 추가 조치
- 상기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 위반자는 위법 물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위법 물품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벌금 부과에 면제될 수 있다.
8. 이 조의 제 5항 (b)목의 위반자로서 탈세와 세금사기에 연루된 자는 이 법의 제13조에 의해 처벌된다.

제11조. 세관 감독에 대한 위반

1. 다음의 경우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운송중인 물품의 경로, 위치, 목적지, 운송 시간 등의 정보와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정보가 합법적인 이유 없이 관세 서류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 b) 허가 없이 세관 도장(the customs seal)을 파괴한 경우
 - c) 세관 감독하에 허가 없이 물품의 포장 또는 라벨을 변경한 경우
 - d) 통관 서류중인 물품이거나 세관 감독하의 물품으로서 물품의 최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dd)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20,000,000VND에서 4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 감독하에 있으나 허가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b) 통관이 서류되어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으로 세관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 c) 외국 등록차량으로 일시 수입된 차량을 세관 허가 없이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경우
 3. 이 조 제 2항 (a) 및 (b)목에 해당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40,000,000VND에서 6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수출입 금지 물품 또는 수출입 제한 물품, 수출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할 수출입 물품 인증서가 없는 경우
 - b) 법에 의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인증서가 없이 재수출을 위해 일시 수입된 물품 또는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물품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해당되는 물품
 4. 추가 벌칙
- 이 조 제 2항의 (c)목과 제 3항의 (a)목에 해당되는 위법 물품은 압수된다.
5. 추가 조치
 - a) 이 조 제 1항 (a)목의 위반자는 해당 물품을 관세서류에 부합하도록 올바른 경로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 b) 이 조 제 3항 (b)목의 위반자는 위법 물품을 베트남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 c) 이 조 제 2항과 3항의 위반자는 위법 물품을 없앤 경우, 해당 물품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b) 이 조 제 1항 (c)목의 위반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포장과 라벨을 벗겨야 한다.

제12조. 세관 통제에 대한 위반

1. 다음의 경우 1,000,000VND에서 2,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 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세관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b) 행정 절차에 따른 검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 보관창고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세관 통제가 되지 않는 다음의 위법상황이 발생 시, 위법물품의 가치가 50,000,000VND 미만인 경우 2,000,000VND에서 5,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합법적인 서류 없이 세관 영역에서 수출입 물품을 보관, 교역(판매) 및 운송하는 경우
 - b)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국경을 가로질러 불법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3. 부정확한 검문소나 경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한 외국운송수단에는 5,000,000VND에서 1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이 조 제2항의 위법상황 발생 시 위법물품의 가치가 100,000,000VND 미만인 경우 10,000,000VND에서 3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5. 다음의 경우 30,000,000VND에서 6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이 조의 제 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상황 발생 시 위법물품의 가치가 100,000,000VND 이상인 경우
 - b) 합법적인 이유 없이 물품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상의 목적지 이외의 다른 항구의 목적지로 물품을 양하하는 경우
 - c) 세관 서류에 따라 수출입물품 또는 수송품을 적하, 양하 및 운송하는 경우
 - d) 세관 검사 또는 세관 감독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물품을 청산 또는 파기하는 경우
6. 추가 벌칙
이 조의 제 2항, 제 4항, 그리고 제 5항의 (a), (d)목에 언급된 물품은 압수한다.
7. 추가 조치
 - a) 이 조의 제 5항의 (d)목의 위반자는 위반물품을 청산 또는 파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법 물품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b) 이 조의 제 3항의 위반자는 외국운송수단을 베트남으로부터 재수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탈세와 세금사기에 대한 처벌

1. 탈세와 세금사기의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불법 또는 거짓 서류를 사용하여 가격신고서(세금 확정내역서)를 작성, 납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감면, 환급 세액을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문서 위조행위
 - b)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와 세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c) 면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 위반 통지가 내려지기 전에 조세 체납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 d) 임가공 제품 또는 수입 원자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단지 수출 절차만을 수행한 경우
 - dd) 임가공 제품,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 또는 재수출 제품의 수량, 중량 또는 범주를 과장하여 100,000,000VND 이상의 세금 감면을 초래하는 경우
 - e) 수입 원재료가 아닌 다른 원재료로 만들어진 임가공 제품의 수출, 임가공으로 수출된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재료로 만들어진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의 수입
 - g) 세관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비과세 제품, 세금 감면 또는 세금 환급 대상 물품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 h)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i) 납부할 세금과 관련된 영수증 및 지출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k) 부적격 구매자에게 면세 대상 물품을 판매한 경우
 - l)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이름, 물품 범주, 수량, 무게, 품질, 가격, 세율 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세금 체납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탈세와 세금 사기행위를 저지른 납세자는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며 아래와 같이 벌금이 부과된다: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회피된 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추가로 발견된 법령 위반행위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각각의 발생 행위에 대한 벌금은 20%가 증가되거나 회피한 세金的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로 발견된 법령 위반이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 경우, 각각의 발생 행위에 대한 벌금은 10%가 증가되거나 회피한 세金的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의 내용은 이 법 제 14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14조. 수출입 물품의 관리와 운송수단의 환적관리 위반

1. 국경 거주자의 상품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수출입 물품 또는 베트남을 입·출국하는 사람들이 부치는 수하물에 대하여 수출입 규정과 환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000VND에서 2,000,000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인도주의적 원조(humanitarian aid)물품의 수입규정을 적용받는 수출입 물품 또는 수출입규정을 적용받는 선물이나 이동자산(movable assets)에 대하여 수출입 규정과 환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00,000VND에서 3,000,000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다음의 경우 5,000,000VND에서 1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관할 당국이 발급한 면허와 대조적으로 차량을 수출, 수입 또는 이전하거나 물품을 이전하는 경우 그 물품
 - b) 발급받은 면허와 대조적으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
 - c) 법령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일시 수입 또는 일시 수출한 물품
4. 법령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운송중인 물품, 수출입 물품 및 운송중인 운송수단은 10,000,000VND에서 3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5. 다음의 경우 30,000,000VND에서 6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법령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재수출을 위해 일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속하는 물품
 - b) 베트남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그 물품, 베트남으로부터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물품
 - c) 법령에 따라 수출입 면허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수출입한 물품
 - d) 법령에 규정된 상태 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출입한 물품
 - dd) 상표라벨(label) 없이 수출입한 물품
 - e) 법령에 규정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상표 라벨이 부착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 g)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관할 당국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으로서 원자재, 소모품, 부품, 기계류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6. 추가 벌칙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5항의 (b)와 (g)목의 위법 물품은 베트남에서 재수출되거나 폐기 하도록 관할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된다.

7. 추가 조치

- a) 이 조의 제 1항과 제 2항의 위반자는 위법 물품이 조건부 수출입 대상 목록에 있거나 수출입면허가 필요한 경우 동 물품을 베트남에서 폐기하거나 수출을 중단하도록 강요되어야 한다.

이 법 제23조 4항에 언급된 기간 안에 권한 있는 기관의 수입허가가 있다면 해당 물품은 수입될 수 있다.

(이 법 제23조 4항: 관할당국이 수입허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위반자는 벌금 부과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이 가능하다.)

- b) 이 조의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5항의 (a), (c), (d) 및 (dd)의 위반자는 수출물품을 제외하고는 위법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 제23조 4항에 언급된 기간 안에 권한 있는 기관의 수입허가가 있다면 해당 물품은 수입될 수 있다.

- c) 이 조의 제5항의 (b)와 (g)의 위반자는 위법 물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 물품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d) 이 조의 제5항의 (e)의 위반자는 물품 세관통관 전 상표 라벨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 15조. 보세창고와 관세 유예창고 관리 위반

1. 다음의 경우 500,000VND에서 2,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보세창고와 관세 유예창고의 임대계약 만료를 세관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b)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이동하지 않은 경우

2. 다음의 경우 2,000,000VND에서 5,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세관당국의 승인 없이 하나의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b) 세관당국의 허가 없이 보세창고를 확장, 축소 또는 이동하는 경우
c)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의 수출입과 물품 이동 내역을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하지 못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5,000,000VND에서 1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보세창고 또는 관세 유예창고에서 외국으로 발송하였거나 보세창고 또는 관세 유예창고로 발송된 물품의 명칭, 물품 범주, 수량, 품질 또는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b) 세관 감독 아래 있는 보세창고 또는 관세 유예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c) 보세창고에 입·출고가 필요한 물품을 정해진 일정대로 그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다음의 경우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 a) 법령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을 해외의 보세창고에서 송부받은 경우
b) 보세창고의 설립 허가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세창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한 경우
c) 보세창고 설립 허가증을 위조한 경우
d) 허가 없이 보세창고 또는 관세유예창고에서 물품을 청산한 경우

dd) 법령에 반하여 보세창고 또는 관세 유예창고의 물건을 파괴하는 경우

5. 추가 벌칙

이 조의 제4항의 (d)목에서 언급된 위법 물품은 압수된다.

6. 추가 조치

a) 이 조의 제4항의 (d)목의 위반자는 해당 물품을 청산하여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 물품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b) 이 조의 제1항의 (b)목과 제4항의 (a)목의 위반자는 벌금 부과결정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물품 폐기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물품을 베트남에서 재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c) 이 조의 제4항의 (a)목의 위반자는 위법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위반물품에 모든 불법 요소를 제거한 후 재수출하여야 한다.

자료: 베트남 시행령 No.127/2013/ND-CP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베트남 편 -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주)정인애드
인 쇄
I S B N 978-89-8191-876-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